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건소)

김 포 시

목 차

■ 보건 소

1. 보건행정과	3
2. 감염병관리과	113
3. 보건사업과	159
4. 북부보건센터	249

보 건 소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보건행정과
요구액	14,720,419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495,680	443,400	443,400		457,000	13,600	
수수료수입/증지수입 ◎인증가용 증지수입	5,300	3,700	3,700		3,500	-200	· 25년 수입 반영하여 감액
수수료수입/보건의료수수료 ◎보건소 진료 및 보험청구수입	202,000	165,000	165,000		175,000	10,000	· 보건소 진료 및 보험청구 수입 편성 ·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수요 및 민원인 방문 건수 증가
수수료수입/보건의료수수료 ◎보건지소 진료 및 보험청구수입	55,000	51,000	51,000		48,000	-3,000	· 24~25년 수입 반영하여 감액
수수료수입/보건의료수수료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험청구수입	233,000	219,200	219,200		230,000	10,800	· 보건진료소 진료 건수 증가 추세로 24~25년 수입 반영하여 증액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50	4,500	4,500		500	-4,000	· 25년 기타이자수입 반영하여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21,200	14,200	14,200		10,478	-37,722	
기타수입/그외수입 ◎보건지소 관사 보증금 반납 등	15,000	8,000	8,000		5,000	-3,000	· 공중보건지사 관사 보증금 및 공중보건지사 배치인원 감소로 관사 개소수 감소에 따른 보증금 감액
기타수입/그외수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기요금 등	6,200	6,200	6,200		5,478	-722	· 3년치 추세 반영하여 감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6,500	36,500	36,500		20,000	-16,500	
과징금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31,500	31,500	31,500		15,000	-16,500	· 세입 3년 평균치, 관련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른 변동 가능
과태료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5,000	5,000	5,000		5,000	0	· 세입 3년 평균치, 관련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른 변동 가능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4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6, 보건진료소 7)		
사업목적	청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1항
	위임규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1항	
	제2조(관리책임) ①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14,059	442,163	442,163	0	0	0	478,537	36,37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14,059	442,163	442,163	0	0	0	478,537	36,37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8,537	
청사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청소원 인건비 = 128,496 - 기본급 : 11,730원*8시간*4명*251일 = 94,216 - 유급휴일수당 : 11,730원*8시간*4명*68일 = 25,525 - 명절휴가비 : 500,000원*4명*1회 = 2,000 - 시간외근무수당 : 17,590원*8시간*4명*12월 = 6,755 · 청사 청소원 4대 보험료 : 128,496,000원*14% = 17,990 · 청사 청소원 퇴직금 : 128,496,000원*1/12 = 10,708 · 민원실 근로자 인건비 = 14,922 - 기본급 : 11,730원*8시간*1명*128일 = 12,012 - 유급휴일수당 : 11,730원*8시간*1명*31일 = 2,910 · 4대 보험료 : 14,922,000원*14% = 2,090 ·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비 : 70,000원*1명*1회 = 70 	174,276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 32,300원*16대*12월 = 6,202 ·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 1,500,000원*2회 = 3,000 ·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 600,000원*12월 = 7,200 · 승강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 300,000원*12월 = 3,600 ·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 300,000원*12월 = 3,600 ·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 300,000원*12월 = 3,600 · 청사 방역소독비 : 300,000원*12회 = 3,600 · 저수조 청소 : 700,000원*2회 = 1,400 	66,102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 실내공기질 측정 : 700,000원*1회 = 700 · 청사 수목전정 : 1,300,000원*1회 = 1,300 · 의료폐기물 처리 : 1,000,000원*12월 = 12,000 ·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물품구입 290,000원*5종*10회 = 14,500 · 민원실 신청서 용지 등 구입비 250,000원*5종*4회 = 5,000 · 구급차, 의료지원 의약품 및 소모품 100,000원*4회 = 400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 요금 : 8,500,000원*12월 = 102,000 · 도시가스 요금 : 5,000,000원*12월 = 60,000 · 상하수도 요금 : 1,400,000원*12월 = 16,800 · 통신요금 : 130,000원*12월 = 1,560 · 교통유발부담금 : 1,200,000원*1회 = 1,200 · 청사 건물·시설물 유지관리 : 3,000,000원*10월 = 30,000 · EHP 등 냉난방기 유지보수 : 5,500,000원*2회 = 11,000 · 청사 보일러 및 팬코일 관리 : 6,000,000원*2회 = 12,000		234,560
	405-01 자산취득비	· 보건소장실 사무용 가구 구입 = 3,174 - 회의용 탁자 : 434,000원*1개 = 434 - 회의용 의자 : 184,000원*10개 = 1,840 - 옷장 및 3단장 : 300,000원*3개 = 900 · 순번대기표 발권시스템 표시기 구입 : 425,000원*1대 = 425		3,599

□ 예산요구 사유

- 청사(실내,실외) 환경 관리를 위한 청소원(4명) 인건비
- 육아휴직으로 인한 민원실 대체인력 인건비 1명
- 청사관리 기자재, 종량제봉투, 화장지, 손세정제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
- 청사관리 용역비(무인경비, 승강기, 소방, 전기, 방역소독, 저수조 청소, 수목전정, 의료폐기물 등)
- 청사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통신요금 등) 납부
- 청사 건물·시설물 유지관리비(어린이·임신부·노약자·장애인 등의 방문이 많은 시설)
 - 노후 청사(1999년 준공) 시설물(전기설비, 급배수시설 등)의 고장·파손 시 신속한 수리·수선·교체
 - 사무실내 LED램프, 천정텍스 등 노후·위험시설 수리·교체 등
- 냉난방기 76대 및 실외기 20대, 보일러·팬코일 43대 유지보수비(세척, 검사, 수리비 등)
- 보건소장실 내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용 가구 구입
-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순번대기표 발권시스템 표시기 추가 구입

□ 예산증감 사유

- 민원실 공무원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 채용
- 공공요금 증액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증액 : 공공요금 인상 및 보건소 방문 민원인 증가
 - 제증명 등 민원처리 건수 증가: '23년 149,566건 → '24년 174,238건 → '25년(10월) 154,719건
- 보건소장실 가구 구입 필요에 따라 비품 구입 예산 증액
- 민원실 근무자는 3인 이상이나 순번대기표 발권시스템과 연결된 표시기는 2대로 대기 순서 혼선 및 불편 발생으로 민원인의 대기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실 혼잡을 예방하고자 표시기 구입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0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2. : 청사청소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5.12. : 청사관리 및 운영 용역 계약
- 2026.01. ~ 2026.12. : 청사 청소관리 및 시설물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수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88,944천원(집행률 80%) · 사무관리비(청사 유지관리 용역, 기자재, 소모품 등) : 26,573천원(집행률 63.9%)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189,304천원(집행률 75.7%) · 시설비(별관 냉난방기) : 6,000천원(집행률 95.2%) · 자산취득비(공기청정기) : 2,654천원(집행률 98%) · 제증명 발급 건수 / 민원업무 접수 건수 : 45,472건 / 35,269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123,167천원(집행률 89.5%) · 사무관리비(청사 유지관리 용역, 기자재, 소모품 등) : 67,419천원(집행률 98.1%)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12,286천원(집행률 98.1%) · 자산 및 물품취득비(민원용 휠체어) : 960천원(집행률 100%) · 제증명 발급 건수 / 민원업무 접수 건수 : 53,570건 / 42,913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103,267천원(집행률 67%) · 사무관리비(청사 유지관리 용역, 기자재, 소모품 등) : 51,698천원(집행률 71.2%)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157,249천원(집행률 70.8%) · 제증명 발급 건수 / 민원업무 접수 건수 : 50,405건 / 36,45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0,791	436,227	-	4,564	
2024	414,059	404,282	-	9,777	
2025	442,163	321,214	-	120,949	10.31.기준 집행현황

□ **물품사진**

부서	보건행정과	물품규격	(W)390*(D)42*(H)120(mm)	본예산 요구액 (천원)	425
부기명 (세부사업)	순번 대기표 발권시스템 표시기 구입 (청사관리)	비치장소	보건소 본관 1층 민원실		
물품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공업7급 송태현 의료기술9급 이지연	전화	4006 4008
-----	-------	------------	-----	------------------------	----	--------------

청사 보수공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6. 30.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장차로 14
사업규모	보건소(지하주차장 및 본관 1~2층), 고촌읍 보건지소		
사업목적	노후 시설과 장비 정비 및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상황 대응 및 보안체계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1항
	위임규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1항
	제2조(관리책임) ①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159	284,949	284,949	0	0	0	93,750	-191,19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159	284,949	284,949	0	0	0	93,750	-191,19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3,750	
청사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 1층 로비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 23,380 - 실내기(천정형 냉난방기) : 600,000원*4대 = 2,400 - 실외기 : 7,600,000원*1대 = 7,600 - 설치비 : 13,380,000원*1회 = 13,380 · 보건소 영상감시장비 정비공사 = 59,370 - 자재비(녹화서버 1대, 카메라 30대 등) : 24,000,000원*1회 = 24,000 - 설치비 : 35,370,000원*1회 = 35,370 · 고촌읍 건강생활지원센터 보수공사 : 11,000,000원*1회 = 11,000 	93,750	

□ 예산요구 사유

- 보건소 본관 1층 로비 천정형 냉난방기 노후(2014년식)에 따른 오동작 빈번
 - 보건소 방문객에게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을 위하여 냉난방기 교체 필요
 - 실내기(4대), 실외기(1대), 설치비 등 반영
- 보건소 본관,별관 영상감시장비 서버가 이원화에 따른 감시장비 운영 불편함
 - 영상감시장비 서버 일원화로 효율적인 감시장비 운영을 위하여 정비공사 필요
 - 감시사각지대(본관앞, 옥외 본관 2층)에 카메라(2대)를 추가 설치하여 안정적인 청사관리
- 고촌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운영에 따른 보수공사비

□ 예산증감 사유

- 보건소(본관 1층)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영상감시장비 정비공사 등 예산 편성
- 고촌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운영에 따른 보수공사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반영	-	-	-
일자	2025.11. 반영	-	-	-	-	2025.9. 승인	-	2025.11.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추진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2026.02. ~ 2026.03. :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착공
 - 2026.06. :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시설비(별관 방수 및 보수, 천정형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 250,946천원(집행률 89.3%) · 자산및물품취득비(천정형 냉난방기) : 19,045천원(집행률 99.4%)
2025	· 사무공간 조성 및 현업근로자 휴게실 조성 리모델링 공사 : 149,195천원(집행률 90.9%) · 본관2층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실내기 3대,실외기 1대, 배관공사 등) : 10,929천원(집행률 81.8%) · 별관 승강기 교체공사(승강기 1대 구매설치) : 72,950천원(집행률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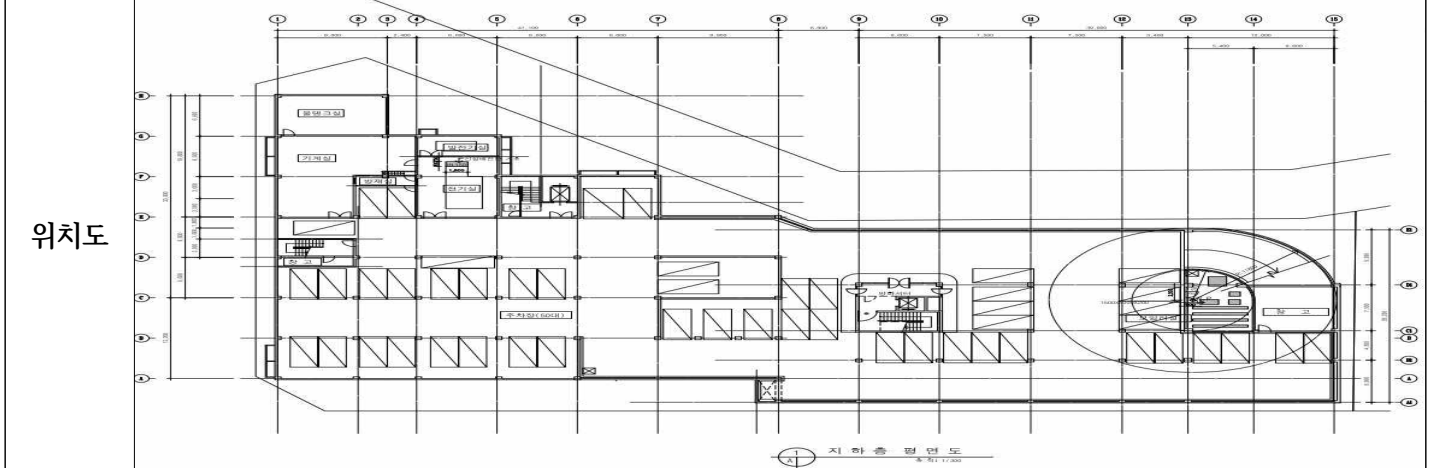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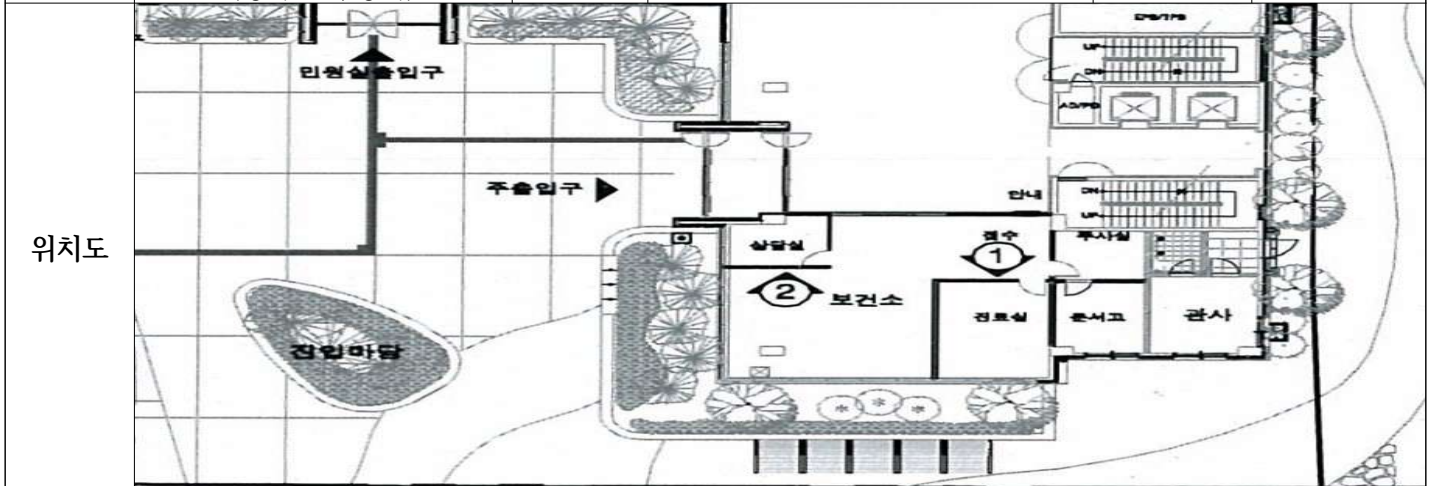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00,159	269,991	-	30,168	
2025	284,949	233,074	-	51,875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보건행정과	사업규모	보건소 본관 및 별관	본예산 요구액 (천원)	82,750
부기명 (세부사업)	본관 1층 로비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및 보건소 영상감시장비 정비공사 (청사 보수공사)	사업위치	사우동 사우중로 108		



부서	보건행정과	사업규모	고촌읍 보건지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11,000
부기명 (세부사업)	고촌읍 건강생활지원센터 보수공사 (청사 보수공사)	사업위치	장차로 14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공업7급 송태현	전화	4006
-----	-------	------------	-----	----------	----	------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2. 28.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사업목적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법령 위임규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5.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50	1,900	2,200	0	0	-300	2,900	1,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50	1,900	2,200	0	0	-300	2,900	1,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00	
지역보건의료 계획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배부 : 25,000원*60권 ·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12명 ·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문수당 : 100,000원*2명	= 1,500 = 1,200 = 200	

□ 예산요구 사유

- 제8기('23~'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제작·배부(심의위원, 보건의료 관련 유관기관, 사업추진 관련 부서 등)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회 1회 개최(자문, 심의)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제9기('27~'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전문위원 자문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 제작 부수 증가(경기도 제출용 포함), 인쇄비용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 제9기('27~'3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위원 자문수당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김포시의회 보고 및 경기도 제출
- 2026.10. ~ 2026.12. :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민요구도 조사 실시
지역사회현황 분석, 추진전략 도출 및 자문 요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제8기('23.~'26.)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제8기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출, 책자 배부
2024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제출, 책자 배부
2025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 제출, 책자 배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703	31,617	-	4,086	
2024	1,550	1,550	-	-	
2025	1,900	1,9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보건6급 최숙경	전화	4003
-----	-------	------------	-----	----------	----	------

구내식당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보건소 본소 근무직원		
사업목적	내부 식당 운영으로 직원 복리후생 도모 및 질적 업무환경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7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제6조제1항제1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2,280	87,127	83,057	0	0	4,070	66,346	-20,78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2,280	87,127	83,057	0	0	4,070	66,346	-20,78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6,346	
구내식당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 46,876 - 기본급 : 11,730원*5시간*2명*251일 = 29,443 - 유급휴일수당 : 11,730원*5시간*2명*68일 = 7,977 - 명절휴가비 : 312,500원*2명*1회 = 625 - 시간외근무수당 : 17,590원*1시간*2명*251일 = 8,831 · 4대보험료 등 : 46,876,000원*14% = 6,563 · 구내식당 조리원 퇴직금 : 46,876,000원*1/12 = 3,907 · 구내식당 조리원 피복비 : 140,000원*2명*1회 = 280 · 조리원 대체인력 : 100,000원*1명*20회 = 2,000 ·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비 : 70,000원*2명*1회 = 140 	59,766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내식당 유지관리 = 2,700 - 식기세척기용 세제 등 구입 : 200,000원*6회 = 1,200 - 식기, 주방기구 등 소모품 구입 : 297,000원*4회 = 1,188 - 급식실 정수기 임차료, 필터 교체 : 26,000원*12월 = 312 · 영양사, 조리사 법정교육 : 35,000원*2명*2회 = 140 · 조리사 피복비 : 140,000원*1명*1회 = 140 	2,98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201-02 공공운영비	· 주방기구 유지보수 및 수리 : 100,000원*12월 · 구내식당 주방 후드 청소비 : 700,000원*1회	= 1,200 = 700	1,9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구내식당 부침용 전판 교체비 : 1,700,000원*1회	= 1,700	1,700

□ 예산요구 사유

-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원활한 구내식당 운영
-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 세제 등 구내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
- 구내식당 유지관리비(주방시설 청소 및 수리·수선 등) 및 노후화된 전판 교체

□ 예산증감 사유

- 영양사 복직으로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감소
- 구내식당 부침용 전판 노후화로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교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0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구내식당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간제근로자 채용, 연간 구내식당 운영 결산 보고
 - 2026.01. ~ 2026.12. :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개최(상·하반기), 노후 물품 교체 등 유지 관리
 - 2026.12.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식당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인력현황 : 4명(영양사 1/ 조리사 1/ 조리원 2) · 운영식수 : 34,652식(일 평균 139식)
2024	· 인력현황 : 4명 (영양사 1/ 조리사 1/조리원 2) · 운영식수 : 33,471식(일 평균 136식)
2025	· 인력현황 : 4명 (영양사 1/ 조리사 1/조리원 2) · 운영식수 : 26,740식(일 평균 132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4,035	49,709	-	4,326	
2024	62,280	57,351	-	4,929	
2025	87,127	70,229	-	16,898	10.31.기준 집행현황

□ 물품사진

부서	보건행정과	물품규격	1500*750*150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00
부기명 (세부사업)	구내식당 부침용 전판 교체비 (구내식당 운영)	비치장소	보건소 별관 2층 구내식당		
물품사진	현재 상태		교체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7급 신지혜	전화	4004
-----	-------	------------	-----	----------	----	------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274번길 20 외
사업규모	보건지소 5개소		
사업목적	신속한 민원응대 처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증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요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제5조의2(공중보건역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 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공중보건역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해당조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2조제1항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제13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두며, 「농어촌 등 보건요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910	88,927	82,427	0	21,000	-14,500	87,346	-1,58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910	88,927	82,427	0	21,000	-14,500	87,346	-1,58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7,346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공중보건역사 관사 월세 : 500,000원*3개소*12월 = 18,000 · 공중보건역사 관사 중개수수료 : 242,000원*3개소 = 726 ·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임차료 : 42,000원*5개소*12월 = 2,520 · 의료장비, 백신 냉장고 등 유지보수비 : 800,000원*5개소 = 4,000 · 민원접수실 운영 소모품 등 구입 : 14,400원*10종*5개소 = 720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소모품 등 구입 : 200,000원*10종 = 2,000	27,966	
	307-01 의료및회복비	· 일반진료 의약품(월곶면보건지소) : 62,500원*20종*12월 = 15,000 · 한방진료 의약품(양촌, 대곶 보건지소) : 15,000원*21종*12월 = 3,780 · 진료소모품 : 50,000원*10종*5개소 = 2,500	21,28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대곶면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비품(진료용 침대) 구입 : 1,000,000원*1개 = 1,000 · 고촌읍보건지소 기능전환 장비구입 = 22,100 - 체성분분석기 : 19,700,000원*1대 = 19,700 - 자동신장체중계 : 900,000원*1대 = 900 - 보건교육용 노트북 : 1,500,000원*1대 = 1,500	23,1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406-01 기타자본이전	· 공중보건 의사 관사 보증금 : 5,000,000원*3개소 =	15,000	15,000

□ 예산요구 사유

- 공중보건 의사 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주거시설 및 주거편의 등 제공 의무화

2025년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실제 근무지로부터 근접 거리에 위치한 관사 등의 주거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적합한 주거시설이 관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 등을 해당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보건지소 관리용역비(정수기 등 임차료, 백신냉장고 등 유지보수비)
- 보건지소 내소 진료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 월곶면 보건지소 처방에 따른 진료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 월곶면 보건지소는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개설된 기관임
- 대곶면 보건지소 한방치료용 침대(1개) 부족
- 고촌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운영에 따른 체성분분석기 등 장비 구입비
 - 노트북 1대 : 정수승인 요청완료(25. 10. 29.)

□ 예산증감 사유

- 공중보건 의사 관사 임대 3개소 월세 및 보증금 지급
- 관사이용 현황 : 관사(3명), 임대(3명)

연번	구분	복무기간	근무부서	위치 및기간	비고
1	임대	'23.04.10.~'26.04.09.	북부보건센터(치과)	통진읍('25.4.15~'26.4.14.)	
2	임대	'24.04.08.~'27.04.07.	북부보건센터(한의과)	통진읍('25.4.14.~'26.4.13.)	
3	임대	'24.04.08.~'27.04.07.	보건사업과(한의과)	풍무동('25.4.22.~'26.4.21.)	
4	관사	'23.04.10.~'26.04.09.	월곶면보건지소(의과)	월곶지소	
5	관사	'23.04.10.~'26.04.09.	보건사업과(치과)	고촌지소	
6	관사	'24.04.08.~'27.04.07.	양촌읍보건지소(한의과)	양촌지소	

- 월곶면 보건지소 일반진료 환자 수 증가 및 주요 의약품 단가 상승으로 진료 의약품 구입비 증액
 - 일반진료 환자 수 현황 : 2022년(361명), 2023년(474명), 2024년(462명)
 - 연도별 주요 의약품 단가 및 사용량

사용량 및 단가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사용량(정)	단가(원)	사용량(정)	단가(원)	사용량(정)	단가(원)
로디비카2.5/20mg	14,640	560	13,140	565	12,720	567
로디비카2.5/40mg	5,040	610	2,776	620	2,400	621
로디비카5/20mg	960	-	3,210	664	4,470	666
로디비카5/40mg	3,360	710	4,650	719	4,170	721

- 대곶면 보건지소 한방진료 추가로 인한 장비 구입
- 고촌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운영에 따른 체성분분석기 등 장비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의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2025.10. 승인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보건지소 운영
- 2026.02. : 김포시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개최 진료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계약
- 2026.04. :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공중보건 의사 관사 임대계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곶보건지소, 하성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관사 임대계약 및 사용 : '23.4.~12. · 진료 건수 : 822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77건, 치매인지선별검사 214건, 제증명 발급 : 5,989건
2024	· 대곶보건지소, 하성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관사 임대료 지급 : '24.1.~3. · 대곶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관사 임대계약 및 사용 : '24.4.~12. · 진료 건수 : 857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244건, 치매인지선별검사 250건, 제증명 발급 : 2,241건
2025	· 대곶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관사 임대료 지급 : '25.1.~3. ·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관사 임대계약 및 사용 : '25.4.~12. · 진료 건수 : 987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273건, 치매인지선별검사 188건, 제증명 발급 : 1,26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364	57,992	-	372	
2024	50,910	50,202	-	708	
2025	88,927	74,992	-	13,93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보건6급 최숙경 간호8급 박혜영	전화	4003 4233
-----	-------	------------	-----	----------------------	----	--------------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2. 28.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협의회를 통한 보건소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보건소 간의 소통 증진, 지역보건 현안 협의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8조의2제1·3항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전국보건소장 협의회 분담금	201-02 공공운영비	·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 3,000,000원*1회	= 3,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에 따른 분담금
 - * 협의회를 통해 보건소 간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보건 현안을 협의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보건소 및 지역보건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건의
 - 보건소 상호간의 교류와 지역보건관련 기관 및 단체, 학회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2. : 분담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2024	· 분담금 납부 1건(3,000천원)
2025	· 분담금 납부 1건(3,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000	3,000	-	-	
2025	3,000	3,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7급 신지혜	전화	4004
-----	-------	------------	-----	----------	----	------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외 6개소
사업규모	7개소 보건진료소(학운리, 대벽리, 송마리, 성동리, 개곡리, 마조리, 석탄리)		
사업목적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2조제1항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제13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두며, 「농어촌 등 보건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7,010	191,830	191,830	0	0	0	194,850	3,0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7,010	191,830	191,830		0	0	194,850	3,0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4,850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진료소 수용비 : 400,000원*7개소 = 2,800 ·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등 유지보수 : 200,000원*7개소 = 1,400 · 보건진료소 운영 청소용품 등 소모품 구입 : 500,000원*7개소 = 3,500 · 일차진료 관련 용지 제작 및 구입 : 300,000원*12월 = 3,600 ·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 96,500원*7개소*12월 = 8,106 · 청사 관리용역비 = 23,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용역 : 50,000원*7개소*12월 = 4,200 -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 110,000원*7개소*12월 = 9,240 - 해충방제 용역 : 125,000원*7개소*12회 = 10,500 	43,346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201-02 공공운영비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2,500,000원*7개소 · 청사 수목전정 : 300,000원*7개소 · 청사 난방용 유류 구입 : 3,285,700원*7개소 · 청사 공공요금 - 전기요금 : 193,810원*7개소*12월 - 상하수도요금 : 25,000원*7개소*12월 - 통신요금 : 55,000원*7개소*12월	= 17,500 = 2,100 = 23,000 = 23,000 = 16,280 = 2,100 = 4,620	65,600
	307-01 의료및회복비	· 일차진료 의약품 등 구입 - 학운리보건진료소 : 9,322,000원 - 대벽리보건진료소 : 14,978,000원 - 송마리보건진료소 : 11,394,000원 - 성동리보건진료소 : 8,559,000원 - 개곡리보건진료소 : 13,616,000원 - 마조리보건진료소 : 16,900,000원 - 석탄리보건진료소 : 10,225,000원	= 84,994 = 9,322 = 14,978 = 11,394 = 8,559 = 13,616 = 16,900 = 10,225	84,994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진료소 집기비품 구입 - 냉장고 구입 : 510,000원*1개소 - 사무용 의자 : 구입 400,000원*1개소	= 910 = 510 = 400	910

□ 예산요구 사유

-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 보건진료소 관리용역비(오수처리시설, 해충방제 등)
- 보건진료소 시설물 유지·관리비(노후 시설물의 고장 파손 시 신속한 수리·수선·교체)
- 난방용 유류 구입비
- 전기·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납부 경비
- 보건진료소 내소 진료환자들을 위한 집기비품 및 의약품 등 구입

□ 예산증감 사유

- 필수 의약품 계약단가가 전년대비 평균 3.8% 인상되어 기존 예산 내 충분한 수량 확보 어려움
- 보건진료소 환자 수 증가로 의약품 수요 증가(보건진료소 진료비 수입 전년대비 5.5% 상승)
→ 약품 부족으로 환자가 재방문하는 불편 발생, 최근 3년간 보건진료소 간 의약품 전배 횟수 증가
- 보건진료소 주요 진료 대상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로 만성질환은 원인이 복합적이며 진행성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고 효과가 저하되어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제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 → 기존 약제비보다 1.3~1.5배 부담
- 보건진료소 약품보관 등을 위한 냉장고 구입(개곡리보건진료소)
-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직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
- 교체대상 물품 상세현황

품목	취득일	내구연한(사용연수)	사용위치	비고
사무용 의자	2015.04.06.	5년(10년)	개곡리보건진료소 1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 운영
- 2026.01. : 보건진료소 관리용역 계약
- 2026.02. : 김포시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개최, 진료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계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10,276건 · 의료및회복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8,960천원(집행률 98%) · 사무관리비: 18,393천원(집행률 99%) · 공공운영비: 63,093천원(집행률 71%) · 자산및물품취득비: 4,763천원(집행률 99%)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10,433건 · 의료및회복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9,687천원(집행률 99%) · 사무관리비: 39,032천원(집행률 94%) · 공공운영비: 63,120천원(집행률 96%) · 자산및물품취득비: 없음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7,857건 · 의료및회복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9,131천원(집행률 92%) · 사무관리비: 26,553천원(집행률 79%) · 공공운영비: 43,326천원(집행률 66%) · 자산및물품취득비: 4,676천원(집행률 99%)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2,116	165,209	-	26,907	
2024	187,010	181,840	-	5,170	
2025	191,830	161,064	-	30,76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보건진료8급 강지우	전화	4239
-----	-------	------------	-----	------------	----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외 6개소
사업규모	보건진료소 7개소, 연 1회		
사업목적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해당조례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2조, 제7조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600	7,000	7,000	0	0	0	7,000	0	
국비								0	
도비								0	
시비	5,600	7,000	7,000	0	0	0	7,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	7,000	7,000
		- 학운리보건진료소 : 100,000원*11명*1회 =	1,100	
		- 대벽리보건진료소 : 100,000원*11명*1회 =	1,100	
		- 송마리보건진료소 : 100,000원*15명*1회 =	1,500	
		- 성동리보건진료소 : 100,000원* 4명*1회 =	400	
		- 개곡리보건진료소 : 100,000원*13명*1회 =	1,300	
		- 마조리보건진료소 : 100,000원*11명*1회 =	1,100	
		- 석탄리보건진료소 : 100,000원* 5명*1회 =	500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및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제2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 연 1회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각 진료소별 운영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수립
운영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연 1회/7개소
2024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연 1회/7개소
2025	- 마조리·성동리·대벽리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학운리·개곡리·석탄리보건진료소 11월, 송마리보건진료소 12월 개최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600	5,200	-	400	
2024	5,600	5,280	-	320	
2025	7,000	2,500	-	4,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보건진료8급 강지우	전화	4239
-----	-------	------------	-----	------------	----	------

의약업소 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의약관련 업소(의료기관 565개소, 약업소 882개소, 의료기기 1,402개소, 안경업소 등 114개소)		
사업목적	관내 의료기관 등과 상호협력 및 업무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제11조제1항제3호
	해당조례	약사법	제21조의3제4항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860	10,790	10,790	0	0	0	8,280	-2,5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860	10,790	10,790	0	0	0	8,280	-2,5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280	
의약업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의약업소 허가신고증 인쇄 및 물품구입 : 300,000원*3종 = 900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수당 : 100,000원*11명*2회 = 2,200 · 공공심야약국 운영관련 물품구입 : 1,100원*1,000개*2개소 = 2,200		5,300
	201-02 공공운영비	· 의약업소 발송 우편요금 : 2,620원*250개소*4회 = 2,620 · 의약업소 지도단속용 휴대폰 요금 : 30,000원*1대*12월 = 360		2,980

□ 예산요구 사유

- 의약업소 허가신고증 제작 및 필요 물품구입
- 병원급 개설 허가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 공공심야약국 홍보를 위한 운영 물품구입
- 의약업소 지시·안내 사항 전달을 위한 우편물 발송, 업무에 필요한 휴대폰 요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공공심야약국 2개소 간판 제작 완료하여 간판 제작·설치비 감액
- 차세대문자시스템 등 활용하여 의약업소 우편 발송 횟수 축소(6회 → 4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점검·관리 계획수립
- 2026.01. ~ 2026.12. :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점검·관리, 공공심야약국 운영물품 상시 지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병원 개설허가 시 수시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무관리용품,구입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물품 등 구입 : 1,429천원 · 우편요금 및 휴대폰 요금 지급 : 3,905천원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개최 1회(대면심의) : 480천원
2024	· 사무관리용품 및 응급처치교육 홍보물품 구입 : 2,180천원 · 우편요금 및 휴대폰 요금 지급 : 4,018천원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개최 1회(대면심의) : 480천원
2025	· 공공심야약국 간판제작 및 운영관련 물품구입 : 3,462천원 · 우편요금 및 휴대폰 요금 지급 : 3,717천원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개최 1회(대면심의) : 6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860	5,814	-	1,046	
2024	6,860	6,678	-	182	
2025	10,790	7,780	-	3,01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박경철	담당자	보건6급 김정민 보건7급 임정미	전화	4017 4018
-----	-------	------------	-----	----------------------	----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7, 1층(걸포동) 외 1개소
사업규모	2개소(한사랑약국, 건강백세약국)		
사업목적	심야시간(22시~익일01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부작용 최소화로 시민의 보건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약사법	제21조의3제1·4항	
	법령 위임규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80	87,600	87,600	0	0	0	87,600	0	
국비		43,800	43,800	0	0	0	43,800	0	
도비	12,024	0						0	
시비	28,056	43,800	43,800	0	0	0	43,8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7,600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경비 지원 : 40,000원*2개소*3시간*365일 =	87,6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의료자원과-22376(2025. 10. 1.)호에 따른 국비 예산(안) 사전 통보
- 심야시간대(22시~익일01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구매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확약 체결 및 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공공야간·심야약국 월별 운영비 지원
- 2026.01. ~ 2026.12.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상황 상·하반기 점검
- 2026.12.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영기관 : 1개소(한사랑약국) · 의약품판매 및 전화상담 실적 : 2,648건 · 공공야간·심야약국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심플에코백 장바구니 500개
2024	· 운영기관 : 1개소(한사랑약국) · 의약품판매 및 전화상담 실적 : 2,675건 · 공공야간·심야약국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휴대용 밴드 1,000개, 삼각 입간판 1개
2025	· 운영기관 : 2개소(한사랑약국, 건강백세약국) · 의약품판매 및 전화상담 실적 : 5,23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500	34,350	-	150	
2024	40,080	40,080	-	-	
2025	87,600	65,520	-	22,0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박경철	담당자	보건7급 임정미	전화	4018
-----	-------	------------	-----	----------	----	------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사우동)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 안전 복용 교육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사업 8. 그 밖에 방문약료,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781	17,500	17,500	0	0	0	15,000	-2,500	
국비		0						0	
도비	5,334	5,250	5,250	0	0	0	4,500	-750	
시비	12,447	12,250	12,250	0	0	0	10,500	-1,7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의약품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방문복약지도 소모품, 약물오남용 교재비 및 홍보비 등	= 1,450	1,450
	301-12 기타보상금	· 전문강사양성 위탁교육비 : 700,000원*1회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강사 및 방문약료 약사 양성)	= 700	13,550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비 : 160,000원*10회	= 1,600	
		· 방문복약지도 활동비 : 250,000원*45명	= 11,25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의료자원과-24854(2025. 10. 30.)호에 따른 도비 예산(안) 사전 통보
- 시민 대상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적절한 복용방법 숙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시
- 약물의존 고위험군(다제약물 복용자) 및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 복약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약물 치료 효과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의료자원과-24854(2025. 10. 30.)호 관련, 전년 대비 예산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26.01. ~ 2026.04. : 방문복약지도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 2026.01. ~ 2026.12. : 방문복약지도 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시
- 2026.12. :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다제약물 복용자 방문복약지도 : 80명 대상으로 총 3회(방문 3회) 복약지도 제공(1차 80명, 2차 70명, 3차 70명)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 경로당 15회 224명 실시 · 전문약사 양성교육 수료 : 7명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심플에코백 장바구니 1,200개, 마이보틀PET 1,600개
2024	· 다제약물 복용자 방문복약지도 : 55명 대상으로 총 3회(방문 2회, 전화 1회) 복약지도 제공(1차~3차 55명)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 10회 221명 실시(경로당 5회 74명, 복지관 4회 127명, 청소년문화의집 20명) · 전문약사 양성교육 수료 : 5명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휴대용 약통 케이스 312개, 교육 현수막 2개
2025	· 다제약물 복용자 방문복약지도 : 55명 대상으로 총 3회(방문 2회, 전화 1회) 복약지도 제공(1차~3차 55명)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 10회 294명 실시(경로당 4회 85명, 복지관 4회 139명, 행정복지센터 2회 70명) · 전문약사 양성교육 수료 : 26명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돌돌이테이프클리너 327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28,475	-	1,525	
2024	17,781	17,311	-	470	
2025	17,500	2,050	-	15,4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박경철	담당자	보건7급 임정미	전화	4018
-----	-------	------------	-----	----------	----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사업목적	평일 야간·휴일 소아경증환자의 외래 진료를 통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74,348	480,000	480,000	0	0	0	480,000	0	
국비	237,174	240,000	240,000	0	0	0	240,000	0	
도비	237,174	240,000	240,000	0	0	0	240,00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00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 160,000,000원*3개소	= 480,000	

□ 예산요구 사유

-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기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 지정기관 : 히즈메디병원, 김포아이제일병원, 아람드리365소아청소년과의원
 - * 주 7일 운영(야간·휴일 진료시간 41시간이상 46시간 미만/1주)으로 의료기관당 연 160,000천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3. : 달빛어린이병원 상반기 운영지원금 교부
- 2026.09. : 달빛어린이병원 하반기 운영지원금 교부
- 2026.12.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 3개소
2024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 3개소, 474,348천원
2025	· 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25.2.9) : 3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474,348	474,348	-	-	
2025	480,000	336,000	-	144,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6급 김효영	전화	4111
-----	-------	------------	-----	----------	----	------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재난 등으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의료지원체계 확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제1·3·7의2호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90	1,990	1,990	0	0	0	1,980	-10	
국비	1,393	1,393	1,393	0	0	0	1,386	-7	
도비	597	597	597	0	0	0	594	-3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8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신속대응반 운영관련 물품 구입(응급처치물품 등) : 195,000원*4회 = · 신속대응반 강사교육비 : 300,000원*2명*2회 =	780 1,2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응급의료과-11573(2025. 09. 19.)호 관련, 예산 사전 통보(가내시)
- 의료재난 대비 비축 의료물품 정비, 행정물품 확보
- 현장응급의료소 신속대응반 구성인력의 전문교육·훈련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응급의료과-11573(2025. 09. 19.)호 관련, 전년 대비 예산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2. : 추진계획 수립
- 2026.04. ~ 2026.11. : 재난현장 매뉴얼 정비, 재난대비 비축 의료물품, 사무용품 구입
- 2026.06. ~ 2026.11. : 신속대응반 재난응급의료대응 교육훈련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신속대응반 운영물품 구입 : 2,000천원 · 재난현장 의료물품, 신속대응반 우비, 영안실용 몽골텐트 등 -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실시 : 5회
2024	- 신속대응반 운영물품 구입 : 1,390천원 · 재난현장 의료물품, 행정물품(현황판) 제작 등 - 재난교육 강사비 지급 : 600천원 -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실시 : 5회
2025	- 신속대응반 운영물품 구입 : 790천원 · 재난현장 의료처치 물품, 사무용품 구입등 - 재난교육 강사비 지급 : 1,200천원 -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실시 : 4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	2,000	-	0	
2024	1,990	1,990	-	0	
2025	1,990	1,880	-	11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6급 최현옥	전화	4112
-----	-------	------------	-----	----------	----	------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해당조례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2항
<p>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헌혈장려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헌혈장려 홍보물 등 제작 : 4,000원*750개	= 3,000	

□ 예산요구 사유

- 헌혈권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헌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02. : 헌혈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6.02. ~ 12. : 헌혈장려 사업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헌혈 현수막 제작 : 8개/440천원 · 헌혈 홍보물 제작 : 1,100개/4,560천원 · 온누리상품권 지원 : 500매/5,000천원
2024	· 헌혈 홍보물 제작 : 690개/3,000천원
2025	· 헌혈 홍보물 제작 : 800개/3,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	10,000	-	0	
2024	3,000	3,000	-	0	
2025	3,000	3,0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6급 최현옥	전화	4112
-----	-------	------------	-----	----------	----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일반시민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1,600명)		
사업목적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 및 시민 안전성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5호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4조(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 제8조(홍보·지원 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000	14,000	14,000	0	0	0	15,700	1,700	
국비	7,000	7,000	7,000	0	0	0	7,850	850	
도비	0	0						0	
시비	7,000	7,000	7,000	0	0	0	7,850	85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70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응급처치 교육 : 314,000원*50회	= 15,700	

□ 예산요구 사유

-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생존율이 크게 저하되므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응급대응 역량을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응급의료과-12122(2025. 10. 1.)호 관련, 전년 대비 예산 증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2. : 2026년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계획
- 2026.02. ~ 2026.03. : 응급처치 교육 수요조사
- 2026.03. ~ 2026.11. : 신청·접수 및 교육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42회 1,115명
2024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41회 1,167명
2025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42회 1,585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000	13,980	0	20	
2024	14,000	14,000	0	0	
2025	14,000	13,040	0	9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8급 윤세희	전화	4113
-----	-------	------------	-----	----------	----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자동심장충격기 1대,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사업목적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 및 시민 안전성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1조 제6호
	제16조(재정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해당조례	제4조(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200	2,000	2,000	0	0	0	2,580	580	
국비	2,600	1,000	1,000	0	0	0	1,290	290	
도비	0	0						0	
시비	2,600	1,000	1,000	0	0	0	1,290	29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8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 2,000,000원*1대 · 배터리 및 패드 등 소모품 : 580,000원*1회	= 2,000 = 580	

□ 예산요구 사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비 의무기관 제외 시설 중 응급상황 발생 확률이 높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가능한 취약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응급의료과-12633(2025. 10. 16.)호 관련, 전년 대비 예산 증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년 응급장비 지원 활성화 계획
- 2026.03. ~ 2026.09. : 지원 대상 선정
- 2026.10. ~ 2026.11. :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 자동심장충격기 기기 2대(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1대, 김포시니어클럽 1대) 배터리 3개 (통진문화회관 2개, 결포다목적체육관 1개)
2024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 자동심장충격기 기기 2대(김포시의회 1대, 김포시 청소년 수련원 사계절수영장 1대) 패드 3개(양곡휴먼시아1단지 1개, 양곡금호어울림2단지 2개)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600	5,600	-	-	
2024	5,200	4,773	-	427	
2025	2,000	0	0	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8급 윤세희	전화	4113
-----	-------	------------	-----	----------	----	------

응급의료 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자동심장충격기 보유 기관 307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17개소		
사업목적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로 김포시민의 안정성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2제4항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조례	제4조(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82	7,440	7,440	0	0	0	3,900	-3,5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82	7,440	7,440	0	0	0	3,900	-3,5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00	
응급의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 등 구입	= 3,900	
		-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구입 : 200,000원*1개	= 200	
		-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구입 : 100,000원*17개	= 1,700	
		-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 스티커 제작 : 2,000원*1000장	= 2,000	

□ 예산요구 사유

-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 18개(배터리1, 패드17)
 - 유효기간(2년)에 따라 격년으로 예산 편성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기관 내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중이용공간에 AED 위치 안내 스티커 제작 배부

□ 예산증감 사유

- '25년 교육용 도상훈련키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26년 자산 취득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2.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6.03. ~ 2026.04.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및 위치 안내 스티커 구입
- 2026.05. ~ 2026.12. : 응급의료관련 사업 추진(소모품 교환, 스티커 배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 패드1개(공공기관 1)
2024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 패드18개(공공기관 16, 구급차2)
2025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 배터리 1개(북부보건센터), 패드 1개(치매안심센터) · 신속대응반 도상훈련키트 구입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 2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582	2,431	-	151	
2025	7,440	7,417	-	2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8급 윤세희	전화	4113
-----	-------	------------	-----	----------	----	------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사업목적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질 제고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제17조제4항
	법령 위임규정	제16조(재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40,000	0	240,000	0	0	320,000	80,000	
국비		168,000	0	168,000	0	0	224,000	56,000	
도비		72,000	0	72,000	0	0	96,000	24,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00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보조금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보조금 지원(2개소) : 320,000,000원*1회 =	32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응급의료과-12122(2025. 10. 1.)호 관련,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사전 통보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질 제고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실 전담 근무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 202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A등급 200,000천원, B등급 120,000천원, C등급 30,000천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응급의료과-12122(2025. 10. 1.)호 관련, 전년 대비 예산증액 내시
 - 기관별 평가등급 미정으로 '25년에 준하여 내시(A등급 1개소, B등급 1개소), 변경가능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3.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통보
- 2026.05. ~ 2026.10. :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교부
- 2026.12. : 보조금 지원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지급 : 김포우리병원(A등급) 140,000천원 뉴고려병원(B등급) 100,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40,000	240,000	0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8급 윤세희	전화	4113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으로 산모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21,429	1,929,500	1,929,500	0	0	0	2,027,220	97,720	
국비		0						0	
도비	1,205,000	1,350,650	1,350,650	0	0	0	1,419,055	68,405	
시비	516,429	578,850	578,850	0	0	0	608,165	29,31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27,2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2,027,220,000원	= 2,027,220	

□ 예산요구 사유

-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8262(2025. 10. 24.)호 관련, 전년 대비 예산 증액 내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단가 지속 상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사업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및 관리,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지도·감독 관리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400명
20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315명
202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15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07,400	1,707,400	-	0	
2024	1,721,429	1,721,429	-	0	
2025	1,929,500	1,929,5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보건 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으로 산모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2,000	280,000	280,000	0	0	0	271,450	-8,550	
국비		0						0	
도비	131,000	140,000	140,000	0	0	0	81,435	-58,565	
시비	131,000	140,000	140,000	0	0	0	190,015	50,01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1,4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추가형)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271,450,000원	= 271,450	

□ 예산요구 사유

-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출산가정에 정부지원금 지원
 - 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024. 1. 1. 출산아부터 적용)
 -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8262(2025. 10. 24.)호 관련, 전년 대비 예산 감액 내시
- '26년부터 도비 보조비율 변경(5:5 → 3:7)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사업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약 및 관리,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지도·감독 관리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78명 * 2024년 신규사업
202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2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62,000	262,000	-	0	
2025	280,000	280,0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보건 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499명		
사업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
		제15조의18(산후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017,900	622,500	0	149,400	246,000	771,900	-246,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017,900	622,500	0	149,400	246,000	771,900	-246,000	
기타		0						0	

514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71,9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514,800원*1,499명 =	771,900	

□ 예산요구 사유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을 제고
 - 대상 : 김포시 출산가정(거주기한 180일 제한)
 - 내용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사업비 산출 근거

- 2026년 지원 목표 1,499명 : '25년 2월~10월 월평균 지원자 수 138명 × 12개월 × 90.5%
 - * 1월은 2024년 서비스 종료 산모 신청 건이 포함되어 다른 달보다 4배 정도 신청 건이 많아 평균 산출에서 제외
- 1인당 평균 소요 예산액 514,800원 : 2025년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572,000원* × 90%
 - * 2025년 상반기 이용자 기준 유형별 바우처 비율 적용한 표준형 금액 - 통합형:라형=8:2, 첫째:둘째:셋째=6:3:1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은 2024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2월 서비스 종료한 산모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1년 6개월분의 사업 규모로 산출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7.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본인부담금 지원 규정 신설, 김포시 전 출산가정 지원)
 - 2024.01. ~ 2024.12. : 사업 미추진(예산 미편성)
 - 2024.10.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김포시 180일 거주제한 신설 등)
 - 2025.0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시행
 - 2026.01.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추진 계획 수립, 사업 홍보
 - 2026.01. ~ 2026.12. :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지원
 - 2026.12. :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1,63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17,900	838,625	-	179,27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보건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200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해당조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16,000	1,375,500	1,375,500	0	0	0	1,600,000	224,500	
국비		0						0	
도비	921,200	962,850	962,850	0	0	0	800,000	-162,850	
시비	394,800	412,650	412,650	0	0	0	800,000	387,3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00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500.000원*3.200명	= 1,60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김포페이(모바일형)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8021(2025. 10. 21.)호 관련, 전년 예산 대비 224,500천원 증액
- '25년 지원자 수 전년 동기간 대비 117명 증가('25. 10월 기준)
- '26년부터 도비 보조비율 변경(7:3 → 5: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조하에 매주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 대상자 자격 및 중복 청구 확인, 지역화폐 발행, 사업비 정책발행 통장 예치
 - 분기별 지원 현황 보고(경기도)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2,830명
2024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2,487명
2025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2,21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50,000	1,415,000	-	235,000	
2024	1,316,000	1,243,500	-	72,500	
2025	1,375,500	1,002,000	-	373,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이인주	전화	4160
-----	-------	------------	-----	------------	----	------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070명			
사업목적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4호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출산축하금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00	1,070,000	900,000	0	0	170,000	1,07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00	1,070,000	900,000	0	0	170,000	1,070,000	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70,000	
출산축하금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출산축하금 지급(둘째아 이상) : 1,000,000원*1,070명	= 1,07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다자녀가구의 출산에 소모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 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며 출산한 다자녀가정 (둘째아부터 적용/거주기한 180일 제한)
 - 내용 : 현금 100만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출산장려사업 계획수립
- 2026.01 ~ 2026.12 : 사업추진(매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적합여부 조회 및 지급)
- 2026.12 : 출산장려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출산축하금 : 1,297명
2024	· 출산축하금 : 1,000명
2025	· 출산축하금 : 88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41,889	1,359,451	-	82,438	
2024	1,000,000	1,000,000	-	0	
2025	1,070,000	886,000	-	184,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220명		
사업목적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가정경제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해당조례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3호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16,500	1,610,000	1,350,000	0	0	260,000	1,61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16,500	1,610,000	1,350,000	0	0	260,000	1,610,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10,000	
임신축하금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임신축하금 : 500,000원*3,220명	= 1,610,000	

□ 예산요구 사유

- 임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에게 50만원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계획수립
- 2026.01. ~ 2026.12. : 사업추진(임신축하금 지급대상 적합여부 조회 및 지급)
- 2026.12.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임신축하금 지원 : 3,115명
2024	· 임신축하금 지원 : 2,821명
2025	· 임신축하금 지원 : 2,75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60,000	1,557,500	-	2,500	
2024	1,416,500	1,416,500	-	0	
2025	1,610,000	1,378,000	-	23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이인주	전화	4160
-----	-------	------------	-----	------------	----	------

첫만남 이용권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954명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219,000	5,439,000	6,302,000	0	-863,000	0	7,361,000	1,922,000	
국비	5,414,250	4,079,250	4,726,500	0	-647,250	0	5,520,750	1,441,500	
도비	541,425	407,925	472,650	0	-64,725	0	552,075	144,150	
시비	1,263,325	951,825	1,102,850	0	-151,025	0	1,288,175	336,3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361,000	
첫만남 이용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 2,000,000원*1,501명	= 3,002,000	
		· 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 3,000,000원*1,453명	= 4,359,000	

□ 예산요구 사유

-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 발표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사업추진
-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중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일시금)로 지급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족정책과-13908(2025.10.13)호와 관련하여, 전년대비 예산 증액 내시
- '25년 출생아수 전년 동기간 대비 64명 증가('25년 9월 기준)
- 2024년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잔액 1,147,202천원이 2025년 이월되어 총예탁액은 6,586,202천원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 홍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집행 협조 요청
- 2026.01. ~ 2026.12.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연중 접수 및 바우처 지급
- 2026.12. : 사업정산 및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828명
2024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542명
2025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20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744,000	5,744,000	-	-	
2024	7,219,000	7,219,000	-	-	
2025	5,439,000	4,895,100	-	543,9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간호6급 연은영	전화	4151
-----	-------	------------	-----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188건			
사업목적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출산율 증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제1항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20,640	1,760,300	1,760,300	0	0	0	2,633,600	873,300	
국비		0						0	
도비	1,365,480	1,320,225	1,320,225	0	0	0	1,975,200	654,975	
시비	455,160	440,075	440,075	0	0	0	658,400	218,32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33,6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307-01 의료및회복비	· 제외수정 시술비(신선배아) : 1,100,000원*1,862건 · 제외수정 시술비(동결배아) : 500,000원*938건 · 인공수정 시술비 : 300,000원*388건	= 2,048,200 = 469,000 = 116,400	

□ 예산요구 사유

- '22년도 정부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 후 '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전환형 및 경기형) 예산 통합
- 2025년 예산액 합계 작성 : 1,195,000천원(전환형) + 565,300천원(경기형) = 1,760,300천원
-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대상 :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 및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내용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일부, 제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8021(2025.10.21.)호 관련, 예산 증액 내시
- '24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이후 신청자 대폭 증가하여, '25년 신청자 및 지원자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25년 10월 기준)
 - '24년 대비 신청건 2,246건에서 2,679건으로 증가
 - '24년 대비 지급건 1,739건에서 1,844건으로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지원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약제비 지급, 사업 홍보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난임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1,369건/ 인공수정 172건/ 약제비 332건)
2024	· 난임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2,059건/ 인공수정 292건/ 약제비 369건)
2025	· 난임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1,646건/ 인공수정 198건/ 약제비 266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53,286	1,392,043	-	461,243	
2024	1,820,640	1,820,640	-	-	
2025	1,760,300	1,753,071	-	7,22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다인	전화	4153
-----	-------	------------	-----	------------	----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63건			
사업목적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제1항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200	46,000	46,000	0	0	0	81,500	35,500	
국비		0						0	
도비	24,900	34,500	34,500	0	0	0	61,125	26,625	
시비	8,300	11,500	11,500	0	0	0	20,375	8,8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1,500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 500,000원 * 163건	= 81,500	

□ 예산요구 사유

- 난임 시술 도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등의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지원(건강보험 횡수 미차감의 경우)
 - 대상 :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거주 가구
 - 내용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착상보조제) 일부, 약제비 지원/ 최대 50만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8021(2025.10.21.)호 관련, 예산 증액 내시
-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 의해 중단 의료비 지원 신청자 대폭 증가함
- '25년 신청건 전년 동기간대비 108건에서 213건으로 97% 증가하였으며('25. 10월 기준)
'25년 7월부터 미지급금 발생하여 예산 증액 요구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의료비 청구 접수 및 지급, 사업 홍보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급 : 114건 · 난임시술 중단 의료 약제비 지급 : 36건 ※ 2024년 신규사업
2025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급 : 173건 · 난임시술 중단 의료 약제비 지급 : 2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3,200	33,200	-	-	
2025	46,000	45,994	-	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다인	전화	4153
-----	-------	------------	-----	------------	----	------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0건		
사업목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제1항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0,300	10,300	0	0	0	10,000	-300	
국비		5,150	5,150	0	0	0	5,000	-150	기금
도비		2,575	2,575	0	0	0	2,500	-75	
시비		2,575	2,575	0	0	0	2,500	-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여성,남성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 1,000,000원*10건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지원
- 내용 :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총 1회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255(2025. 9. 12.)호 관련, 전년 대비 예산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지원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 지급, 사업 홍보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영구적 불임 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2건 ※2025년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300	2,300	-	8,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다인	전화	4153
-----	-------	------------	-----	------------	----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건		
사업목적	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20~49세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
	위임규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1항6의2	
	제5조(모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의2.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6,000	10,000	0	0	-4,000	6,000	0	
국비		0						0	
도비		3,000	5,000	0	0	-2,000	3,000	0	
시비		3,000	5,000	0	0	-2,000	3,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 2,000,000원*3건	= 6,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8264(2025. 10. 24.)호 관련, 예산 사전 통보
- 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20~49세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 지원
 - 대상 :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가 1.5ng/ml 이하
 - 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지원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 지급, 사업 홍보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0건 ※2025년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6,000	0	-	6,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다인	전화	4153
-----	-------	------------	-----	------------	----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명		
사업목적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확보로 임신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지속적인 예비·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000	29,000	29,000	0	0	0	29,000	0	
국비	18,000	14,500	14,500	0	0	0	14,500	0	
도비	9,000	7,250	7,250	0	0	0	7,250	0	
시비	9,000	7,250	7,250	0	0	0	7,25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00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 29,000	
		- 기본급 : 82,110원*1명*81일(4개월, 7시간 근무)	= 6,651	
		76,245원*1명*166일(8개월, 6.5시간 근무)	= 12,657	
		- 유급휴일수당 : 82,110원*1명*23일(4개월, 7시간 근무)	= 1,889	
		76,245원*1명*45일(8개월, 6.5시간 근무)	= 3,431	
- 4대보험료 : 31,228,571원*14%	= 4,372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656(2025. 9. 19.)호 관련, 예산 사전 통보
- 모자보건사업(예비·신혼부부 임신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인력 필요
 - 2명의 보조 인력을 각각 4개월, 8개월 채용으로 인건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0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2. :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및 계약 체결(1차)
- 2026. 01. ~ 2026.12. : 예비·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 및 임신부 기초검사, 임신축하금등 지원사업 추진
- 2026.04. :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및 계약 체결(2차)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1명(12개월) 채용
2024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2명(8개월/4개월) 채용
2025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2명(8개월/4개월) 채용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000	26,373	-	12,627	
2024	36,000	25,249	-	10,751	
2025	29,000	20,373	-	8,62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이인주	전화	4160
-----	-------	------------	-----	------------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000명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법령 위임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60,000	1,060,000	1,060,000	0	0	0	1,250,000	190,000	
국비	580,000	530,000	530,000	0	0	0	625,000	95,000	
도비	290,000	265,000	265,000	0	0	0	312,500	47,500	
시비	290,000	265,000	265,000	0	0	0	312,500	47,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50,0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625,000원*2,000명	= 1,250,000	

□ 예산요구 사유

- 0~24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영아별 지원(월 9만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영아입양가정 등 해당 시(월 11만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358(2025. 9. 15.)호 관련, 예산 증액 통보
-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다자녀·장애인 가구 지원 대상 확대
 -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 대상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80%→100% 이하, 26.7월부터 시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바우처 지원 대상자 접수·결정·통보 및 지원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936명
2024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821명
2025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57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00	1,000,000	-	0	
2024	1,160,000	1,160,000	-	0	
2025	1,060,000	1,060,0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25명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법령 위임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0	80,000	100,000	0	0	-20,000	100,000	20,000	
국비	50,000	40,000	50,000	0	0	-10,000	50,000	10,000	
도비	25,000	20,000	25,000	0	0	-5,000	25,000	5,000	
시비	25,000	20,000	25,000	0	0	-5,000	25,000	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800,000원*125명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지원대상
 - 미숙아 :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이며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받은 경우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및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내용
 - 입원 중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 한도(3~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지원 한도(5백만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357(2025. 9. 15.)호 관련, 예산 증액 통보
- 경기도 건강증진과 시군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산출하여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정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에 사업 안내(문자 홍보)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92명
2024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62명
2025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0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000	59,979	-	21	
2024	100,000	93,238	-	6,762	
2025	80,000	79,894	-	10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7명		
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 예방 및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600	9,000	6,000	0	0	3,000	8,000	-1,000	
국비	5,800	4,500	3,000	0	0	1,500	4,000	-500	
도비	2,900	2,250	1,500	0	0	750	2,000	-250	
시비	2,900	2,250	1,500	0	0	750	2,000	-2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검사비 지원 : 50,000원*4명	= 200	
		· 보청기 지원 : 2,600,000원*3명	= 7,800	

□ 예산요구 사유

- 난청 검사비 지원 : 12개월 미만 영아
 - 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검사 비용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최대 270만원 한도 지원)
 -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최대 135만원 한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357(2025. 9. 15.)호 관련, 예산 감액 통보
- 경기도 건강증진과 시군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산출하여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검사비·보청기 지원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선천시 난청 검사비 지원 : 3명(선별·확진검사) · 선천시 난청 보청기 지원 : 1명
2024	· 선천시 난청 검사비 지원 : 6명(선별·확진검사) · 선천시 난청 보청기 지원 : 5명
2025	· 선천시 난청 검사비 지원 : 4명(선별·확진검사) · 선천시 난청 보청기 지원 : 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00	3,164	-	36	
2024	11,600	11,600	-	0	
2025	9,000	8,611	-	38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99명		
사업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발견·치료로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5,000	74,000	74,000	0	0	0	60,000	-14,000	
국비	32,500	37,000	37,000	0	0	0	30,000	-7,000	
도비	16,250	18,500	18,500	0	0	0	15,000	-3,500	
시비	16,250	18,500	18,500	0	0	0	15,000	-3,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7-01 의료및회복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50,000원*4명	=	200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200,000원*15명	=	3,000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710,000원*20명*4회(분기별)	=	56,800

□ 예산요구 사유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생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검사비용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357(2025. 9. 15.)호 관련, 예산 감액 통보
- 크론병 특수식이 지원기간 단축: 19세 미만 환자 지원 → 집중 치료 기간(8주)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지원
- 크론병 특수식이 종류 다양화로 인한 지원 단가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검사비·의료비·특수식이 지원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17명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41명
2024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15명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54명
2025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10명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6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6,000	55,893	-	20,107	
2024	65,000	64,040	-	960	
2025	74,000	56,359	-	17,64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6명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40	6,000	6,000	0	0	0	4,800	-1,200	
국비	1,620	3,000	3,000	0	0	0	2,400	-600	
도비	810	1,500	1,500	0	0	0	1,200	-300	
시비	810	1,500	1,500	0	0	0	1,200	-3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800,000원*6명	= 4,800	

□ 예산요구 사유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로 조산예방 및 건강보호
-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범위 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카드 수령 후(또는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유산진단일,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656(2025. 9. 19.)호 관련, 예산 감액 통보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2023년, 2024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실적을 반영하여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지원 대상자 상담·안내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6명
2024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9명
2025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00	7,200	-	0	
2024	3,240	3,240	-	0	
2025	6,000	6,0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00명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3,200	90,000	146,000	0	0	-56,000	129,120	39,120	
국비	81,600	45,000	73,000	0	0	-28,000	64,560	19,560	
도비	40,800	22,500	36,500	0	0	-14,000	32,280	9,780	
시비	40,800	22,500	36,500	0	0	-14,000	32,280	9,78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6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9,12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645,600원*200명	= 129,120	

□ 예산요구 사유

-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받은 임신부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8256(2025. 10. 24.)호 관련, 예산 증액 통보
- 경기도 건강증진과에서 2024년, 2025년 상반기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실적 반영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 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의료비 지원
- 2026. 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43명
2024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85명
2025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6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7,600	67,465	-	135	
2024	163,200	89,124	-	74,076	
2025	90,000	63,371	-	26,62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00명(의료급여수급권자)		
사업목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비용 지원으로 정상적인 성장발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제1항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650	6,350	6,350	0	0	0	5,900	-450	
국비	4,520	5,080	5,080	0	0	0	4,720	-360	
도비	565	635	635	0	0	0	590	-45	
시비	565	635	635	0	0	0	590	-4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900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 59,000원*100명	= 5,900	

□ 예산요구 사유

-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위탁 및 사업 홍보
-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성장단계별(8차)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총 12회로 구성(일반검진 8회, 구강검진 4회)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126(2025. 9. 10.)호 관련, 예산 감액 통보
- 2025년 상반기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수 감소: 작년 동기간 15명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2026.01. ~ 2026.12. : 사업대상자 검진 독려 및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90명
2024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91명
2025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7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00	4,200	-	0	
2024	5,650	5,650	-	0	
2025	6,350	6,35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00명		
사업목적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검사비 지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제1항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중간생략)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460	12,200	15,200	-3,000	0	0	17,850	5,650	
국비	10,768	9,760	12,160	-2,400	0	0	14,280	4,520	
도비	1,346	1,220	1,520	-300	0	0	1,785	565	
시비	1,346	1,220	1,520	-300	0	0	1,785	56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85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178,500원*100명	= 17,850	

□ 예산요구 사유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126(2025. 9. 10.)호 관련, 예산 증액 통보
- 24년 이후 소득 기준 폐지와 관내 영유아 정밀검사 의료기관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자 수 증가 (24년 지원자 월평균 7명→25년 지원자 월평균 9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검사비 지원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 52명
2024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 75명
2025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 6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200	8,817	-	3,383	
2024	13,460	13,460	-	0	
2025	12,200	12,155	-	4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00명(의료급여수급권 대상자)		
사업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로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제1항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중간생략)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00	1,800	1,800	0	0	0	1,800	0	
국비	1,360	1,440	1,440	0	0	0	1,440	0	
도비	170	180	180	0	0	0	180	0	
시비	170	180	180	0	0	0	18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 18,000 * 100명	= 1,8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126(2025. 9. 10.)호 관련, 예산 사전 통보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 임신부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수검 독려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 900개
2024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 500개
2025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 180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50	1,350	-	0	
2024	1,700	1,700	-	0	
2025	1,800	1,795	-	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제작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000개		
사업목적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기록·유지를 위한 표준모자보건수첩과 엠블럼 배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엠블럼 제작 : 1,000원*3,000개	3,000	

□ 예산요구 사유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기록·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자보건수첩과 엠블럼(배지) 제작 비용
 - 임산부 신고·보고 등을 접수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모자보건수첩 발급 의무가 있음
 - 초기 임산부를 포함하여 임산부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엠블럼(배지) 제작 및 배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예산 규모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모자보건수첩과 엠블럼 제작·배부 및 홍보
- 2026.12. :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엠블럼 지원 : 3,280명
2024	·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엠블럼 지원 : 2,803명
2025	·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엠블럼 지원 : 2,93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60	3,060	-	0	
2024	3,000	3,000	-	0	
2025	3,000	3,0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이인주	전화	4160
-----	-------	------------	-----	------------	----	------

모자보건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가임기 여성, 임산부)		
사업목적	임산부 건강관리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80	73,600	50,350	0	0	23,250	76,150	2,5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280	73,600	50,350	0	0	23,250	76,150	2,5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6,150	
모자보건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정수기 임차료 : 50,000원*12월 · 모자보건실 운영 소모품 구입 : 50,000원*20개	= 600 = 1,000	1,600
	307-01 의료및회복비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 철분제 : 6,000원*6,670개 - 엽산제 : 4,500원*6,663개 · 유축기 구입 : 130,000원*35개	= 70,000 = 40,020 = 29,980 = 4,550	74,550

□ 예산요구 사유

- 임산부 영양제 지원을 통해 엽산 및 철분 결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신생아에게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인 모유 수유 장려 및 유축기 구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유축기 대여
- 모유수유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유 데우기, 분유 제조용 정수기 필요
- 유축기 소독, 수유실 운영, 모자보건 업무 등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독티슈, 손세정제 등 소모품 구입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현재 보유 중인 구모델 유축기 80대가 21년도에 단종된 상태이며, 이용자가 구입하는 소모품(흡인기 세트) 구매 불가하여 신모델로 전면 교체 필요
- 보유하고 있는 신형 유축기 75대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원활한 대여를 위해 신형 유축기 구입 필요
- 엽산제 의약품 단가 상승(엽산제 3,500원 → 4,5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철분제 및 엽산제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
 - 2026.01. ~ 2026.12. : 임신부 등록 및 건강관리, 모자보건실·모유수유실 운영
 - 2026.12. : 임신부 등록·영양제 배부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임신부 등록관리 : 2,869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7,388개 · 유축기 대여 : 729명
2024	· 임신부 등록관리 : 3,100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12,150개 · 유축기 대여 : 567명
2025	· 임신부 등록관리 : 2,283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11,931개 · 유축기 대여 : 54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280	3,238	-	42	
2025	73,600	48,470	-	25,1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이인주	전화	4160
-----	-------	------------	-----	------------	----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임산부)		
사업목적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확보로 임산부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 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7,713	103,203	103,203	0	0	0	112,564	9,361	
국비	20,314	30,961	30,961	0	0	0	33,769	2,808	
도비		0						0	
시비	47,399	72,242	72,242	0	0	0	78,795	6,55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2,564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 93,840원*1명*252일 = 23,648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68일 = 6,381 - 4대보험료 등 : 30,028,800원*1명*14% = 4,204 - 신체검사비 : 100,000원*2명 = 200	34,433	34,433
	201-01 사무관리비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운영 소모품 등 구입 = 5,410 - 모자보건사업 안내문 제작 : 1,000원*1,410부 = 1,410 - 모자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 10,000원*400개 = 4,000	5,410	5,410
	301-14 기타보상금	·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비 : 100,000원*56회 = 5,600	5,600	5,600
	307-01 의료및회복비	· 임산부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 : 3,000원*5,756개 = 17,268	17,268	17,268
인력운영비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1명) - 기본급(16호봉) : 2,977,550원*1명*12월 = 35,731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16호봉) : 3,573,060원*1명 = 3,573	40,984	40,984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공무직 보험금(1명) - 4대보험 : 40,983,660원*1명*14% = 5,738 - 퇴직금 : 3,130,700원*1명 = 3,131	8,869	8,869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462호(2025. 9. 30.)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사전통보
- 모자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인력 필요(상반기 1인, 하반기 1인)
- 임산부 건강기능식품 등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높은 임산부 등록률에 따른 임산부 건강교실 필요성 대두 및 체계적 건강관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공무원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 공무원 근로자 25년 1월~8월 육아기 단축근무, 26년 일 8시간 근무로 인건비 상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0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건강기능식품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 임산부 건강교실 계획수립
 - 2026.01. ~ 2026.12. : 영양제 배부, 임산부 건강교실 진행, 기간제 근로자 채용
 - 2026.12. : 영양제 배부, 임산부 건강교실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임산부 등록관리 : 2,869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304명 참여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7,388개
2024	· 임산부 등록관리 : 3,100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517명 참여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12,150개
2025	· 임산부 등록관리 : 2,323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327명 참여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11,931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7,713	65,505	-	2,208	
2025	103,203	82,546	-	20,65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보건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임신 준비 부부 1,953명		
사업목적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4,460	249,790	198,790	0	0	51,000	351,480	101,690	
국비	37,230	124,895	99,395	0	0	25,500	175,740	50,845	
도비	18,615	62,448	49,698	0	0	12,750	87,870	25,422	
시비	18,615	62,447	46,697	0	0	12,750	87,870	25,42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51,48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180,000원*1,953명	= 351,480	

□ 예산요구 사유

- 초저출산 시기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임신 계획 단계부터 체감도 높은 지원 필요
- 난임 및 고위험 임신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지출로 이어지는바 예방을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656(2025. 9. 19.)호 관련, 예산 증액 통보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수요 대폭 증가('25. 10월 기준)
 - '25년 신청인원 전년 동기간대비 1,062명에서 4,430명으로 증가
 - '25년 지급인원 전년 동기간대비 472명에서 1,876명으로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사업추진(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대상 여부 조회 및 지급)
- 2026.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1,062명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급 : 782명
2025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4,430명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급 : 1,87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74,460	69,189	-	5,271	
2025	249,790	180,945	-	68,84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이인주	전화	4160
-----	-------	------------	-----	------------	----	------

국가암 관리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 중 짝수년도 출생자		
사업목적	국가암 무료검진 안내·홍보로 수검률을 향상시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암관리법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 예방의날 및 홍보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980	23,080	23,080	0	0	0	14,400	-8,6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980	23,080	23,080	0	0	0	14,400	-8,6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400	
국가암 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암관리사업 추진 홍보 =	6,400	6,400
		- 암검진 수검안내 홍보책자 등 제작 : 4,000원*900개 =	3,600	
		- 암관리사업 홍보 현수막 등 제작 : 70,000원*20개*2회 =	2,800	
	201-02 공공운영비	· 검진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 500원*16,000부 =	8,000	8,000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 기준 연간 28만 2천여명의 신규 암환자 발생하고, 8만5천여명이 암으로 사망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의 5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암치료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
- 이에 국가암검진사업 안내 및 홍보로 검진율을 향상시켜 암 발병율을 감소하고자 함
- 미수검 대상자에 검진 안내문 우편물 발송

□ 예산증감 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암검진 안내 책자 및 미수검자 검진안내 우편요금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2. : 사업계획 수립
- 2026.03. ~ 2026.12. : 사업 홍보 및 전화, 문자, 우편 안내문 등 발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암검진 수검 독려 전화 및 문자 발송 : 57,065건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발송 : 25,559명 · 채번통 배부 : 35,000개 · 암관리사업 홍보 :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14곳 배너 설치, 타사업 연계 등 홍보 10회
2024	· 암검진 수검 독려 전화 및 문자 발송 : 59,566건 · 미수검 검진 대상자 우편 안내문 발송 : 27,923건 · 사업 홍보 : 보건소 및 공공현수막 게시대 등 16곳 현수막 설치, 타사업 연계 등 홍보 3회, 시청·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반상회 등 홍보 2회
2025	· 암검진 수검 독려 전화 및 문자 발송 : 33,185건 · 사업 홍보 : 보건소 및 공공현수막 게시대 등 16곳 현수막 설치, 타사업 연계 등 홍보 4회, 시청·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반상회 등 홍보 2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860	23,539	-	3,321	
2024	26,980	26,980	-	-	
2025	23,080	10,996	-	12,08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의료기술6급 김춘숙 간호8급 박다윗	전화	4101 4103
-----	-------	------------	-----	------------------------	----	--------------

국가 암관리(암검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50% 이하 중 짝수년도 출생자		
사업목적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항
	해당조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제52조 제2항 제2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76,226	841,420	841,420	0	0	0	2,065,050	1,223,630	
국비	338,113	420,710	420,710	0	0	0	1,032,525	611,815	
도비	50,717	63,107	63,107	0	0	0	154,879	91,772	
시비	287,396	357,603	357,603	0	0	0	877,646	520,04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65,050	
국가 암관리 (암검진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국가 암검진사업 추진 인부임 - 기본급(8개월) : 70,380원*165일*2명 = 23,226 - 유급휴일수당 : 70,380원*43일*2명 = 6,053 - 명절휴가비 : 375,000원*2명 = 750 - 기본급(2개월) : 70,380원*45일*2명 = 6,335 - 유급휴일수당 : 70,380원*10일*2명 = 1,408 · 4대보험료 등 : 37,772,000원*14% = 5,289	37,772	43,061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국가 암검진비 위탁금 : 2,021,989,000원 = 2,021,989	2,021,989	

□ 예산요구 사유

-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저소득 대상자의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비 지원
- 인구증가에 따른 검진 대상자 증가로(278,031건)로 담당자 1인이 검진 안내를 하기엔 불가하여 검진안내 및 독려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 예산증감 사유

- 보건의료정책과-16497(2025.10.29.)호 2026년 암관리사업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의거 증액
- '25년 8월 기준 김포시 누적 미지급금 1,086,003천원('24년 이전 검진 미지급금 514,281천원, '25년 검진 미지급금 571,723천원)으로 검진기관별 미지급 검진비 지급요청 민원 다수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0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2. : 사업계획 수립
 - 2026.03. ~ 2026.12. : 분기별 국가 암검진비 예탁(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03. ~ 2026.12. : 지역행사 및 타사업 연계 암검진사업 홍보
 - 2026.03. ~ 2026.12. : 검진대상자에 1:1 유선안내, 우편물 발송을 통한 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암검진비 분기별 예탁 : 465,763천원 · 암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전화, 문자, 우편 안내 : 74,329명 · 암관리사업 대시민 홍보 : 10회 · 암검진 수검실적 : 86,032건
2024	· 암검진비 분기별 예탁 : 676,226천원 · 암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전화, 문자 안내 : 59,566명 · 암관리사업 대시민 홍보 : 85회(검진기관 방문 포스터 부착홍보 및 현수막 게첨 등) · 암검진 수검실적 : 115,062건
2025	· 암검진비 분기별 예탁 : 841,420천원 · 암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전화, 문자 안내 및 우편통보 : 52,096명 · 암관리사업 홍보 : 지역행사 및 타사업 연계 오프라인 홍보 및 현수막 게첨 등 · 암검진 수검실적 : 82,75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93,240	492,834	0	406	
2024	676,226	676,135		91	
2025	841,420	838,175	-	3,24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의료기술6급 김춘숙	전화	4101
-----	-------	------------	-----	------------	----	------

암환자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소아 암환자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진단부터 연속 지원함으로 암치료를 및 생존율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암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항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106	95,188	95,188	0	0	0	80,000	-15,188	
국비		0						0	
도비	103,561	54,733	54,733	0	0	0	46,000	-8,733	
시비	76,545	40,455	40,455	0	0	0	34,000	-6,4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0	
암환자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80,000,000원	= 80,000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속 3년간 지원
-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소득·재산 조사 기준을 충족한 건강보험가입자
 - * 연간 최대 2,000만원(기타 암) ~ 3,000만원(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6497(2025.10.29.)호와 관련, 전년 대비 예산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암환자 의료비 신청 접수 및 등록, 암환자 의료비 지급
 소아 암환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결정 통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암환자의료비 지원 : 246명 246,340천원 [건강보험(5대암종) 102명 75,017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120명 128,423천원, 소아암 24명 42,900천원]
2024	· 암환자의료비 지원 : 138명 180,106천원 [건강보험(5대암종) 30명 15,373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96명 100,562천원, 소아암 12명 64,170천원]
2025	· 암환자의료비 지원 : 60명 92,801천원 [건강보험(5대암종) 13명 9,473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38명 52,152천원, 소아암 9명 31,17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3,800	246,340	-	137,460	
2024	180,106	180,106	-	0	
2025	95,188	92,801	-	2,38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8급 박다윗	전화	4103
-----	-------	------------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국가지원 1,338개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김포시민		
사업목적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94,694	840,732	520,732	320,000	0	0	290,290	-550,442	
국비	297,347	420,366	260,366	160,000	0	0	145,145	-275,221	
도비		0						0	
시비	297,347	420,366	260,366	160,000	0	0	145,145	-275,22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0,29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예탁금 : 290,290,000원	= 290,290	

□ 예산요구 사유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복지수준 제고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수시 및 상·하반기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기준 적합 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경우 희귀질환(1,338개 질환) 중 간병비(100개 질환), 보조기기 구입비(96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추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787(2025.10.02.)호 관련, 예탁금 잔고금액에 따른 시군별 예산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신청접수, 등록 및 소득·재산 수시 조사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분기별 예탁
- 2026.03. ~ 2026.06.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상반기)
- 2026.09. ~ 2026.12.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하반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155명 / 9,079건
2024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159명 / 8,233건
2025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152명 / 7,504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70,000	870,000	-	0	
2024	594,694	594,694	-	0	
2025	840,732	840,732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8급 박다윗	전화	4103
-----	-------	------------	-----	----------	----	------

진료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보건소 내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증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지역보건의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
	위임규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576	49,146	49,146	0	0	0	22,318	-26,82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576	49,146	49,146	0	0	0	22,318	-26,82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318	
진료사업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진료사업 업무대행 인건비 - 진료실,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 150,000원*2명*20일 =	6,000	6,000
	201-01 사무관리비	· 진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 : 20,000원*5종*3회 =	300	1,646
		· 방사선실 운영 - 방사선 선량측정기 판독료 : 36,500원*4회 =	146	
		- 방사선실 민원인용 검진가운 : 50,000원*6벌 =	300	
		-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 : 20,000원*5종 =	100	
· 물리치료실 장비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 : 400,000원*2회 =	800			
201-02 공공운영비	· 의료영상저장 전송장치 유지보수 : 396,000원*12월 =	4,752	12,172	
	· 방사선촬영장비 방화벽 유지보수 : 660,000원*2회 =	1,320		
	· 방사선촬영장비 유지보수 : 1,100,000원*1회 =	1,100		
	· AI 의료영상분석 보조서비스 유지보수 : 416,600원*12월 =	5,000		
307-01 의료및회복비	· 진료실 기자재 및 의약품 구입 : 50,000원*10종 =	500	2,500	
	· 물리치료실 기자재 및 의약품 구입 : 500,000원*4회 =	2,000		

□ 예산요구 사유

- 담당자의 교육 및 연가 등 부재 시 진료사업 업무 전문 대체 인력 필요
-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검진 및 물리치료를 위한 기자재, 의약품 등 구입
- 방사선 장비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AI 의료영상분석 보조서비스 등 유지보수
- 만성질환자 진료 및 성매개감염병 환자 치료 관리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자산(냉난방기, PACS 서버, AI 소프트웨어) 취득 완료로 자산취득비 미편성
- 2025년 도입한 AI 의료영상분석 보조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
- 물리치료실 기자재 및 의약품 단가 상승, 환자 증가로 구입비 증액
- 물리치료실 신규 장비 구입 등에 따른 장비 유지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추진계획수립
 - 2026.01. ~ 2026.12. : 진료사업 운영
 - 2026.06. : 진료사업 기자재 및 의약품 등 구입
 - 2026.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진료실적 : 10,038건,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 32,562건 · 방사선 촬영 : 30,702건, 골밀도 검사 : 608건 · 물리치료 : 2,068명
2024	· 진료실적 : 10,733건,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 32,902건 · 방사선 촬영 : 35,109건, 골밀도 검사 : 674건 · 물리치료 : 3,071명, 맞춤형 허리튼튼 운동교실 : 597명
2025	· 진료실적 : 8,680건,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 30,896건 · 방사선 촬영 : 31,355건, 골밀도 검사 : 577건 · 물리치료 : 2,412명, 맞춤형 허리튼튼 운동교실 : 65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645	20,428	-	217	
2024	19,576	18,198	-	1,378	
2025	49,146	38,516	-	10,6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의료기술7급 권여민 간호8급 김영지 의료기술8급 양은지	전화	4106 4105 4104
-----	-------	------------	-----	--------------------------------------	----	----------------------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0세 ~ 64세,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사업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제1항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800	36,800	36,800	0	0	0	72,010	35,210	
국비	29,440	29,440	29,440	0	0	0	57,608	28,168	
도비	1,104	1,104	1,104	0	0	0	2,160	1,056	
시비	6,256	6,256	6,256	0	0	0	12,242	5,98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010	
일반건강검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위탁금 : 72,010,000원 =	72,010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발견된 질환치료를 유도관리함으로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년도에 따라 2년마다 짝·홀수로 구분하여 건강검진을 안내 검진독려를하며, 검진항목은 성별·연령에 따라 달라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127(2025.9.10.) 2026년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국·도비보조금 사전통보(가내시)에 의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2. : 사업계획 수립
- 2026.03. ~ 2026.12.: 분기별 국가건강검진비 예탁(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03. ~ 2026.12.: 지역행사 및 타사업 연계 건강검진사업 홍보
- 2026.03. ~ 2026.12.: 전화, 우편물 발송을 통한 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비 분기별 예탁 : 40,800천원 · 건강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전화, 문자, 우편 안내 : 2,697명 · 일반건강검진 수검실적 : 585명 · 생애전환기검진 수검실적 : 497명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비 분기별 예탁 : 36,800천원 · 건강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전화, 문자, 우편 안내 : 2,697명 · 일반건강검진 수검실적 : 743명 · 생애전환기검진 수검실적 : 562명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비 분기별 예탁 : 36,800천원 · 건강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전화, 문자, 우편 안내 : 5,728명 · 일반건강검진 수검실적 : 593명 · 생애전환기검진 수검실적 : 49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800	38,263	-	2,537	
2024	36,800	36,800	-	-	
2025	36,800	36,8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의료기술6급 김춘숙	전화	4101
-----	-------	------------	-----	------------	----	------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만 19세 이상 시민		
사업목적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 제1항
	위임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제3호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000	36,000	36,000	0	0	0	30,000	-6,000	
국비		0						0	
도비	10,800	10,800	10,800	0	0	0	9,000	-1,800	
시비	25,200	25,200	25,200	0	0	0	21,000	-4,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연명의료등록사업 인부임 - 기본급(8개월) : 93,840원*1명*169일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45일 - 명절휴가비 : 500,000원*1명 - 기본급(2개월) : 93,840원*1명*43일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10일 · 4대 보험료 등 : 25,557,000원*14%	= 25,557 = 15,859 = 4,223 = 500 = 4,036 = 939 = 3,578	29,135
	201-01 사무관리비	· 연명의료등록사업 홍보물 등 제작 : 2,500원*346개	= 865	

□ 예산요구 사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등록 및 정보제공 등 지원을 위한 홍보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6494(2025.10.29.)호에 따른 예산 사전 통보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홍보
- 2026.12. : 사업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 2,049명
202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 2,716명 · 상·하반기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2025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 1,958명 · 상·하반기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0	34,748	-	1,252	
2024	36,000	35,521	-	479	
2025	36,000	27,716	-	8,28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민정	전화	4110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요구액	8,153,63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0	20	50	-30	20	0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	20	50	-30	20	0	
임시적세외수입	2,050	130	200	-70	6,130	6,000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방역용 화물차량 매각대금	2,000	0	0	0	6,000	6,000	· 차량 및 정수 매각 비용 추정
기타수입/그외수입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50	130	200	-70	13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1,000	1,000	0	1,000	0	
과태료/기타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0	1,000	1,000	0	1,000	0	

감염병 대응 및 예방 활동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감염병 조기감지 및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4호, 제64조 제11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660	4,060	4,060	0	0	0	5,530	1,47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5,660	4,060	4,060	0	0	0	5,530	1,470	10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30	
감염병 대응 및 예방 활동	201-01 사무관리비	·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 2,500원*1,000개	= 2,500	
	201-02 공공운영비	· 감염병 예방 업무용 휴대폰 통신요금 : 45,000원*12월	= 540	
		· 감염병 예방 홍보용 우편요금 : 520원*1,000통	= 52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감염취약시설 교육용 이동 비디오프로젝터 1,970,000원 *1대	= 1,970		

□ 예산요구 사유

- 상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매
 - 감염병 예방 수칙 등 홍보문구 삽입하여 물품 제작
 - 배부방법 :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축제·행사 시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배부
- 감염병 예방 홍보·안내자료 및 공문 발송용 우편요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질병정보 모니터링 요원 교육 의무 해제에 따른 강사비 삭감
- 효과적인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예방교육을 위한 이동용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 교육사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2025.9.1. 반영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2026. 01. ~ 12. : 24시간 감염병 대응 비상연락망 유지
- 2026. 03. ~ 11.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 2026. 04. ~ 12. :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제작 등 홍보 활동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 홍보물 1,500개 배부 ·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실시(2회/96명) · 감염취약시설 등 감염병 예방 교육(25건/346명) · 1급감염병(메르스 등) 역학조사 및 이송 6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 홍보물 850개 배부 ·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1회/47명) · 감염취약시설 등 감염병 예방 교육(51건/1,504명) · 1급감염병(메르스 등) 역학조사 및 이송 3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 홍보물 1201개 배부 ·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2회/82명) ·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방문지도) 25개소 · 1급감염병(메르스 등) 역학조사 4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3,847	92,949	-	898	
2024	5,660	5,660	-	-	
2025	4,060	3,469	-	591	10.31.기준 집행현황

□ 구매물품사진

부서	감염병관리과	물품규격	345X99X261m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970 (수수료 포함)
부기명 (세부사업)	감염병예방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	비치장소 (설치장소)	사우중로 108		
물품사진	 <div style="float: right; width: 30%;"> <p>비디오프로젝터</p> <p>물품식별번호 24305130 관심상품 0</p> <p>★ 0 (0)</p> <p>1,760,000원</p> <p>·업체명 씨앤디피코리아 주식회사</p> <p>·규격명 비디오프로젝터, Boxlight, (CN)ALU452, 4500ANSI lm</p> <p>·원산지 중국</p> <p>·주요부품1[원산지] Main Board[중국]</p> <p>·주요부품2[원산지] Lamp[중국]</p> <p>·제조사 Boxlight</p> <p>·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p> <p>·계약번호 R25TA00363291-00-3</p> <p>·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 별도 <input type="checkbox"/> 조달수수료 계산</p> <p>·공급지역 전지역</p> <p>·인증정보</p> <p>물품 부가정보</p> </div>				
	<p>① 조달업체가 등록된 '상품상세정보'의 내용(제품에 대한 기능, 성능, 품질 등)이 위 '제품상세정보'의 '첨부파일'에 있는 '규격서(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판명될 경우, 조달청은 관련규정에 의거 종합소빙물의 상품등록을 정지시킵니다.</p> <p>② (경고) 상품상세정보에 등록된 이미지를 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심필기	담당자	보건9급 이진여	전화	4031
-----	--------	-------------	-----	----------	----	------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4급 감염병 중 주요 감염병(인플루엔자, 성매개 등)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13개소		
사업목적	주요 감염병 발생 추이 관찰, 유행 확인 및 감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4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200	8,520	7,200	1,320	0	0	21,000	12,480	
국비	3,600	4,260	3,600	660			10,500	6,240	50%
도비	1,080	1,278	1,080	198			3,150	1,872	15%
시비	2,520	2,982	2,520	462			7,350	4,368	3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	
표본감시 운영비	301-14 기타보상금	· 수족구·인플루엔자 감시운영경비 : 150,000원*12개월*1개소	= 1,800	
		· 인플루엔자(실험실) 감시운영경비 : 140,000원*12개월*1개소	= 1,680	
		· 인플루엔자(임상) 감시운영경비 : 140,000원*12개월*8개소	= 13,440	
		· 급성설사질환 감시운영경비 : 140,000원*12개월*1개소	= 1,680	
		· 성매개감염병 감시운영경비 : 30,000원*12개월*3개소	= 1,080	
		· 안과감염병 감시운영경비 : 30,000원*12개월*1개소	= 360	
		·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운영경비 : 40,000원*12개월*1개소	= 480	
		· 장관감염증 감시운영경비 : 20,000원*12개월*1개소	= 240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감시운영경비 : 20,000원*12개월*1개소	= 240	

□ 예산요구 사유

- 주요 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병,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안과감염병 등)의 발생 문제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 추이 관찰을 위하여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운영비 지급
- 집단발생 유행을 확인하고 홍보 및 교육하여 감염병을 예방관리 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수족구 임상감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 확대 운영에 따라 인플루엔자(임상) 감시 기관 1개소 → 8개소로 확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의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표본감시기관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isc>)에 주1회 환자보고
 - 2026. 03.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운영경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표본감시 기관 : 4개소(봄소아청소년과의원, 아이민산부인과의원, 해맑은의원, 민흥기안과의원) · 안과 감염병 32건 · 성매개감염병 99건 ·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593건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 4,147건
2024	· 표본감시 기관 : 5개소(봄소아청소년과의원, 아이민산부인과의원, 해맑은의원, 민흥기안과의원, 하이이비인후과의원) · 안과 감염병 52건 · 성매개감염병 65건 · 수족구병 104건, 인플루엔자 508건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 1,809건
2025	· 표본감시 기관 : 6개소(봄소아청소년과의원, 아이민산부인과의원, 해맑은의원, 민흥기안과의원, 하이이비인후과의원, 김포우리병원) · 안과 감염병 35건 · 성매개감염병 94건 · 수족구병 21건, 인플루엔자 741건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 911건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실적 조회가 불가하여 25.9.20.실적까지 작성함.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80	5,880	-	0	
2024	7,200	7,200	-	0	
2025	8,520	8,520	-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심필기	담당자	보건9급 이진여	전화	4031
-----	--------	-------------	-----	----------	----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개소(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사업목적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4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320	3,800	3,600	200	0	0	3,800	0	
국비	4,320	3,800	3,600	200			3,800	0	100%
도비									
시비									
기타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800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301-14 기타보상금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 1,900,000원*2개소	= 3,800	

예산요구 사유

- 의료관련감염병(항생제내성균 4종)에 대한 표본감시 활동 및 운영비 지급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의료관련감염병(항생제내균 4종) 주 1회 환자보고
- 2026. 03.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급
- 2026. 12. : 의료관련감염병 지정기관 표본감시 활동 성과지표 결과 제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 영양병원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원내 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13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52회/1,112건
2024	· 원내 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6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예방 관리 (환자 격리, 개인 격리물품 비치 등)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52회/891건
2025	· 원내 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29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예방 관리 (환자 격리, 개인 격리물품 비치 등)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43회/1,00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20,000	-	0	
2024	4,320	4,320	-	0	
2025	3,800	3,800	-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심필기	담당자	보건9급 이진여	전화	4031
-----	--------	-------------	-----	----------	----	------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검사실
사업규모	지역주민, 김포시 주소지를 둔 예비부부·신혼부부, 임산부		
사업목적	감염성 질환의 조기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 1항 제 5호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항 제 7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4,290	134,280	134,280	0	0	0	133,800	-4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4,290	134,280	134,280				133,800	-480	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3,800	
검사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의료폐수 등 위탁 처리비 : 750,000원*2회 · 검체 운송비 : 70,000원*40회	= 1,500 = 2,800	4,300
	201-02 공공운영비	· 검사장비 유지보수 : 1,000,000원*5대	= 5,000	
	307-01 의료 및 회복비	· 검사시약 및 의료소모품 구입 : 249,000원*125종*4회	= 124,500	

□ 예산요구 사유

- 수인성·식품 매개 및 HIV(AIDS) 선별검사 양성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최종 판정 검사 의뢰. 검체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월평균 3회 운송비 발생
-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비 유지보수비 필요 (증류장치 필터 정기 교체 및 장비 고장)
- 검사 수행을 위한 필수 의료 소모품과 시약 확보 구입비 발생

□ 예산증감 사유

- 피복비, 자산 취득비 미편성에 따른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검사실 연간 운영계획 수립
- 2026. 01. ~ 12. : 검사 및 보건사업 검사 수행 (제증명,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등) 의료 소모품 등 검사 시약 확보 및 재고 관리
검사장비 유지보수 및 내부 정돈관리 주기적 실시
- 2026. 12. : 검사실 운영 실적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건강진단결과서 28,830명 · 건강진단서 384명 · 진단검사 76,694건 ·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진단검사 1,546명
2024	· 건강진단결과서 32,923명 · 건강진단서 461명 · 진단검사 112,505건 ·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진단검사 1,911명
2025	· 건강진단결과서 28,401명 · 건강진단서 454명 · 진단검사 110,379건 ·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진단검사 1,66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420	89,817	-	603	
2024	174,290	173,359	-	931	
2025	134,280	108,121	-	26,15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심필기	담당자	의료기술7급 조선진	전화	4028
				의료기술8급 조은정		4032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기간	2026. 9. ~ 2026. 1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생물테러 모의훈련 1회		
사업목적	생물테러대비 초동대응 요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제5호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00	0	0	0	0	0	3,200	3,200	
국비	1,600	0					1,600	1,600	50%
도비	480	0					480	480	15%
시비	1,120	0					1,120	1,120	3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생물테러 대비·대응 홍보물 제작 : 3,000원*900개 · 현수막 제작 및 훈련 물품 구입 : 270,000원 · 모의훈련 교육 강사비 : 230,000원*1명*1회	= = =	2,700 270 230

□ 예산요구 사유

- 생물테러 대비 체계적인 대응 교육 및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공조체계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생물테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생물테러 대응 개인보호복 착용, 다중탐지키트 시행, 검체 수송 용기 포장 및 이송 실습 훈련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격년제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026년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9. : 기본계획 수립
- 2026. 10. :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실습 실시
- 2026. 11. : 훈련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격년제로 미실시
2024	· 생물테러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실시 : 1회(2024.11.21.)
2025	· 격년제로 미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200	3,200	-	0	
2025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이청희	담당자	의료기술6급 이청희	전화	4066
-----	--------	-------------	-----	------------	----	------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역 (약 276.6km ²)		
사업목적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0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제1호, 제10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68,848	397,023	454,453	0	0	-57,430	504,161	107,13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68,848	397,023	454,453			-57,430	504,161	107,138	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4,161	
취약지역 방역소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93,840원*2명*167일 = 31,343 · 명절휴가수당 : 500,000원*2명 = 1,000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2명*45일 = 8,446 · 시간외근무수당 : 17,600원*36시간*2명*5월 = 6,336 · 4대보험료 : 32,631,000원*14% = 4,569 · 피복비 : 140,000원*2명 = 280 · 야간급식비 : 9,000원*2명*60일 = 1,080 · 특수건강검진비 : 80,000원*2명 = 160 	53,214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 직원용 피복비 : 250,000원*2명 = 500 · 방역소독 직원 특수건강검진비 : 80,000원*2명 = 160 	660	
	201-02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방역소독용 유류비 : 50,000원*6대*9월 = 2,700 · 방역용 휴대폰 요금 : 45,000원*6대*12월 = 3,240 · 방역차량 감시용 GPS 임대 및 통신유지비 : 126,000원*10대*8월 = 10,080 · 방역소독 관련 공문발송 우편요금 등 : 500원*3,500통 = 1,750 · 방역소독 급수비 : 2,600원*10권역*120회 = 3,120 	20,890	
	206-01 재료비	· 위생해충용 살충제, 소독제 등 구입 : 43,000원*872ℓ = 37,496	37,496	37,496
	307-05 민간위탁금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위탁 방역소독 : 35,987,520원*10권역 = 359,876	359,876	359,876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기 및 건조기 : 2,500,000원*1대 = 2,500 · 해충퇴치기 : 900,000원*5대 = 4,500 · 방역소독용 화물차량 구입 25,025,000원*1대 = 25,025 	32,025	

□ 예산요구 사유

- 이상기후 등으로 돌발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의 개체수 증가로 지속적인 방역 활동 필요
- 공장, 농가주택 등 사유지 내 방역 수요 증가로 민간자율방역 지원 확대
- 효과적인 방제활동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대응반 편성(기간제근로자 2인 포함)
- 야간시간에 활동하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위한 야간 집중 방역 필수

□ 예산증감 사유

- 민간위탁 방역소독 담당구역 확대 및 작업빈도 증가로 단가 상승
- 방역소독 작업 후 방역근로자 피복 및 물품 정비를 위한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 내구연한이 지난 해충퇴치기(15년 설치, 내구연한 7년) 21대 중 일부 교체
- 내용연수(9년, 12만km 이상)를 초과한 방역소독용 화물차량(12년, 17만km) 교체를 위한 차량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승인			동의		승인
일자	2025.11. 반영					2025.10.24. 반영			2025.10.23. 반영		2025.9.29. 반영

□ 구매물품사진

부서	감염병관리과	물품규격	세탁24kg, 700X990X830m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00
부기명 (세부사업)	취약지역 방역소독	비치장소 (설치장소)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1층 종합방제반 정비실		
물품사진	<p>다수공급자계약 대기입 제조</p> <p>가정용세탁기</p> <p>물품식별번호 25472686 관심상품 0</p> <p>★ 0 (0)</p> <p>1,300,000원</p> <p>다량납품할인을 확인</p> <p>업체명: 엘지전... 계약자/공급자 정보조회</p> <p>규격명: 가정용세탁기, 엘지전자, (VN)FG24KN, 세탁24kg</p> <p>원산지: 베트남</p> <p>제조사: 엘지전자 주식회사</p> <p>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p> <p>계약번호: 0024C0690-06-9</p> <p>조달수수료 별도 조달수수료 계산</p> <p>공급지역: 전지역</p> <p>인증정보</p>				

부서	감염병관리과	물품규격	건조19kg, 700X990X820m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150
부기명 (세부사업)	취약지역 방역소독	비치장소 (설치장소)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1층 종합방제반 정비실		
물품사진	<p>다수공급자계약 대기입 제조</p> <p>세탁물건조기</p> <p>물품식별번호 25071794 관심상품 5</p> <p>★ 5.00 (1)</p> <p>1,150,000원</p> <p>다량납품할인을 확인</p> <p>업체명: 엘지전... 계약자/공급자 정보조회</p> <p>규격명: 세탁물건조기, 엘지전자, RG19KN, 19kg</p> <p>원산지: 대한민국</p> <p>제조사: 엘지전자 주식회사</p> <p>납품기한: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p> <p>계약번호: 001782413-20-13</p> <p>조달수수료 별도 조달수수료 계산</p> <p>공급지역: 전지역(제주도 제외, 도서지역은 추가비용 발생)</p> <p>인증정보</p>				

부서	감염병관리과	물품규격	200X650mm(5대)	본예산 요구액 (천원)	4,500
부기명 (세부사업)	취약지역 방역소독	비치장소 (설치장소)	관내 말라리아 환자 다발생 지역 다중이용시설(공원, 산책로 등)		
물품사진	 <p>포송기</p> <p>업체명 : 히트러너 주식회사[중소기업] 계약자/공급자 정보조회</p> <p>계약방법 : 다수공급자계약</p> <p>규격명 : 포송기, 히트러너, HRE-02-A, 200×650mm (제조)</p> <p>가격 : 880,000 원 [다량납품할인을 확인]</p> <p>단위 : 대</p> <p>원산지 : 대한민국</p> <p>제조사 : 히트러너 주식회사</p> <p>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p> <p>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p> <p>공급지역 : 전지역</p> <p>부가내역부 : 부가가치세 포함</p>				

부서	감염병관리과	물품규격	포터II, 스마트스트림 LPG 2.5 터보 더블캡 초장축 모던 2WD 2024년 M/T	본예산 요구액 (천원)	25,025
부기명 (세부사업)	취약지역 방역소독	비치장소 (설치장소)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지하1층 주차장		
물품사진	 <p>다수공급자계약 대기중 재고</p> <p>화물트럭</p> <p>품목식별번호 25279163 관심상품 0</p> <p>★ 0 (0)</p> <p>22,360,000원</p> <p>대한민국</p> <p>현대자동차 주식회사</p> <p>규격명 화물트럭, 현대자동차, 포터 II 스마트스트림 LPG 2.5 터보 더블캡 초장축 모던 2WD 2024년, M/T [제한유형제외]</p> <p>원산지 대한민국</p> <p>제조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p> <p>납품기한 210일 (납품요구일로부터)</p> <p>계약번호 0024B0268-01-7</p> <p>포달수수료 별도 포달수수료 계산</p>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방역소독 사업 계획 수립 및 해빙기 방역
- 2026. 03. ~ 11. : 취약지역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종합방제사업 실시
민간 방역소독 용역 계약 및 위탁사업 수행
- 2026. 11. ~ 12. :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 정산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1명 · 해빙기방역 실시 : 90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2,839회 · 민간위탁 방역소독 14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302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2,043ℓ 사용 · 해충퇴치기 260대, 해충기피제함 15대 관리, DMS 12대 관리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빙기방역 실시 : 129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2,982회 · 민간위탁 방역소독 16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371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2,861ℓ 사용 · 해충퇴치기 300대, 해충기피제함 15대 관리, DMS 12대 관리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빙기 방역 실시 : 유충구제 86회, 연막소독 47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3,378회 · 민간위탁 방역소독 10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145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2,998ℓ 사용 · 해충퇴치기 308대, 해충기피제함 19대 관리, DMS 12대 관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9,525	522,158	-	17,367	
2024	568,848	520,632	-	48,216	
2025	397,023	380,574	-	16,44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김재민	전화	4119
-----	--------	-------------	-----	----------	----	------

말라리아 퇴치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6. 2. 1. ~ 2026. 11. 30.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 지역		
사업목적	효율적, 능동적 방제활동으로 말라리아 환자 확산 방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1조(소독 의무)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8,400	429,960	429,960	0	0	0	368,913	-61,047	
국비									
도비	61,680	128,988	128,988				110,674	-18,314	30%
시비	246,720	300,972	300,972				258,239	-42,733	7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8,913	
말라리아 퇴치사업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93,840원*8명*167일 = 125,371 · 명절휴가수당 : 500,000원*8명*1회 = 4,000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8명*45일 = 33,783 · 시간외근무수당 : 17,600원*36시간*8명*5월 = 25,344 · 4대보험료 : 163,154,000원*14% = 22,842 · 피복비 : 140,000원*8명 = 1,120 · 야간급식비 : 9,000원*8명*60일 = 4,320 · 특수건강검진비 : 80,000원*8명 = 640 	217,420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용 소모품 등 구입 : 15,000원*400개 = 6,000 · 해충기피제함 임대 및 관리비 : 900,000원*7월 = 6,300 · DMS 소모품 교체 및 정비 : 112,000원*12대*8월 = 10,752 · 해충퇴치기 유지보수비 : 25,000원*308대 = 7,700 · 방역장비 등 수리비 : 1,002,750원*4회 = 4,011 	34,763	
	206-01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용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구입 : 45,000원*2,594 ℓ = 116,730 	116,730	116,730

□ 예산요구 사유

-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발생 및 방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필요
- 김포시는 말라리아 고위험 지역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유충의 주 서식지(수로, 웅덩이 등)에 적극적인 유충구제 필요
-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흡혈활동은 일몰 이후 시작되므로 하절기 집중 야간방역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2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말라리아 퇴치사업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11. : 말라리아 퇴치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하절기 주·야간 집중 방역소독
- 2026. 04. ~ 11. : 해충 기피제함, 해충퇴치기, 일일모기감시장비(DMS) 가동
- 2026. 12. : 말라리아 퇴치사업 지원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6명 - 말라리아 예방사업 관련 간담회 등(4회), 방역반 교육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2,839회 - 민관군 합동방역소독 실시 : 6회
2024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8명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2,982회 - 민관군 합동방역소독 실시 : 11회
2025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8명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3,378회 - 민관군 합동방역소독 실시 : 10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2,000	246,582	-	5,418	
2024	308,400	303,775	-	4,625	
2025	429,960	393,232	-	36,72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김재민	전화	4119
-----	--------	-------------	-----	----------	----	------

말라리아 퇴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 지역		
사업목적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집중관리를 통한 말라리아 환자 감소 및 퇴치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4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0,000	380,000	380,000	0	0	0	372,500	-7,500	
국비	110,000	190,000	190,000	0	0	0	186,250	-3,750	50%
도비									
시비	110,000	190,000	190,000	0	0	0	186,250	-3,750	5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72,500	
말라리아 퇴치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인건비 : 11,730원*8시간*3명*166일 = 46,732 · 4대보험료 : 60,142,860원*14% = 8,420 · 유급휴일수당 : 11,730원*8시간*3명*43일 = 12,105 · 명절휴가수당 : 500,000원*3명 = 1,500 · 출장수당 : 10,000원*3명*64일 = 1,920	70,677	
	201-01 사무관리비	·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홍보용 기피제 : 5,500원*20,000개 = 110,000 · 말라리아 감염 추정지역 주민 교육용 홍보물 : 5,000원*3,000개 = 15,000 · 말라리아 리플릿(다국어 포함) : 300원*8,000장 = 2,400 · 말라리아 환자 복약수첩 : 2,000원*100개 = 200 · 말라리아 홍보 현수막 : 60,000원*20개소 = 1,200 · 매개모기 방제전략 교육 강사비 : 230,000원*3회 = 690 ·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참석수당 : 100,000원*4명*2회 = 800	130,290	
	201-03 행사운영비	·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현수막 : 50,000원*2회 = 100 · '세계말라리아의 날' 홍보물 : 3,000원*500명 = 1,500 · '고인물 제거의 날' 홍보물 : 5,000원*100명 = 500	2,100	
	202-01 국내여비	· 말라리아 퇴치사업 출장여비 : 2,300,000원 = 2,300	2,300	2,300
	206-01 재료비	· 방역소독용 약품(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구입 : 45,000원*2,260ℓ = 101,700	101,700	101,7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간담회 운영 : 9,000원*25명*2회 = 450 · 말라리아 합동방역의 날 운영 : 9,000원*25명*8회 = 1,800	2,250	
	307-01 의료 및 회복비	· 말라리아 치료제 구입 : 11,000원*3통 = 33 ·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구입 : 130,000원*100박스 = 13,000 ·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 소모품 구입 : 1,150,000원 = 1,150	14,183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말라리아 조기진단을 위한 버스 외부 광고 : 500,000원*10대*7개월 = 35,000 · 말라리아 조기진단을 위한 지하철역 광고 : 400,000원*5개소*7개월 = 14,000	49,000	

□ **예산요구 사유**

-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환자 발생 억제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환자관리와 예방·홍보 활동 강화 필요
- 시민 대상 신속진단키트 보급 등으로 말라리아 진단소요일 단축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2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말라리아 집중관리지역 운영계획서 수립
 - 2026. 03. ~ 11. : 말라리아 집중관리사업 추진
 - 2026. 03. :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 04. : 상반기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개최, ‘세계말라리아의 날’ 캠페인 운영
 - 2026. 04. ~ 10. : 말라리아 조기진단을 위한 옥외광고(버스, 지하철)
 - 2026. 06. ~ 08. : ‘고인물 제거의 날’ 챌린지
 - 2026. 10. : 하반기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개최
 - 2026. 12. :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환자 : 81명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1명 · 모기기피제 배부 : 16,245개 · 퇴치사업 홍보물품 제작·배부 : 10종 9,618개 ·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운영 : 1회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환자 : 56명 · 말라리아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 1명 · 모기기피제 배부 : 19,180개 ·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물품 제작·배부 : 12종 39,641개 ·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운영 : 2회 · 말라리아 예방 옥외광고 : 버스 6대(6월 ~ 9월)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환자 : 45명 · 말라리아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 3명 · 모기기피제 배부 : 25,073개 ·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물품 제작·배부 : 7종 93,857개 ·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운영 : 2회 · 말라리아 예방 옥외광고: 버스 11대, 지하철 5개소(4월 ~ 10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4,000	140,687	-	3,313	
2024	220,000	219,173	-	827	
2025	380,000	370,483	-	9,51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이해진	전화	4118
-----	--------	-------------	-----	----------	----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결핵예방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1,2항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시장)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8,483	106,346	106,346	0	0	0	110,536	4,190	
국비	49,241	53,173	53,173				55,269	2,096	50%
도비	14,772	15,952	15,952				16,580	628	15%
시비	34,470	37,221	37,221				38,687	1,466	3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0,536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본급 : 11,730원*8시간*1명*165일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44일 · 위험수당 : 50,000원*1명*8월 · 명절수당 : 500,000원*1명*1회 · 4대보험료 : 20,512,560원*14%	= 15,484 = 4,129 = 400 = 500 = 2,873	23,386
	201-01 사무관리비	· 결핵예방 홍보물품 구입 : 5,000원*2,000개 · 사무용품 구입 : 10,000원*74개 · 공기살균기, 체담부스 소모품 교체 : 300,000원*3대 · 역학조사 운영비 : 71,500원*50회	= 10,000 = 740 = 900 = 3,575	15,215
	202-01 국내여비	· 결핵 역학조사 여비 : 20,000원*5회*12월	= 1,200	1,200
	307-01 의료및회복비	·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 1,000,000원*1명 ·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 25,500원*700명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21,500원*180명 ·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검진비 : 36,820원*1,304명	= 1,000 = 17,850 = 3,870 = 48,015	70,735

□ 예산요구 사유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지원
- 결핵환자 및 고위험군(비순응,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한 입원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인원 증가로 예산 증액
(잠복결핵양성자 관리 2024년 151건 → 2025년 180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2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2. : 결핵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결핵관리사업 운영
 - 2026.12. ~ 2027.01. : 사업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결핵등록관리 : 141명 / 잠복결핵양성자관리 : 115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39건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0건 · 검진 : 결핵검진(흉부X선) 1,621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518건
2024	· 결핵등록관리 : 177명 / 잠복결핵양성자관리 : 151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50건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0건 · 검진 : 결핵검진(흉부X선) 2,306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1,004건
2025	· 결핵등록관리 : 117명 / 잠복결핵양성자관리 : 180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36건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2건 · 검진 : 결핵검진(흉부X선) 1,207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56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3,857	137,400	-	36,457	
2024	98,483	80,738	-	17,745	
2025	106,346	84,698	-	21,64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이연서 보건8급 장은정	전화	4055 4061
-----	--------	-------------	-----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108
사업규모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2개소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사업목적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치료·관리 질을 높임으로써 결핵 치료 성공률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결핵예방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5,366	77,624	77,624	0	0	0	80,340	2,716	
국비	75,366	77,624	77,624				80,340	2,716	100%
도비									
시비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340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의료기관 결핵환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40,170,000원*2개소 =	80,340	

□ 예산요구 사유

- 민간의료기관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환자 치료·관리 질을 높여 결핵 치료 성공률 향상, 다제내성 환자 및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 예산증감 사유

-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단가 '25년 대비 1,358천원 인상 ('25년 지원단가(1개소) 38,812천원 → '26년 지원단가(1개소) 40,17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2. : 결핵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결핵관리사업 운영
- 2026.12. : 사업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우리병원 : 환자관리율 100%, 환자 치료성공률 100%, 접촉자 검진율 100% - 뉴고려병원 : 환자관리율 100%, 환자 치료성공률 100%, 접촉자 검진율 100%
2024	- 김포우리병원 : 환자관리율 100%, 환자 치료성공률 100%, 접촉자 검진율 100% - 뉴고려병원 : 환자관리율 100%, 환자 치료성공률 100%, 접촉자 검진율 100%
2025	- 김포우리병원 : 환자관리율 100%, 환자 치료성공률 100%, 접촉자 검진율 100% - 뉴고려병원 : 환자관리율 100%, 환자 치료성공률 100%, 접촉자 검진율 10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3,530	73,530	-	0	
2024	75,366	75,366	-	0	
2025	77,624	77,624	-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이연서	전화	4055
-----	--------	-------------	-----	----------	----	------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결핵 발병 예방과 조기 발견 등 결핵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결핵예방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774	3,848	1,840	2,008	0	0	1,716	-2,132	
국비	2,887	1,924	920	1,004			858	-1,066	50%
도비	866	577	276	301			257	-320	15%
시비	2,021	1,347	644	703			601	-746	3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16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	307-01 의료및회복비	· 결핵 진단검사 지원 및 재료비 구입 : 16,340원*105건	= 1,716	

□ 예산요구 사유

- 결핵의심자 결핵진단검사 (항산균도말검사, 흉부X선검사) 지원 및 실험실 진단검사 재료비 구입 (진단검사, 숙련도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진단키트 등)

□ 예산증감 사유

- 결핵진단검사 지원 사업량 감소 (125건 → 111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01. ~ 12. : 결핵진단검사 실시 등 사업 운영
- 2026.02. : 결핵진단검사 시약 등 재료 구입
- 2026.12. :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결핵진단검사: 125건
2025	· 결핵진단검사: 111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5,774	4,626	-	1,148	
2025	3,848	2,512	-	1,33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이연서	전화	4055
-----	--------	-------------	-----	----------	----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5명		
사업목적	한센인피해사건(단종,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지원으로 피해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120	11,400	11,400	0	0	0	12,000	600	
국비	9,120	11,400	11,400				12,000	600	100%
도비									
시비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 200,000원*5명*12월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위원회 결정)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에서 1인당 연간 2,400천원(200천원/월) 위로지원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피해자 1인당 위로지원금 지급액 매월 19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한센인피해사건 지급대상자 위로지원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지원금 지급 : 총 5명(12회)
2024	·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지원금 지급 : 총 4명(12회)
2025	·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지원금 지급 : 총 5명(10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200	10,200	-	0	
2024	9,120	9,120	-	0	
2025	11,400	9,500	-	1,9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8급 장은정	전화	4061
-----	--------	-------------	-----	----------	----	------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명		
사업목적	한센인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 위임규정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	1,000	1,000	0	0	0	1,000	0	
국비									
도비	200	300	300				300	0	30%
시비	800	700	700				700	0	7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한센인 의료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500,000원*2명	= 1,000	

□ 예산요구 사유

- 한센인의 고령화로 의료수요 증가, 근로능력부족 및 경제사정 어려움으로 의료비 지원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6. : 상반기 한센인 의료비 지원금 지급
- 2026. 12. : 하반기 한센인 의료비 지원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3명(18건)
2024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2명(18건)
2025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1명(1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	1,040	-	460	
2024	1,000	1,000	-	0	
2025	1,000	500	-	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8급 장은정	전화	4061
-----	--------	-------------	-----	----------	----	------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525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4,292건		
사업목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성매개감염병 검사를 통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제1,4호
	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9,524	167,464	168,194	-730	0	0	167,424	-40	
국비	79,762	83,732	84,097	-365			83,712	-20	50%
도비									
시비	79,762	83,732	84,097	-365			83,712	-20	5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7,424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307-01 의료 및 회복비	· HIV/에이즈 진료비·치료비 지원 등 : 1,018,375원*160명 · HIV 검진비(검진시약) 지원 : 3,760원*1,000건 · 성매개감염병 검진시약·치료비 지원 : 7,240원*100건	= 162,940 = 3,760 = 724	

□ 예산요구 사유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및 미등록외국인 진료비 지원
- HIV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통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HIV 신고접수 및 환자관리
- 2026. 01. ~ 12. : HIV 감염인 역학조사 및 진료비 지급
- 2026. 01. ~ 12. : HIV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HIV 감염인 관리 : 150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568건(111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1,923건, 에이즈 1,813건
2024	· HIV 감염인 관리 : 162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572건(125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2,478건, 에이즈 2,319건
2025	· HIV 감염인 관리 : 163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525건(128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2,177건, 에이즈 2,11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2,992	103,629	-	19,363	
2024	159,524	142,857	-	16,667	
2025	167,464	116,328	-	51,13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8급 장은정	전화	4061
-----	--------	-------------	-----	----------	----	------

예방접종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및 홍보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1조의2 제1항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 제3조
해당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1회) 2. 인플루엔자(매년 1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2,650	177,270	177,270	0	0	0	172,818	-4,45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2,650	177,270	177,270				172,818	-4,452	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2,818	
예방접종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 250원*10,000부 · 예방접종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제작 : 60,000원*28개	= 2,500 = 1,680	4,180
	201-02 공공운영비	· 약품냉장고 유지보수비 : 1,500,000원*2대 · 약품냉장고 통신요금 : 6,500원*12개월*1회선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류 우편발송 : 30,000원*12개월	= 3,000 = 78 = 360	3,438
	307-01 의료 및 회복비	· 인플루엔자 백신(취약계층) 구입 : 12,000원*1,500명 ·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 20,000원*1,500명 · 대상포진 생백신(취약계층) 구입 : 90,000원*1,000명 · 대상포진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 20,000원*1,000명 · B형간염 백신(성인용) 구입 : 7,200원*1,000개	= 18,000 = 30,000 = 90,000 = 20,000 = 7,200	165,200

□ 예산요구 사유

- 국가예방접종 홍보 안내문(코로나19, 인플루엔자,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및 현수막 제작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서류 경기도에 우편 발송(월 1회)
- 예방접종 약품냉장고 유지보수비 및 온도유지장치 통신요금
- 예방접종 백신(성인 B형간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대상포진) 구입 및 민간의료기관 위탁 시행비

□ 예산증감 사유

- 위탁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 예방접종 일정표, 백신별 안내문은 온라인 게재로 대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 2026.01. ~ 12. :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성인 고위험군(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실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관리
 - 2026.10. ~ 12. : 14~64세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2026.12. : 예방접종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물(유아용 안전손톱깎이) : 1,200개 제작 배부 · 예방접종 홍보 안내문 및 예진표 제작 : 6,000매 · B형간염(성인 고위험군) 백신 구입 : 1,000도즈 · 지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1,181명
2024	· B형간염(성인 고위험군) 백신 구입 : 550도즈 · 지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1,430명
2025	· B형간염(성인 고위험군) 백신 구입 : 700도즈 · 대상포진(65세 이상 취약계층) 백신 구입 : 1,057도즈 · 지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1,50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224	45,752	-	472	
2024	62,650	56,877	-	5,773	
2025	177,270	131,631	-	45,6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김희환 간호8급 김소영	전화	4156 4158
-----	--------	-------------	-----	----------------------	----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개인별 예방접종 기록 및 등록 관리로 영유아 예방접종률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426	28,248	28,248	0	0	0	29,232	984	
국비	13,713	14,124	14,124				14,616	492	50%
도비	4,114	4,237	4,237				4,385	148	15%
시비	9,599	9,887	9,887				10,231	344	3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232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11,730원*8시간*1명*220일	= 20,644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48일	= 4,504	
		· 명절휴가비 : 500,000원*1명*1회	= 500	
		· 4대보험료 : 25,600,000원*14%	= 3,584	

□ 예산요구 사유

- 최근 영유아 안전 확인의 사회적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미접종자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 임시 신생아번호 대상자(출생~3개월)를 집중관리 할 인력 필요
 -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 매일 최소 1회 접종 안내 및 출생신고 여부 확인하며 미신고시 지연사유 확인과 관리번호 발급 안내, 행정지원 필요 여부 확인 및 관련 부서 연계
- 18개월 영유아 완전접종률,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등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접종 홍보 및 미접종자 관리를 위한 인력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지원단가 '25년 대비 984,000원 증액
('25년 지원단가(1인) 28,248,000원 → '26년 지원단가(1인) 29,232,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2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미전환 신생아번호 대상자(출생 미신고자) 번호 전환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기록 관리,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관리, 예방접종 홍보 실시
- 2026. 02. ~ 06.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 2026. 03.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
- 2026. 12. :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적 : 92.2% (취학아동 5,907명 중 4종백신 완료자 5,447명) · 중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적 : 72% (취학아동 5,541명 중 2종(3종)백신 완료자 3,989명) · 영유아 완전접종률(생후 18개월) : 84.94% (대상자 수 2,610명 중 완전접종자 2,217명) · 관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 199개소
2024	·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적 : 96% (취학아동 4,891명 중 4종백신 완료자 4,693명) · 중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적 : 80.8% (취학아동 5,802명 중 2종(3종)백신 완료자 4,688명) · 영유아 완전접종률(생후 18개월) : 92.58% (대상자 수 2,695명 중 완전접종자 2,495명) · 관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 205개소
2025	·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적 : 91.8% (취학아동 4,359명 중 4종백신 완료자 4,003명) · 중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적 : 77.9% (취학아동 6,124명 중 2종(3종)백신 완료자 4,771명) · 영유아 완전접종률(생후 18개월) : 91.78% (대상자 수 2,043명 중 완전접종자 1,875명) · 관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 208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240	24,341	-	2,899	
2024	27,426	22,999	-	4,427	
2025	28,248	21,098	-	7,1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김희환	전화	4156
-----	--------	-------------	-----	----------	----	------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2항, 제28조 제1항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542,236	8,466,612	8,460,974	5,638	0	0	8,715,110	248,498	
국비	4,271,118	4,233,306	4,230,487	2,819			4,357,555	124,249	50%
도비	1,281,333	1,269,775	1,269,146	629			1,307,268	37,493	15%
시비	2,989,785	2,963,531	2,961,341	2,190			3,050,287	86,756	3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715,110	
국가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 및 회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예방접종 : 52,693원*100,244건 = 5,282,196 · 60개월~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8,933원*27,739건 = 802,580 · 13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8,800원*3,290건 = 94,746 ·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8,800원*753건 = 21,752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8,730원*1,555건 = 44,676 ·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 89,000원*217건 = 19,340 ·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 88,775원*1,287건 = 114,254 · 성인 예방접종 : 29,030원*76,289건 = 2,214,666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 191,365원*85건 = 16,266 · 위탁의료기관 지급 비용(미지급금) : 104,634,000원 = 104,634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12세 이하)·성인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 어린이(19종) : ①BCG②B형간염③DTaP④Td⑤Tdap⑥폴리오⑦DTaP-IPV⑧DTaP-IPV/Hib⑨수두 ⑩소아페렴구균⑪MMR⑫뇌수막염⑬일본뇌염(사백신)⑭일본뇌염(생백신)⑮A형간염 ⑯인유두종바이러스⑰소아인플루엔자⑱로타바이러스⑲DTaP-IPV/Hib/HepB
 - 성인(4종) : ①인플루엔자 ②페렴구균 ③장티푸스(고위험군) ④신증후군출혈열(고위험군)

□ 예산증감 사유

- 12세 남아 HPV 예방접종 신규 지원
-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지원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미지급금 편성('25년 미지급금)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국가예방접종사업지침 시달 및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 2026. 01. ~ 12. : 매월 2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심사 및 비용 지급
 - 2026. 03. ~ 06.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및 방문점검(2년에 1회 이상 수시) 실시
 - 2026. 09. ~ 12. : '26-'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백신 배정 예방접종 홍보, 접종비용 상환 심사 및 비용 지급
 - 2026. 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90,142건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4,704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검사비 지원 실적 : 150건 · 인플루엔자(어린이,임신부,어르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111,055건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5,226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82,349건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3,518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검사비 지원 실적 : 82건 · 인플루엔자(어린이,임신부,어르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60,487건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5,076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70,018건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3,647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검사비 지원 실적 : 64건 · 인플루엔자(어린이,임신부,어르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43,616건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4,29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355,990	8,355,966	-	24	
2024	8,542,236	8,542,207	-	29	
2025	8,466,612	5,825,912	-	2,640,7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김희환 간호8급 김소영	전화	4156 4158
-----	--------	-------------	-----	----------------------	----	--------------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5,336명(65세 이상+면역저하자의 목표접종률 42% 적용)		
사업목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집단면역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2항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28,270	3,180,636	3,320,800	0	0	-140,164	2,861,270	-319,366	
국비	464,135	1,590,906	1,660,400			-69,494	1,430,635	-160,271	50%
도비	139,240	476,750	498,120			-21,370	429,191	-47,559	15%
시비	324,895	1,112,980	1,162,280			-49,300	1,001,444	-111,536	3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61,270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307-01 의료 및 회복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 19,610원*35,33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 : 61,363원*35,336명	= 692,932 = 2,168,338	

* '26년 고위험군(65세 이상 장애인구 추계+면역저하자)의 목표접종률 42% 적용

□ 예산요구 사유

-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64세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감염·입원·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21315(2025.10.13.)호와 관련, 질병관리청 변경내시 산출 예상 백신 단가 감소 (25년도 백신 단가 73,340원 -> 26년도 백신 단가 61,363원으로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
- 2026. 03. ~ 06. : 위탁의료기관 연 2회 자율점검 및 2년마다 1회 방문점검 실시
- 2026. 08. : '26-'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교육
- 2026. 09. ~ 12. : '26-'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실시 및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43개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45,420건
2024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36개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34,657건
2025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36개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27,18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60,890	974,103	-	1,686,787	
2024	928,270	772,084	-	156,186	
2025	3,180,636	2,115,812	-	1,064,82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김소영	전화	4158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보건사업과
요구액	2,366,173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870	3,654	1,000	2,654	1,000	-2,654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위탁, 예탁)	870	3,654	1,000	2,654	1,000	-2,654	· 4회 추경 시 1,000감액 예정 · 위탁, 예탁 세입 추정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편성
임시적세외수입	240	124	100	24	1,100	976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불용품매각대금	60	0	0	0	1,000	1,000	· 차량 및 정수 매각 비용 추정
기타수입/그외수입 ◎행동강령위반환수금 등	180	124	100	24	100	-24	· 4회 추경 시 100감액 예정 · 공공장소 유류카드 포인트 환급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00	2,500	2,500	0	4,000	1,500	
과태료/기타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 태료	4,500	2,500	2,500	0	4,000	1,500	· 4회 추경 시 3,500 증액 예정 · 과태료 추정이 어려워 보수적 편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791명(등록정신질환자 관리인원)		
사업목적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55,573	346,216	346,216	0	0	0	346,216	0	
국비	45,513	44,316	44,316				44,316	0	
도비	46,580	45,354	45,354				45,354	0	
시비	263,480	256,546	256,546				256,546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6,216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58,000원*30명*12개월 = 20,880 · 퇴원예정자프로그램 운영 : 5,000원*40명*10개월 = 2,000 · 퇴원자KIT 제작 : 10,000원*100명*2회 = 2,000 · 캠프 운영 : 80,000원*20명*1회 = 1,600 · 체육대회 운영 : 50,000원*20명*1회 = 1,000 · 사례관리물품 구입 : 5,000원*200명*5회 = 5,000 · 미술전시회 '평안' 운영 : 22,000,000원*1회 = 22,000 · 홍보물 제작 : 15,920,000*1회 = 15,920		
		가족지원사업비 · 가족지원사업 운영 : 40,000원*10명*10개월 = 4,000 · 가족지원비(후송비, 치료비 등) : 200,000원*3명*10개월 = 6,000 · 홍보물 제작 : 4,100,000원*1회 = 4,1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6,216	
		직업재활사업비 · 업무도우미 지원 : 100,000원*4명*12개월 = 4,800 · 취업자격 훈련비 : 10,000원*2명*25회 = 500 · 취업프로그램 운영 : 17,000원*10명*12개월 = 2,040 · 자조모임 운영 : 20,000원*10명*12개월 = 2,400 · 직업재활 네트워크 유지 : 150,000원*5개기관*2회 = 1,500 · 청사관리 : 200,000원*10개월 = 2,000 · 사업보고회 : 17,000,000원*1회 = 17,000		
		정신건강증진사업비 ·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비 : 130,000원*8주*10회 = 10,400 · 정신건강강좌비 : 3,000,000원*2회 = 6,000 · 홍보물품제작비 : 4,000원*6종*500개 = 12,000 · 마음체크사업 : 7,000원*10개월*200명 = 14,000 · 정신건강예술제 '평안' 홍보 : 5,000원*2회*500명 = 5,000 · 정신건강예술제 '평안' 운영 : 4,000원*1회*500명 = 2,000 · 리플릿 및 책자 제작비 : 4,000원*2회*500부 = 4,000 · 홍보 매거진 제작 : 15,000원*2회*500부 = 15,000 · 캠페인 운영비 : 300,000원*8회 = 2,400 · 심리지원홍보 : 500,000원*10회 = 5,000 · 정신건강예술제 '평안' 굿즈 제작 : 7,000원*4종*500부 = 14,000 · 조기검진 선별검사운영비 : 3,000원*10개월*100명 = 3,000 · 정신건강교육 운영비 : 30,000원*10회*10개월 = 3,000 · 유관기관 네트워크유지비 : 300,000원*12개월 = 3,600 · 이동상담소 운영 : 5,000원*8개월*100명 = 4,000 · 정신건강 디지털사업 : 5,000,000*2회 = 10,000		
	307-05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정신사업비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중독예방 교육 운영비 : 2,000원*2개교*800명 = 3,200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인식개선 캠페인 운영비 : 450,000원*4회 = 1,800		
		직원능력개발비 · 직원교육 참가비 : 150,000원*39명 = 5,850 · 직원교육 훈련비 : 140,000원*39명 = 5,460 · 직원 워크숍비 : 5,000,000원*2회 = 10,000		
		업무추진비 · 운영회의비 : 300,000원*4회 = 1,200 · 업무관련 회의비 : 100,000원*4회 = 400 · 유관기관 방문비 : 50,000원*10회 = 500		
		일반운영비 · 홈페이지유지보수 : 200,000원*12개월 = 2,400 · 차량비 : 522,000원*12개월 = 6,264 · 공공요금 : 400,000원*12개월 = 4,800 · 수용비 및 수수료 : 2,000,000*12개월 = 24,000 · 제세공과금 : 100,000원*12개월 = 1,200 · 시설장비 유지 : 300,000원*12개월 = 3,600 · 기타운영비 : 50,166원*12개월 = 602 · 출장여비 : 100,000원*39명*12개월 = 46,8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4976(2025. 9. 24.)호, 사전 통보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등 진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재활서비스 실적(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55명(실인원) / 5,905명(연인원)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 및 가족교육 : 15,073명(연인원)
2024	- 재활서비스 실적(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37명(실인원) / 5,663명(연인원)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 및 가족교육 : 13,060명(연인원)
2025	- 재활서비스 실적(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35명(실인원) / 3,118명(연인원)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 및 가족교육 : 8,674명(연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5,573	355,573	-	-	
2024	355,573	355,573	-	-	
2025	346,216	346,216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124
-----	-------	------------	-----	----------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정신건강전문인력 29명		
사업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당조례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41,168	1,175,403	1,175,403	0	0	0	1,198,909	23,506	
국비	472,296	470,161	470,161				479,564	9,403	
도비	59,792	70,524	70,524				71,934	1,410	
시비	609,080	634,718	634,718				647,411	12,69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98,909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		
		· 기본급 : 2,897,290원*29명*12개월	=	1,008,256
		· 수당 : 50,000원*29명*12개월	=	17,400
		· 4대보험료 : 6,607,750원(29명)*12개월	=	79,293
		· 퇴직적립금 : 270,000원*29명*12개월	=	93,96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4773(2025. 9. 18.)호, 사전 통보
 - 정신건강 상담 및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견·치료연계 및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23,506천원 증액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3294(2025. 9. 12.)호 관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정신건강 전문인력 28명
2024	- 정신건강 전문인력 29명
2025	- 정신건강 전문인력 2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00,400	1,100,400	-	-	
2024	1,141,168	1,141,168	-	-	
2025	1,175,403	1,175,403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124
-----	-------	------------	-----	----------	----	------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자살시도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직·간접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5,246	56,903	56,903	0	0	0	56,903	0	
국비		0						0	
도비	16,574	17,071	17,071				17,071	0	
시비	38,672	39,832	39,832				39,832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6,903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사업비		
		· 자살고위험군 프로그램 운영 : 175,000원*8회	=	1,400
		·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 150,000원*42명	=	6,300
		· 자살예방 교육 : 62,500원*80회	=	5,000
		· 생명사랑실천마을사업 : 50,000원*13개(마을)*2회	=	1,300
		· 자살수단관리 사업 : 50,000원*40회	=	2,000
		· 생명존중안심마을 : 300,000원*7지역	=	2,100
		· 정신위기응급대응 관리비 : 75,000원*20개(기관)*2회	=	3,000
		· 생명지킴이 봉사단 관리비 : 100,000원*10회	=	1,000
		· 장소통제관리 사업 : 25,000원*20개	=	500
		· 자살다빈도지역 홍보 : 715,150원*20개소	=	14,303
		· 자살예방 캠페인 운영 : 2,000,000원*5회	=	10,0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300,000원*12개월	=	3,600
		· 여비 : 100,000원*4명*12개월	=	4,800
		· 차량 주유비 : 160,000원*10개월	=	1,6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7000(2025. 10. 28.)호, 사전 통보
-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 : 응급대응, 조기발견, 사례관리,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연계 체계 구축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연계 구축
 - 경찰·소방·병원 등 정신위기응급대응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위험군 발견 및 연계 활성화
- 자살수단관리 및 장소통제사업,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등 환경조성사업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事成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2026. 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등록 자살고위험군 207명, 사례관리 4,281건,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35명(실인원) - 자살예방교육 : 46회 / 4,076명
2024	- 등록 자살고위험군 209명, 사례관리 3,280건,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34명(실인원) - 자살예방교육 : 41회 / 2,199명
2025	- 등록 자살고위험군 223명, 사례관리 3,292건,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24명(실인원) - 자살예방교육 : 38회 / 5,67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200	55,200	-	-	
2024	55,246	55,246	-	-	
2025	56,903	56,903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자살시도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직·간접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5,760	191,333	191,333	0	0	0	198,030	6,697	
국비		0						0	
도비	55,728	57,400	57,400				59,409	2,009	
시비	130,032	133,933	133,933				138,621	4,68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8,030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		
		· 기본급 : 3,185,000원*4명*12개월	=	152,880
		· 수당 : 250,000원*4명*12개월	=	12,000
		· 4대보험료 : 365,625원*4명*12개월	=	17,550
		· 퇴직적립금 : 325,000원*4명*12개월	=	15,6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7000(2025. 10. 28.)호, 사전 통보
-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방문, 전화상담 등 상담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인력지원 예산 대비 약 3.5% 인건비 상승분 반영(전년도 대비 6,697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2026. 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자살예방 센터인력 4명
2024	- 자살예방 센터인력 4명
2025	- 자살예방 센터인력 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0,368	180,368	-	-	
2024	185,760	185,760	-	-	
2025	191,333	191,333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720	40,720	40,720	0	0	0	40,720	0	
국비	20,360	20,360	20,360				20,360	0	
도비		0						0	
시비	20,360	20,360	20,360				20,36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72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 · 기본급 : 2,170,000*1명*12개월 = 26,040 · 수당 : 250,000원*1명*12개월 = 3,000 · 4대보험료 : 240,000원*1명*12개월 = 2,880 · 퇴직적립금 : 200,000원*1명*12개월 = 2,400 · 여비 : 200,000원*1명*12개월 = 2,400		
		사업비 · 노인자살고위험군 프로그램 운영 : 125,000원*32회 = 4,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7104(2025. 10. 29.)호, 사전 통보
- 노인자살예방사업 수행 : 60세 이상 자살고위험군 대상으로 교육,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진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2026. 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1,600건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50명 - 전화위복 : 700건
2024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926건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50명 - 전화위복 : 498건
2025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1,122건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47명 - 전화위복 : 34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720	40,720	-	-	
2024	40,720	40,720	-	-	
2025	40,720	40,72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자살시도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직·간접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4,072	76,298	76,298				118,474	42,176	
국비	37,036	38,149	38,149				59,237	21,088	
도비		0						0	
시비	37,036	38,149	38,149				59,237	21,08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8,474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기존인력 2명)			
		· 기본급 : 2,300,000원*2명*12개월	=	55,200	
		· 수당 : 300,000원*2명*12개월	=	7,200	
		· 4대보험료 : 290,920원*2명*12개월	=	6,982	
		· 퇴직적립금 : 200,000원*2명*12개월	=	4,800	
		· 여비 : 200,000원*2명*12개월	=	4,800	
		인건비(증원인력 2명)			
		· 기본급 : 2,300,000원*2명*6개월	=	27,600	
		· 수당 : 300,000원*2명*6개월	=	3,600	
		· 4대보험료 : 291,000원*2명*6개월	=	3,492	
		· 퇴직적립금 : 200,000원*2명*6개월	=	2,400	
		· 여비 : 200,000원*2명*6개월	=	2,4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7104(2025. 10. 29.)호, 사전 통보
-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 4명 인건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및 호봉 인상 등 기존인력 인건비 상승분 증액
-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 발표에 따른 자살예방 인력 증원(증원인력 2명*6개월분)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事成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2026. 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 2명
2024	- 김포시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 2명
2025	- 김포시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 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192	72,192	-	-	
2024	74,072	74,072	-	-	
2025	76,298	76,298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신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자살유족		
사업목적	자살 유족 전담 직원을 통해 유족 상담 서비스, 법률지원, 학자금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을 적기에 받도록 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p>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9,550	29,550	
국비		0					14,775	14,775	
도비		0					2,216	2,216	
시비		0					12,559	12,55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550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 · 기본급 : 3,625,000원*1명*6개월 = 21,750 · 수당 : 50,000원*1명*6개월 = 300 · 4대보험료 : 100,000원(1명)*6개월 = 600 · 퇴직적립금 : 150,000원*1명*6개월 = 900		
		운영비 ·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 250,000원*5월 = 1,250 · 자살유족 힐링캠프 운영 : 1,350,000원*1회 = 1,350 · 자살유족 위로패키지 구입 : 30,000원*30명 = 900 · 자살유족 연계기관 홍보물 구입 : 5,000원*500부 = 2,500		

□ 예산요구 사유

- 자살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고, 자살생각율은 일반인 대비 약 10배로 자살로 인한 연쇄 사고 방지를 위해 적시에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갑작스러운 사별에 따른 법률·상속·행정적 문제나 임시거처 지원 등의 요구가 큰 자살유족에게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 유족 상담서비스, 법률지원, 학자금지원, 임시주거 지원 등을 적기에 받도록 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5464(2025. 10. 1.)호, 사전 통보
- 국정과제 85-4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증진-지역사회정신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신규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4. ~ 5. : 경찰, 소방, 광역·기초센터 협력체계 구축 및 간담회 실시
 - 2026. 7. ~ 12.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평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시군 자살유족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유형의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0,667	0	0	10,667	0	0		
국비		0			0	0	0		
도비		3,200			3,200	3,200	0		
시비		7,467			7,467	7,467	0		
기타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667	
시군 자살유족 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사업비		
		·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 366,700원*10회	=	3,667
		· 자살유족 캠프 운영 : 3,000,000원*2회	=	6,000
		· 자살유족 지원물품 : 25,000원*40개	=	1,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7000(2025. 10. 28.)호, 사전 통보
- 자살유족의 자살생각율은 일반인 대비 약 10배로 연쇄 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 필요
- 자살유족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유족의 정서적 안정 및 일상회복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2026. 1. ~ 12. : 자살유족 지원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11회 / 84명 - 자살유족 개별상담 15회 - 등록관리 49명, 사례관리 41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667	10,667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700명(정신건강 고위험군)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
	해당조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4,397	430,795	521,397	-90,602	0	0	379,254	-51,541	
국비	178,078	301,556	364,978	-63,422			265,478	-36,078	
도비		19,386	23,463	-4,077			17,066	-2,320	
시비	76,319	109,853	132,956	-23,103			96,710	-13,143	
기타		0						0	

* 종말추경 예정: 道정신건강과-16151(2025. 10. 17.)호 관련, 3차 변경내시 감액액(144,455천원) 확정 내시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79,254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544,000원*약700명	= 379,254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4125(2025. 9. 5.)호, 사전 통보
 - 2026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변경(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정신건강고위험군(우울, 불안 등)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바우처 금액 : 1인 정부지원금 평균 544천원 지원(68천원*8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6151(2025. 10. 17.)호 관련, 3차 변경내시 감액액(144,455천원) 종말추경 예정, 2025년 최종예산액 대비 2026년 92,914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계획 수립
 - 2026. 1. ~ 12.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추진, 사업홍보 및 제공기관 모집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459명(실인원) - 제공기관 등록 : 8개소
2025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 568명(실인원) - 제공기관 등록 : 15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54,397	254,397	-	-	
2025	430,795	284,773	-	146,022	10.31.기준 집행현황

※ 경기도 정신건강과-16151(2025. 10. 17.)호 관련, '25년 3차 감액 변경내시 통보(감액액 144,455천원)로 종말추경 감액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124
-----	-------	------------	-----	----------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알코올 등 중독자 대상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등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제82조제1항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4,984	251,660	251,660	0	0	0	259,676	8,016	
국비	122,492	125,830	125,830				129,838	4,008	
도비		0						0	
시비	122,492	125,830	125,830				129,838	4,00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9,676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 · 기본급 : 2,667,170*6명*12개월 = 192,036 · 수당 : 200,000*6명*12개월 = 14,400 · 4대보험료 : 110,000원*6명*12개월 = 7,920 · 퇴직연금 : 110,000원*6명*12개월 = 7,920 · 출장여비 : 200,000원*6명*12개월 = 14,400		
		사업비 · 중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 10,000원*50명*12개월 = 6,000 · 중독재활프로그램 강사비 : 160,000원*2명*12회 = 3,840 · 중독재활 단주행사 : 500,000원*2회 = 1,000 · 사례관리 활용 물품 구입 : 3,000원*100명*10회 = 3,000 · 가족지원사업 운영 : 10,000원*5명*12개월 = 600 · 퇴원예정자프로그램 운영 : 5,000원*30명*10개월 = 1,500 · 리플릿·홍보물 제작 : 1,000원*2,000부 = 2,000 · 중독정신건강 캠페인 운영 : 100,000원*4회 = 400 · 정신건강편의점사업 리워드 : 200,000원*2곳*10회 = 4,000 · 유관기관 네트워크 유지비 : 132,000원*5회 = 66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4741(2025. 9. 18.)호, 사전 통보
 - 알코올 등 중독문제를 가진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상담, 치료하고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 감소
 - 중독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단기개입 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홍보, 교육, 인식개선
 - 알코올 중독 재활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시행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8,016천원 증액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3300(2025. 9. 15.)호 관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중독관리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중독 사례관리, 정신건강 홍보, 교육, 인식개선 등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중독질환 등록관리 50명(실인원), 사례관리 1,801건(연인원) - 중독폐해예방교육 11회/480명(연인원), 캠페인 10회/1,287명(연인원)
2024	- 중독질환 등록관리 93명(실인원), 사례관리 2,265건(연인원) - 중독폐해예방교육 27회/1,713명(연인원), 캠페인 10회/1,211명(연인원)
2025	- 중독질환 등록관리 116명(실인원), 사례관리 1,939건(연인원) - 중독폐해예방교육 50회/1,909명(연인원), 캠페인 8회/619명(연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9,570	239,570	-	-	
2024	244,984	244,984	-	-	
2025	251,660	251,66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124
-----	-------	------------	-----	----------	----	------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97명(센터 등록 회원 중 만 19세~34세 청년 237명, 만 60세 이상 노인 160명)		
사업목적	청년 및 노인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4조제9항, 제82조제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2,940	95,675	95,675	0	0	0	96,003	328	
국비	46,470	47,837	47,837				48,002	165	
도비	6,970	7,176	7,176				7,200	24	
시비	39,500	40,662	40,662				40,801	13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6,003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치료비 지원(마인드 케어) · 청년·노인 외래치료비지원 : 360,000원*약156명 = 56,003		
		사업비(마인드 링크) · 마인드링크 프로그램 운영비 : 5,000원*91명*12회 = 5,460		
		· 마인드링크 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 8,800원*320부 = 2,816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 5,000원*48회*10명 = 2,400		
		· 스트레스 관리 안내서 제작 및 물품 구입 : 300,000원*4그룹 = 1,200		
		·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 5,000원*24회*10명 = 1,200		
		· 신체건강 관리 워크북 제작 및 물품 구입 5,000원*2종*130명 = 1,300		
		· 직원역량강화 : 300,000원*4분기 = 1,200		
		·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 2,000원*2종*506개 = 2,024		
		· 유관기관 네트워크 : 100,000원*10회 = 1,000		
		· 인식개선 캠페인 : 500,000원*2회 = 1,000		
		· 청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강좌 : 3,000,000원*1회 = 3,000		
		· 북부권역 중점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 2,000원*5종*500개 = 5,000		
		· 청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서포터즈 운영 : 10,000원*30명*10회 = 3,000		
		· 정신건강 키오스크 운영 : 250,000원*2대*12개월 = 6,000		
		· 센터 유튜브 운영 : 200,000원*12회 = 2,400		
· 청년 정서지원 키트 제작 : 10,000원*50명*2회 = 1,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6048(2025. 10. 16.)호, 사전 통보
 -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문제 조기선별 및 등록, 신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 15세~34세 청년 1인당 연 36만원 한도
 - 노인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 36만원 한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28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事成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청년·노인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년 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 139명(실인원) / 299명(연인원)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 61명(실인원) / 89명(연인원)
2024	- 청년 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 167(실인원) / 287명(연인원) - 어르신 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 60명(실인원) / 128명(연인원)
2025	- 청년 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 130명(실인원) / 225명(연인원) - 어르신 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 65명(실인원) / 213명(연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688	90,688	-	-	
2024	92,940	92,940	-	-	
2025	95,675	95,675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124
-----	-------	------------	-----	----------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08명 (아동·청소년 등록관리 인원)		
사업목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4조제9항, 제82조제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 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000	36,698	36,698	0	0	0	36,852	154	
국비	8,500	18,349	18,349				18,426	77	
도비		0						0	
시비	8,500	18,349	18,349				18,426	7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85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내부 프로그램 강사비 : 150,000원*2회 = 300 · 외부 프로그램 활동비 : 25,000원*6회*8명 = 1,200 · 외부 프로그램 물품 구입 : 100,000원*6회 = 600 · 회원 가족 프로그램(부모교육) : 150,000원*2회 = 300 · 가족 캠프 : 250,000원*12명 = 3,000 · 심리지원키트 : 1,000,000원*2회 = 2,000 · 사례관리 물품비 : 250,000원*4회 = 1,000 · 진료비지원(외래치료, 심리검사비) : 100,000원*40명 = 4,0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마음건강학교 · 마음건강 프로그램 물품구입 : 1,500,000원*1회 = 1,500 · 부모교육진행 : 250,000원*2회 = 500 · 교사교육진행 : 250,000원*2회 = 500 · 마음건강 캠페인 진행 : 2,500,000원*2회 = 5,000 · 홍보물품 구입 : 250,000원*6회*4종 = 6,000		
		대국민공개강좌 · 현수막, 배너 제작 : 100,000원*3회 = 300 · 포스터 제작 및 인쇄 : 176,000원*2회 = 352 · 홍보물품 구입 : 1,000,000원*1회 = 1,000		
		심층사정평가 · 2차정서행동특성평가 : 60,000*10회 = 600 · 선별검사지 제작 : 50,000원*2회 = 100		
		네트워크 구축 · 간담회, 통합사례회의 물품 구입 : 150,000원*4회 = 600		
		홍보 · 홍보물(리플릿) 제작 : 2,000,000원*4회 = 8,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5851(2025. 10. 14.)호, 사전 통보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홍보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4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평가 및 사업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44명(실인원) - 마음건강 프로그램(내/외부) : 54회 / 1,294명(실인원) / 2,142명(연인원) - 사례관리 : 1,468명(연인원) - 학부모 및 교사교육 : 13회 / 339명(실인원) - 심층사정평가 : 566명(실인원) / 681명(연인원)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69명(실인원) - 마음건강 프로그램(내/외부) : 33회 / 512명(실인원) / 1,052명(연인원) - 사례관리 : 1,330명(연인원) - 학부모 및 교사교육 : 22회 / 251명(실인원) - 심층사정평가 : 1,022명(실인원) / 1,088명(연인원)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 : 50명(실인원) - 마음건강 프로그램(내/외부) : 71회/777명(실인원) / 1,534명(연인원) - 사례관리 : 1,219명(연인원) - 학부모 및 교사교육 : 14회 / 141명(실인원) - 심층사정평가 : 1,141명(실인원) / 1,197명(연인원) - 마음건강학교 캠페인 : 3회 / 872명(실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300	13,300	-	-	
2024	17,000	17,000	-	-	
2025	36,698	36,698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124
-----	-------	------------	-----	----------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9명(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			
사업목적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800	23,400	23,400	0	0	0	18,720	-4,680	
국비		0						0	
도비	22,800	23,400	23,400				18,720	-4,68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72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50,000원*39명*약9개월	= 18,72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7085(2025. 10. 29.)호, 사전 통보
 -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 39명의 처우개선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4,680천원 감액
 - 경기도 정신건강과-17085(2025. 10. 29.)호 관련, 본예산 감액에 따른 9개월 분 우선 내시 후 증액 추진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38명
2024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38명
2025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3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800	20,250	-	2,550	
2024	22,800	21,000	-	1,800	
2025	23,400	16,750	-	6,6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124
-----	-------	------------	-----	----------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70명(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목적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4조제9항, 제80조제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960	32,960	32,960	0	0	0	32,960	0	
국비	16,480	16,480	16,480				16,480	0	
도비		0						0	
시비	16,480	16,480	16,480				16,48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96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발병초기 치료지원비 : 273,000원*20명 · 행정입원비 지원 : 1,000,000원*25명 · 응급입원비 지원 : 100,000원*20명 · 외래치료비지원 : 100,000원*5명	= 5,460 = 25,000 = 2,000 = 5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5130(2025. 9. 25.)호, 사전 통보
-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정신질환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소득기준 제한 없음)
 - 발병초기 치료지원비,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지원조건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계획 수립
- 2026. 1. ~ 12. : 정신질환자 치료비(국비) 지원 사업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60명(실인원) / 127명(연인원)
2024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33명(실인원) / 54명(연인원)
2025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43명(실인원) / 59명(연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670	30,670	-	-	
2024	32,960	32,960	-	-	
2025	32,960	32,96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도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79명		
사업목적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위임규정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1항, 제11조
	제4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6,618	67,620	67,620	0	0	0	55,422	-12,198	
국비		0						0	
도비	33,309	33,810	33,810				16,714	-17,096	
시비	33,309	33,810	33,810				38,708	4,89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422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도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초기진단비 지원 : 102,000원*16명 · 외래진료치료비 지원 : 330,000원*163명	= 1,632 = 53,790	

□ 예산요구 사유

-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초기진단비 지원(2025년 소급분),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지원조건 : 중위소득 120% 이하)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7087(2025. 10. 29.)호, 사전 통보
- 도비 시군 부담 비율 조정 (기존) 도비50%, 시비 50% → 도비30%, 시비70%
- 비자의적 치료지원(응급·행정입원비, 외래치료지원)은 국비지원으로 일원화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내용 삭제(2025년 소급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계획 수립
- 2026. 1. ~ 12. : 정신질환자 치료비(도비) 지원
- 2026. 12.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217명(실인원) / 411명(연인원)
2024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271명(실인원) / 609명(연인원)
2025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284명(실인원) / 557명(연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920	46,920	-	-	
2024	66,618	66,618	-	-	
2025	67,620	67,62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시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15-26
사업규모	정신의료기관 1개소 2병상(김포한누리병원)		
사업목적	정신질환자 발생 대응에 필요한 24시간 운영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확보로 환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제12조제2항
	해당조례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11조(민간·공공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제12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6,000	200,000	200,000	0	0	0	232,000	32,000	
국비	98,000	100,000	100,000				116,000	16,000	
도비	14,700	15,000	15,000				17,400	2,400	
시비	83,300	85,000	85,000				98,600	13,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2,000	
시군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	307-01 의료및회복비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지원 : 116,000,000원*2병상	= 232,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6195(2025. 10. 20.)호, 사전 통보
- 김포시민의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입원으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지자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지침 의거
 - 기준금액 병상당 200천원/1일(24시간), 부분기준금액 주간 70천원, 야간 180천원 및 가산금액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응급병상 운영 계획
- 2026. 1. ~ 11. : 응급병상 운영비 분기별 지급
- 2026. 1. ~ 12. : 응급병상 운영 실적 매월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정신응급 입원 124명
2025	- 정신응급 입원 11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96,000	196,000	-	-	
2025	200,000	150,000	-	5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6급 이경희	전화	4121
-----	-------	------------	-----	----------	----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심사위원 7명		
사업목적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및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항, 제54조제1항,제3항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720	8,400	8,400	0	0	0	8,4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720	8,400	8,400				8,4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400	
정신건강심의 (심사)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7명*12월	= 8,400	

□ 예산요구 사유

- 정신의료기관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행정입원)환자의 입원기간 연장과 퇴원 또는 처우 개선의 심사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월 1회 이상) 참석 수당 지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개최 일정 : 2026. 1. ~ 12. 매월 4번째 수요일 17시 개최
- 개최 장소 : 김포시보건소 별관 4층 제2교육실
- 개최 규모 : 심사위원 8명, 심사 접수자료 40~70건(관내 정신의료기관 3개소 매월 서류접수)
 ※ 심사위원 구성(정신과전문의 4명, 변호사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정신질환자가족 1명, 공무원 1명)
- 개최 내용 :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 사업 예산 : 심사 위원 1인 참석수당 100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정신건강심의(심사) 개최 횟수 : 12회 - 입원연장 및 퇴원 심사 청구 : 558건 - 입원연장 및 계속입원 : 556건 - 퇴원명령 : 2건
2024	- 정신건강심의(심사) 개최 횟수 : 12회 - 입원연장 및 퇴원 심사 청구 : 647건 - 입원연장 및 계속입원 : 646건 - 퇴원명령 : 1건
2025	- 정신건강심의(심사) 개최 횟수 : 10회 - 입원연장 및 퇴원 심사 청구 : 612건 - 입원연장 및 계속입원 : 611건 - 퇴원명령 : 1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20	5,440	-	80	
2024	6,720	5,840	-	880	
2025	8,400	5,900	-	2,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44,298	339,087	339,087	0	0	0	406,326	67,239	
국비	133,288	101,726	101,726				121,898	20,172	
도비		0						0	
시비	311,010	237,361	237,361				284,428	47,06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6,326	
건강증진 사업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모바일헬스케어) · 기본급 : 93,840원*2명*167일 = 31,343 · 명절휴가수당 : 500,000*2명 = 1,000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2명*45일 = 8,446 · 4대보험료 : 20,394,000원*2명*14% = 5,710 · 건강검진비용 : 120,000원*2명 = 240		
		인건비(대사증후군관리사업) · 기본급 : 46,920원*1명*166일 = 7,789 · 유급휴일수당 : 46,920원*43일 = 2,018 · 명절수당 : 250,000원*1명 = 250 · 4대보험료 등 : 9,806,280원*1명*14% = 1,373 · 건강검진비용 : 120,000원*1명 = 120 · 출장여비 : 10,000원*1명*8개월 = 8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건강증진 사업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운영 · 활동량계 : 52,000원*100개 = 5,200 · 디바이스 : 30,000원*100개 = 3,000		
		비만·영양·대사증후군관리 사업 운영 · 비만·영양관리 사업 운영 물품 : 5,000원*560명 = 2,800 ·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운영 물품 : 5,000원*300명 = 1,500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 리플릿 및 홍보 물품 구입 : 2,500원*1,000명 = 2,500		
		심뇌혈관질환관리 운영 · 고당 e공부방 사용료 : 55,000원*12개월 = 660 · 고당 e공부방 수료자 물품 등 : 5,000원*120명 = 600 ·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용 책자(5종) 구입 : 5,000원*120명 = 600 · 표준화교육 실습 재료비 등 구입 : 10,000원*122명 = 1,220 · 홍보 리플릿 제작 및 홍보물 등 구입 : 1,900원*1,000명 = 1,900		
		구강보건사업 운영 · 생애주기별 구강교육용품(3종) 구입 : 3,000원*1,500개 = 4,500 · 치주질환 관리용품 구입 : 2,000원*2,000개 = 4,000		
		·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지하철 전광판 광고비 : 3,169,000원*1월 = 3,169		
		· 전문인력 교육비 : 240,000원*6명 = 1,440		
	201-03 행사운영비	영양 및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 요리실습 재료비 : 20,000원*20명*4회 = 1,600		
		레드서클캠페인 운영 · 레드서클캠페인 리플릿 제작 및 홍보물 구입 : 2,000원*1,000개 = 2,000		
	201-01 국내여비	· 공무직 여비 : 20,000원*64회 = 1,280		
	301-14 기타보상금	신체활동, 모바일헬스케어 운영 · 같이 걸을까 우수참여자 포상금 : 5,000원*300명*12회 = 18,000 · 돌봄놀이터 및 키움캠프 강사비 : 80,000원*25회 = 2,000 · 모바일헬스케어 운영 포상금 : 10,000원*100명*2회 = 2,000 · 한방기공체조 강사비 : 80,000원*48회 = 3,840		
		영양 및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 요리실습 강사비 : 200,000원*4회 = 800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운영 · 혈압측정 인증샷 챌린지 5,000원*500명 = 2,500		
	307-01 의료및회복비	모바일 헬스케어 · POCT 구입 : 9,000원*100개*3회 = 2,700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운영 · 대사증후군 검사 소모품 구입 : 9,000원*300명 = 2,700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 보충식품 지원비 : 100,000원*100명*12월 = 120,000		
		심뇌혈관질환관리 운영 · 심뇌혈관질환 검사소모품(이상지질혈증스트립 등 구입) : 125,000원*40개 = 5,000		
		구강보건사업 운영 · 충치예방용 불소(바니쉬) 구입 : 1,000원*1,000개 = 1,0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인력운영비 (건강증진 사업관리)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건강생활실천) · 기본급 : 2,977,550원(16호봉)*1명*12월 = 35,731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 2,977,550원*1명*2회*60% = 3,573		
		인건비(영양플러스) · 기본급 : 2,869,570원(12호봉)*1명*12월 = 34,435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 2,869,570원*1명*2회*60% = 3,444 · 가족수당 : 40,000원*1명*12월 = 480		
		인건비(구강보건) · 기본급 : 2,923,530원(14호봉)*1명*12월 = 35,083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 2,923,530원*1명*2회*60% = 3,508 · 가족수당 : 140,000원*1명*12월 = 1,680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보험금(건강생활실천) · 4대보험 : 40,983,660원*1명*14% = 5,738 · 퇴직금 : 3,130,700원*1명*1회 = 3,131		
		보험금(영양플러스) · 4대보험 : 40,038,330원*1명*14% = 5,606 · 퇴직금 : 3,049,000원*1명*1회 = 3,049		
		보험금(구강보건) · 4대보험 : 41,950,600원*1명*14% = 5,874 · 퇴직금 : 3,076,230원*1명*1회 = 3,076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462(2025. 9. 30.)호, 사전 통보
- 예산 분배 : 보건행정과 19%(112,564천원), 보건사업과 68%(406,326천원), 북부보건센터 13%(77,530천원)
- 사업 영역
 - 보건행정과 : 여성어린이특화
 - 보건사업과 : 구강보건, 비만예방관리,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영양, 절주, 한의약건강증진, 모바일헬스케어
 - 북부보건센터 :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예산증감 사유

- 공무직 근로자 호봉인상 및 임금상승률로 증액
- 북부보건센터에서 보건사업과로 모바일헬스케어 업무 이관(59,639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2026. 1. ~ 12. : 건강증진사업 영역별(모바일헬스케어,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 심뇌혈관, 영양, 한의약건강증진, 음주폐해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집행
- 2026. 12. :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1530건강걷기 2,173명 / 바르게 걷기교육 22회 90명 / 초등학생 줄넘기 보급사업 1,146명 ·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 3,487명(유치원 2,018명, 아동·청소년 144명, 취약계층 719명, 성인 531명, 노인 75명) ·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217회/144명, 비만예방캠페인: 18회/1,684명 · 대사증후군 검사 및 상담 : 검사 531명, 상담(질환, 영양, 운동) 1,590회 · 음주폐해예방교육 : 5,905명, 캠페인(지하철 역사 광고 4곳/1개월)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당뇨병 예방 표준화 상설교육 : 74회/222명, 비상설교육 : 2회/53명 · 고당e공부방 온라인 학습 등록자 : 162명(누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세계 고혈압의 날, 레드서클) 운영 : 2회/333명 · 고혈압·당뇨병 식이관리 교육 및 실습 : 8회/27명 - 구강보건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 122회/3,935명 · 기업체 구강건강교육 : 12회/363명 ·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 16회/4,107명 · 불소용액양치사업 : 시민 40,370명 -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식품 검수 및 공급 : 24회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평가 실시 : 710명 · 대상자 가정방문 교육 : 235명 · 영양 간식 실습 : 2회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한방기공체조 : 22회/1,322명 · 한방자연건강마을 : 12회/61명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걷기 '같이 걸을까' : 모바일 플랫폼 활용, 챌린지 운영 11회/8,453명 · 생애주기별 운동 프로그램 · 어린이 건강키움 캠프 : 지역아동센터 4곳, 59명 · 직장IN 건강신호등 ON : 비대면 운동 챌린지(6주), 43명 · (성인) 건강한 투자, 근육테크 운동교실 : 15회/150명 · (어르신) 건강한 투자, 근육테크 운동교실 : 7회/117명 · 7080스텝바이스텝 : 76회 1,183명 ·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 1,969명(유아 40회/1,572명, 아동·청소년 33회/336명, 노인 17회/61명) ·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19회/121명, 성인 51회/51명, 직장인 3회/43명, 비만예방캠페인 3회/632명 · 대사증후군 검사 및 상담 : 검사 1,017명, 상담(질환·영양·운동) 2,747회 · 생애주기별 음주폐해예방교육 : 유아 1,588명, 아동·청소년 1,803명, 성인 993명, 노인 519명/ 캠페인(지하철 역사 광고 4곳/1개월)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당뇨병 예방 표준화 상설교육 : 44회/134명, 비상설교육 : 4회/20명 · 고당e공부방 온라인학습 등록자 : 106명(신규), 269명(누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세계 고혈압의 날, 레드서클) 운영 : 2회/175명 · 찾아가는 고당 건강상담실 운영 : 46회/1,839명 - 구강보건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 2,423명(영·유아 323명, 아동·청소년 893명, 임산부 71명, 노인 1,136명) ·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 14회/3,073명 · 불소용액양치사업 : 시민 24,7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식품 검수 및 공급 : 24회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평가 실시 : 799명 · 대상자 가정방문 교육 : 75가구/230명 · 영양 간식 실습 : 3회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한방기공체조 : 24회/1,024명 · 한방자연건강마을 : 15회/252명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걷기 같이 걸을까 : 챌린지 운영 10회/3,598명(가입자수)/5,504명(챌린지 참여자수) · 어린이 건강키움 캠프 : 지역아동센터 7곳/100명 · (성인) 건강한 투자, 근육테크 운동교실 : 51회/491명 · (어르신) 건강한 투자, 근육테크 운동교실 : 58회/1,038명 · 7080스텝바이스텝 : 62회/1,312명 ·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 1,164명(유치원 28회/816명, 아동·청소년 27회/324명, 성인 14회/45명, 노인 10회/10명) ·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40회/484명, 성인 62회/42명, 비만예방캠페인 5회/1,335명 · 대사증후군 검사 및 상담 : 검사 756명, 상담(질환·영양·운동) 1,824회 · 생애주기별 음주폐해예방교육 : 유아 816명, 아동·청소년 725명, 성인 993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당뇨병 예방 표준화 상설교육 : 28회 127명(실인원) / 비상설교육 : 2회 104명(실인원) · 고당e공부방 온라인학습 등록자 : 48명(신규), 317명(누계) · 찾아가는 고당 건강상담실 운영 : 54회 2,875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세계 고혈압의 날, 레드서클) 운영 : 5회 386명 · 혈압측정 모바일 인증샷 챌린지: 1,331명 참여 / 240명 당첨 - 구강보건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 1,430명(아동·청소년 960명, 임산부 65명, 노인 405명) ·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 9회 2,135명 · 불소용액양치사업 : 시민 23,419명 -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식품 검수 및 공급 : 19회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평가 실시 : 437명 · 대상자 가정방문 교육 : 155명 · 영양 간식 실습 : 1회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한방기공체조 : 20회/1,20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3,600	460,609	-	12,991	
2024	444,298	419,334	-	24,964	
2025	339,087	219,286	-	119,80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4185
-----	-------	------------	-----	----------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24조제1항
	제24조(비용의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600	0	0	0	0	0	33,000	33,000	
국비	3,067	0					22,000	22,000	
도비	767	0					5,500	5,500	
시비	766	0					5,500	5,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000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보건사업차량(전기차) 구입 : 33,000,000원*1대	= 33,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3972(2025. 9. 11.)호, 사전 통보
- 기존 공용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 필요
- 전기자동차 교체를 통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을 높이고 대기환경개선 및 유류비절감 효과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예산편성(37두 4863 / 2013. 2. 28. 취득)
- 자산관리과-34703(2025. 10. 24.)호, 공용차량 정수배정 승인(정수번호 : 2025년 김포-가2-3)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2025.10.24.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3. : 차량 발주
- 2026. 7. : 차량교체
- 2026. 9. : 구매완료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치과용 덴탈 체어 구입: 1대
2024	- 치과용 컴프레서 구입: 1대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900	14,800	-	3,100	
2024	4,600	4,600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9급 최정인	전화	4065
-----	-------	------------	-----	------------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시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24조제1항
	제24조(비용의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5,000	1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5,000	1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보건사업차량(전기차) 구입 금액(시비 추가 부담) : 15,000,000원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3972(2025. 9. 11.)호, 사전 통보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보조사업) 보건사업차량 지원한도액(국비 22,000천원, 도비 5,500천원, 시비 5,500천원)으로 차량 구입이 어려워, 자체재원 15,000천원 추가 확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자산관리과-34703(2025. 10. 24.)호, 공용차량 정수배정승인(정수번호 : 2025년 김포-가2-4)
-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예산편성(37두 4863 / 2013. 2. 28. 취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	-	-	-	승인	-	-	-	-	-
일자		-	-	-	-	2025.10.24.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3. : 차량 발주
- 2026. 7. : 차량교체
- 2026. 9. : 구매완료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9급 최정인	전화	4065
-----	-------	------------	-----	------------	----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지역		
사업목적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 실천 유도로 흡연을 감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제9조제6항, 제7항, 제9조의5제1항
		<p>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p> <p>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해당조례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 제9조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6조(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3,370	205,840	205,840	0	0	0	210,800	4,960	
국비	111,685	102,920	102,920				105,400	2,480	
도비		0						0	
시비	111,685	102,920	102,920				105,400	2,4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0,80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11,730원*8시간*1명*167일	=	15,671
		- 11,730원*8시간*1명*84일	=	7,883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45일	=	4,223
- 93,840원*1명*23일	=	2,158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 여비 : 20,000원*1명*5회 = 100		
		· 검진비 : 120,000원*2명 = 240		
		· 4대보험료		
		- 19,894,080원*14%*1명 = 2,785		
		- 10,040,880원*14%*1명 = 1,406		
	201-01 사무관리비	· 금연사업 홍보, 안내 소모품 및 리플릿 제작 : 1,000원*2,130개 = 2,130		
		· 금연행동요법 물품 구입 : 3,000원*1,600개*5종 = 24,000		
	201-02 공공운영비	·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 : 83,500원*12월 = 1,002		
	201-03 행사운영비	·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공연 : 500,000원*9회 = 4,500		
	202-01 국내여비	· 금연상담사(공무직) 출장여비 : 20,000원*20회 = 4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금연사업 회의 및 행사 급식비 : 9,000원*12명*2회 = 216		
	301-14 기타보상금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주간) : 50,000원*4명*185일 = 37,000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야간) : 70,000원*2명*148일 = 20,720		
		· 금연성공기념품 등 : 50,000원*150개 = 7,500		
	307-01 의료및회복비	· 금연보조제 구입 : 13,000원*310개*6종 = 24,180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기본급 - 2,815,560원*1명*10개월 = 28,156 - 2,842,540원*1명*2개월 = 5,685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개월 = 1,680 · 명절휴가비 : 1,705,525원*1명*2회 = 3,411 · 시간외근무수당 : 23,460원*18시간*1명*12개월 = 5,067 · 연차유급휴가수당 : 125,120원*1명*10일 = 1,251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 4대보험료 : 45,250,290원*14%*1명 = 6,336 · 퇴직적립금 - 2026년 퇴직적립금 : 3,100,000원 = 3,100		

□ 예산요구 사유

-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주·야간 및 이동 금연클리닉)
 - 1:1 금연 상담 및 교육
 -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물품 지급
 - 대면, 전화, 문자 전송 등으로 지속적인 금연 유지 및 관리
- 금연교육 및 홍보
 - 청소년 대상 장학퀴즈, 체험교육 흡연 예방 교육
 - 세계 금연의 날, 김포시민의 날 기념 금연 캠페인 및 금연사업 홍보
- 금연환경 조성
 - 관내 약 17,000개소 금연구역 및 금연 시설 지도·점검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대상 과태료 부과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411(2025. 9. 30.)호, 사전 통보
 - 전년도 예산 대비 2.41%(4,960천원) 증액
-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구입 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
 - 2025년 구매량에 맞춰 금연보조제 구입비 상향 조정 : 4,680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금연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제출
- 2026. 1. ~ 12. : 금연사업 추진(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 2026. 5. ~ 7. :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 2026. 12. : 금연사업 추진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101명 -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978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8,382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143건
2024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137명 -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906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8,398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132건
2025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045명 -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819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5,783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12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1,540	222,207	-	9,333	
2024	223,370	216,593	-	6,777	
2025	205,840	160,906	-	44,93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이소영	전화	4125
-----	-------	------------	-----	----------	----	------

금연환경조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금연구역
사업규모	관내 금연구역 안내물(스티커, 안내표지판 등) 제작		
사업목적	금연구역 안내물의 체계적 정비·설치를 통해 금연구역 인식 제고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건강한 금연환경을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제7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920	30,000	30,000	0	0	0	42,700	12,7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920	30,000	30,000				42,700	12,7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700	
금연환경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금연구역 스티커 구입 : 2,500원*1,000개*4종 = · 공동주택 금연구역 현판 및 현수막 제작 : 450,000원*6개 =	10,000 2,700	
	401-01 시설비	금연구역 안내시설물 설치 ·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 900,000원*27개 = · 초등학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 80,000원*49개 = · 민원다발구역 금연 안내시스템(금연벨) : 1,780,000원*1개 =	24,300 3,920 1,780	

□ 예산요구 사유

-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스티커, 현판, 현수막 등 제작·설치
 - 관내 약 17,000개소의 금연구역 및 금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활용할 스티커 제작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판·현수막 및 민원다발구역 현수막 제작
-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정비(27개)
 - 현재 안내표지판이 미설치된 도시공원 17개소에 신규 설치
 - 훼손·노후로 시인성이 떨어지는 안내표지판 10개 교체 설치
- 초등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시설경계선에서 10m→30m) 안내표지판 설치(49개)
 - 초등학교 48개교, 특수학교 1개교 주변에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 민원다발구역 금연 안내시설물 설치(1개) : 금연벨(금연 안내시스템) 설치

□ 예산증감 사유

- 관내 금연 지정구역의 지속적 확대 및 증가(전년 대비 408개소)로 안내물 제작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
 - 2026. 2. ~ 12. : 관내 금연구역 안내·지도·점검 시 금연구역 스티커 배부 및 부착
 - 2026. 3. ~ 4.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민원다발구역 금연벨 설치 계획 수립
설치 장소 사전답사 및 관련부서 설치협조
 - 2026. 5. ~ 7.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금연벨 설치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3개소(총 53개소)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도시공원 19개소 20개[태양광 LED/ 신규 12개소(12개), 교체 7개소(8개)]
2024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3개소(총 56개소)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도시공원 26개소 28개[목재/ 신규 13개소(15개), 교체 13개소(13개)]
2025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2개소(총 58개소)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도시공원 10개소 13개[신규 9개소(금속 11개)/ 신규 1개소(태양광 LED 2개)] · 구래동 문화의거리(신규, 태양광 LED 2개) · 중·고등학교 41개교 41개(신규, 알루미늄 41개) - 어린이집·유치원 금연구역 안내스티커 구입 : 500장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7,912	57,911	-	1	
2024	17,920	17,454	-	466	
2025	30,000	21,947	-	8,05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보건사업과	사업규모	관내 금연구역 안내물 제작	본예산 요구액 (천원)	42,700
부기명 (세부사업)	금연환경조성	사업위치	관내 금연구역		
물품사진					
	도시공원 휘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				
					
금연안내 스티커		금연벨(금연 안내시스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이경희	담당자	보건7급 전경은	전화	4123
-----	-------	------------	-----	----------	----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관내 초등학교 4학년 5,500명		
사업목적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로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실현 기반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구강보건법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제1항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해당조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5조	
	제5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 2. 초등학생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00	294,000	294,000	0	0	0	275,000	-19,000	
국비		0						0	
도비	150,000	147,000	147,000				82,500	-64,500	
시비	150,000	147,000	147,000				192,500	45,500	
기타		0						0	

* 종말추경 예정: 경기도 건강증진과-15996(2025. 9. 24.)호 관련, 변경내시 감액액(53,900천원) 확정 내시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5,000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지역협의체 운영 참석수당 : 100,000원*10명*1회 · 구강 문진표 등 인쇄 : 120원*10,000개 · 홍보물품 구입 : 1,600원*5,500개	= 1,000 = 1,200 = 8,800	
	307-01 의료및회복비	·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 48,000원*5,500명	= 264,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8313(2025. 10. 27.)호, 사전 통보
 - 보조율 변경 도 50%, 시 50% → 도 30%, 시 70%
- 구강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협약된 치과의료기관을 통하여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996(2025. 9. 24.)호 관련, 변경내시 감액액(53,900천원) 종말추경 예정, 2025년 최종예산액 대비 2026년 34,900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4. : 치과의료기관·초등학교 선정 및 사업 지침서 배부
 - 2026. 5. ~ 11. : 예방의료서비스 제공 및 검진비 지급
 - 2026. 12. : 사업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참여의료기관 : 80개소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 4,451명
2024	- 참여의료기관 : 80개소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 4,880명
2025	- 참여의료기관 : 79개소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 4,08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0,250	252,247	-	18,003	
2024	300,000	246,031	-	53,969	
2025	294,000	197,601	-	96,399	10.31.기준 집행현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996(2025. 9. 24.)호 관련, '25년 감액 변경내시 통보(감액액 53,900천원)로 종말추경 감액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담당자	보건9급 임민주	전화	4132
-----	-------	------------	-----	----------	----	------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0명, 보건소 치과체험교실 300명		
사업목적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로 김포시민의 구강건강실현 기반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
	제6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150	5,150	5,150	0	0	0	5,15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150	5,150	5,150				5,15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150	
구강보건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치과 진료장비 유지 보수 및 관리 : 250,000원*5회 = · 어린이 치과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 6,000원*300개 =	1,250 1,800	
	307-01 의료및회복비	· 치과 진료 기자재 및 의약품 구입 : 100,000*21종 =	2,100	

□ 예산요구 사유

- 구강보건실 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 및 관리
 - 운영 보수 및 관리 항목 : 연 5회 체어 필터 교체 및 멸균기 유지 보수
- 구강보건실 내 유아 및 아동 300명 대상 치과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 사업 운영 소모품 항목 : 어린이 칫솔, 유치 보관함, 교육용 교재 등
- 구강보건실 내 취약계층 및 장애인 치과 진료에 따른 기자재 및 의약품 구매
 - 기자재 및 의약품 항목 : 불소 가루, 불소 바니시, 소독약, 일회용 미러, bar, 마스크, 글러브 등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수립
- 2026. 1. ~ 12. : 구강보건실 운영 및 장애인 치과 진료의 날 운영
- 2026. 1. ~ 10. : 보건소 치과체험교실 운영
- 2026. 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불소용액양치사업 : 25,372명 -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 135회/2,445명 - 장애인 치과 진료의 날 운영 : 14회/108명
2024	- 불소용액양치사업 : 24,721명 -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예방진료서비스 제공) : 불소도포 438명, 검진 630명, 스케일링 50명 - 장애인 치과 진료의 날 운영 : 18회/105명 - 보건소 치과체험교실 : 23회/323명
2025	- 불소용액양치사업 : 23,419명 -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예방진료서비스 제공) : 불소도포 580명, 검진 774명, 스케일링 70명 - 장애인 치과 진료의 날 운영 : 14회/90명 - 보건소 치과체험교실 : 12회/22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00	6,120	-	80	
2024	5,150	5,127	-	23	
2025	5,150	5,092	-	5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담당자	보건9급 임민주	전화	4132
-----	-------	------------	-----	----------	----	------

한의진료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한의진료가 필요한 시민 대상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480	5,480	5,480	0	0	0	5,48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480	5,480	5,480				5,48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80	
한의진료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한의진료실 등 운영 소모품 구입 : 120,000원*4종	= 480	
	307-01 의료 및 회복비	· 의료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 : 500,000원*10종	= 5,000	

□ 예산요구 사유

- 한의 진료실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 소모품 구매
 - 운영 소모품 항목 : 약통, 일회용 환자 진료용 베개 커버, 타이머 건전지 등
- 보건소 내소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소모품 구매
 - 의료소모품 항목 : 일회용 침, 알콜솜, 마스크, 알콜 손소독제, 환경 소독 티슈 등
- 한의 진료실 처방에 따른 진료 의약품 구매
 - 의약품 항목 : 소청룡탕, 팔물탕, 생맥산, 반하사심탕, 향사평위산, 갈근탕 등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한의약 사업 계획 수립
- 2026. 1. ~ 12. : 사업 수행
- 2026. 12. : 자체 평가 및 결과 보고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한의진료 : 2,518명
2024	- 한의진료 : 1,968명
2025	- 한의진료 : 2,00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116	7,983	-	133	
2024	5,480	4,890	-	590	
2025	5,480	5,207	-	273	10.31.기준 집행현황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4185
-----	-------	------------	-----	----------	----	------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별 신체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신체활동 실천을 증가 및 만성질환 예방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제1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신체활동장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00	1,400	1,400	0	0	0	2,360	9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00	1,400	1,400				2,360	9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60	
건강증진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건강증진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 175,000원*4종 · 건강증진센터 운동 소도구 구입 : 175,000원*4종	=	700
	301-14 기타보상금	· 신체활동 강사비 : 80,000원*12회	=	960
				700

□ 예산요구 사유

- 건강증진센터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 소모품 구매
 - 운영 소모품 항목 : 인바디 출력용 용지, 인바디 출력용 잉크토너, 청소용품 등
- 건강증진센터 운영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운동 소도구 구매
 - 운동 소도구 항목 : 세라밴드, 마사지볼, 폼롤러 등
- 신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강사비
 - ‘김포를 함께 걷자’ 노르딕 워킹 교실 신규 개설
 - 스틱 사용법과 노르딕 워킹 강의, 올바른 걷기 운동 실습
 - 다양한 지형(공원, 둘레길 등)에서의 노르딕워킹¹⁾ 연습 및 개인별 피드백 제공

1) 노르딕 워킹 : 양손으로 스틱을 사용하여 걷는 운동

□ 예산증감 사유

- 신규 신체활동 걷기 프로그램 개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事成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건강증진센터 계획 수립
- 2026. 2. ~ 12. : 운동 소도구 구입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
- 2026. 12. : 자체 평가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체성분측정 및 운동상담 : 334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345명 - 성인비만 운동교실 : 248명 - 아동비만 신체활동 : 11회 / 166명 - 고혈압·당뇨 운동교실 : 16회 / 104명 - 암경험자 운동교실 : 2회 / 10명
2024	- 체성분측정 및 운동상담 : 754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971명 - 성인비만 운동교실 : 51회 / 455명 - 고혈압·당뇨 운동교실 : 30회 / 509명
2025	- 체성분측정 및 운동상담 : 566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674명 - 고혈압·당뇨 운동교실 : 63회 / 1,07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00	1,799	-	1	
2024	1,400	1,398	-	2	
2025	1,400	1,383	-	1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이명옥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4185
-----	-------	------------	-----	----------	----	------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보건소CBR)

사업기간	2026. 3. ~ 2026. 10.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재가장애인 600여 명			
사업목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신체기능 강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참여 유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해당조례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제4조제2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 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500	32,666	32,666	0	0	0	50,230	17,564	
국비	15,250	16,333	16,333				25,115	8,782	
도비		0						0	
시비	15,250	16,333	16,333				25,115	8,78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230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보건소CBR)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본급 - 93,840원*1명*167일 = 15,671 - 93,840원*1명*84일 = 7,883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46일 = 4,317 - 93,840원*1명*24일 = 2,252 · 여비 - 20,000원*1명*58일 = 1,160 - 20,000원*1명*29일 = 580 · 명절수당 : 500,000원*1명 = 500 · 4대보험료 - 21,647,920원*14%*1명 = 3,031 - 10,714,720원*14%*1명 = 1,500 · 피복비 : 70,000원*2명 = 140 · 검진비 : 98,000원*2명 = 196		
	201-01 사무관리비	· 재활사업 운영 물품 구입 : 60,000원*22명*5회 = 6,600 · 재활사업 홍보용 리플릿 제작 : 1,400원*1,000개 = 1,400 · 재활협의체 참석수당 : 100,000원*8명*2회 = 1,600 · 재활보장구 유지 보수 및 관리 : 85,000원*40대 = 3,4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7007(2025. 10. 13.)호, 사전 통보
-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지침, 기본 인력 : 재활전문인력 1명 이상
- 장애 기능 수준별 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정기적 재활상태 확인 방문 재활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7007(2025. 10. 13.)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사업비 증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및 공고
 - 2026. 2. : 기간제근로자 면접 및 채용
 - 2026. 3. ~ 10. :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 재활 서비스 제공
 - 2026. 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636명 - 재활 프로그램 운영 : 20회(160건) - 건강서비스 : 방문(66건), 전화(463건) - 재활보장구 대여 : 439건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연계 : 10건
2025	-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639명 - 재활 프로그램 운영 : 26회(180건) - 건강서비스 : 방문(67건), 전화(330건) - 재활보장구 대여 : 319건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연계 : 6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0,500	21,573	-	8,927	
2025	32,666	21,834	-	10,83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보건8급 최희주	전화	4165
-----	-------	------------	-----	----------	----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약제비 지원 대상자 1,600명		
사업목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으로 지속적 치료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제2항제7호,제3항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본인부담금 약제비는 조례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7,600	51,000	46,000	0	0	5,000	51,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7,600	51,000	46,000			5,000	51,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1,000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3,000원*약1,417명*12월	= 51,000	

□ 예산요구 사유

- 고혈압·당뇨병 치료율 향상을 위한 약제비 지원 필요
 - (2024년) 고혈압 치료율 : 경기도 93.4% > 김포시 90.9%
 - (2024년) 당뇨병 치료율 : 경기도 93.8% > 김포시 87.7%

- 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률 증가 추세로 관리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필요
 - (김포시) 고혈압 진단 경험률 : 2014년 21.4% → 2024년 27.5%
 - (김포시) 당뇨병 진단 경험률 : 2014년 7.3% → 2024년 12.5%
- 65세 이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30일 기준 각 질병당 3,000원 지원으로 지속적 치료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 규모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6. 1. ~ 12.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377명 / 4,588건
2024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518명 / 5,113건
2025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406명 / 3,58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400	47,242	-	3,158	
2024	57,600	57,597	-	3	
2025	51,000	44,939	-	6,06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보건8급 최희주	전화	4165
-----	-------	------------	-----	----------	----	------

안 검진 기본검사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500명		
사업목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사전 안 검진을 통한 안질환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	5,000	5,000	0	0	0	5,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	5,000	5,000				5,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안 검진 기본검사비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안 검진 기본검사비 지원 : 10,000원*500명	= 5,000	

□ 예산요구 사유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주요 합병증: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등
- 정기적인 안 검진을 통한 실명 등의 안질환 조기 발견 및 2차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 필요
- 5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대상, 안과 기본 검사 비용 지원(1인당 10,000원/연 1회)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 규모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고혈압·당뇨병 환자 안 검진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6. 1. ~ 12. : 고혈압·당뇨병 환자 안 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고혈압·당뇨병 환자 안 검진비 지원 : 450명
2024	- 고혈압·당뇨병 환자 안 검진비 지원 : 437명
2025	- 고혈압·당뇨병 환자 안 검진비 지원 : 30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	4,500	-	500	
2024	5,000	4,370	-	630	
2025	5,000	3,030	-	1,97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보건8급 최희주	전화	4165
-----	-------	------------	-----	----------	----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 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의 수행평가를 위한 보건 기초자료 및 통계 생산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 제2조제2항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9,472	69,472	69,472	0	0	0	69,460	-12	
국비	34,736	34,736	34,736				34,730	-6	
도비		0						0	
시비	34,736	34,736	34,736				34,730	-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9,46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지역사회건강조사 회의 급식비: 8,000원*11명*5회 = · 지역사회건강조사 회의 간식비: 3,000원*10명*2회 =	440 60	
	307-05 민간위탁금	·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 68,960,000원 =	68,96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4005(2025. 9. 12.)호, 사전 통보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지자체 단위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4005(2025. 9. 12.)호와 관련, 국고보조금 지정위탁사업경비 세부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事成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3. : 지역사회건강조사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 2026. 3. ~ 5. : 지역사회건강조사원 모집 및 교육
- 2026. 5. ~ 7.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2026. 5. ~ 12. :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보조금 집행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조사자수 : 19세 이상 성인 915명 - 조사지표 : 17개 영역 145개 조사문항, 106개 산출지표 - 조사내용 : 흡연율, 음주율, 정신건강, 예방접종, 보건기관 이용 등
2024	- 조사자수 : 19세 이상 성인 913명 - 조사지표 : 17개 영역 172개 조사문항, 115개 산출지표 - 조사내용 : 흡연율, 음주율, 정신건강, 예방접종, 보건기관 이용 등
2025	- 조사자수 : 19세 이상 성인 910명 - 조사지표 : 19개 영역 169개 조사문항, 135개 산출지표 - 조사내용 : 흡연율, 음주율, 정신건강, 예방접종, 보건기관 이용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9,472	69,472	-	-	
2024	69,472	69,472	-	-	
2025	69,472	69,472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간호6급 신수정	전화	4141
-----	-------	------------	-----	----------	----	------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건강지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양호하게 변화하는 건강지표의 영향요인 분석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6조제3항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36	1,884	1,910	-26	0	0	2,068	184	
국비	918	942	955	-13			1,034	92	
도비		0						0	
시비	918	942	955	-13			1,034	9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68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만성질환예방관리 전문교육 : 2,068,000원*1명	= 2,068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4005(2025. 9. 12.)호, 사전 통보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우수건강지표와 보건사업과의 연관성 정리 및 효과분석, 지역 통계 활용 기법 이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84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선발
- 2026. 3. ~ 10. :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 2026. 11. : 시·도별 자체 평가대회 참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수료 : 1명
2024	-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수료 : 1명
2025	-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수료 : 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40	1,940	-	-	
2024	1,836	1,836	-	-	
2025	1,884	1,884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보건8급 최희주	전화	4165
-----	-------	------------	-----	----------	----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FMTP)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지역건강 통계 생산·관리 및 보건사업 기획 추진에 관한 역량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16조제3항	
	위임규정 해당조례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76	2,790	2,790	0	0	0	2,922	132	
국비	1,338	1,395	1,395				1,461	66	
도비		0						0	
시비	1,338	1,395	1,395				1,461	6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22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FMTP)	201-01 사무관리비	· 만성질환예방관리 전문교육 : 2,922,000원*1명	= 2,922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4005(2025. 9. 12.)호, 사전 통보
- 지역건강통계(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한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사업 계획수립, 결과 활용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2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FMTP 교육대상자 선발
- 2026. 3. ~ 10. : FMTP 교육과정
- 2026. 11. : 전국 평가대회 참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FMTP) 수료 : 1명
2024	-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FMTP) 수료 : 1명
2025	-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FMTP) 수료 : 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60	2,860	-	-	
2024	2,676	2,676	-	-	
2025	2,790	2,79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보건8급 최희주	전화	4165
-----	-------	------------	-----	----------	----	------

방문건강관리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150명		
사업목적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및 예방활동 등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84	4,284	4,284	0	0	0	4,284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84	4,284	4,284				4,284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84	
방문건강관리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공용폰 통신요금 : 47,000원*3대*12월 · 태블릿PC 통신요금 : 27,000원*8대*12월	= 1,692 = 2,592	

□ 예산요구 사유

- 태블릿PC 기반의 방문건강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통신요금 발생
 - 서식입력, 건강관리, 대상자 관리, 건강면접조사, 방문일정관리 등 방문 현장에서 입력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의 영상통화, ZOOM 교육 등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용폰 사용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규모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회의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
- 2026. 2. :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
- 2026. 1. ~ 12.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2,144가구원
2024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1,973가구원
2025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2,175가구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84	4,161	-	123	
2024	4,284	4,253	-	31	
2025	4,284	3,300	-	98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간호8급 김형선	전화	4142
-----	-------	------------	-----	----------	----	------

암환자 지원사업(재가암환자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00여명		
사업목적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및 암환자 가족의 환자 간호 등에 따른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암관리법		제3조제1항, 제12조제1호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250	5,938	5,938	0	0	0	5,938	0	
국비		0						0	
도비	2,625	2,969	2,969				2,969	0	
시비	2,625	2,969	2,969				2,969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938	
암환자지원사업 (재가암환자관리)	307-01 의료및 회복비	· 재가암 환자 의료물품(특수영양식이 등) 구입 : 4,000원*약371명*4회 =	5,938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6497(2025. 10. 29.)호, 사전 통보
- 저소득층 재가암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재가암환자 기초건강관리, 의료물품(특수영양식이 등) 지원, 지역의 보건·복지 자원 연계 시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재가암환자 의료지원물품 구입
- 2026. 1. ~ 12.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재가암환자등록·관리 : 217명, 건강관리 : 1,036회, 의료물품지원 : 366명(연인원)
2024	- 재가암환자등록·관리 : 231명, 건강관리 : 1,124회, 의료물품지원 : 351명(연인원)
2025	- 재가암환자등록·관리 : 253명, 건강관리 : 957회, 의료물품지원 : 317명(연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250	5,245	-	5	
2024	5,250	5,249	-	1	
2025	5,938	5,688	-	2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간호8급 김형선	전화	4142
-----	-------	------------	-----	----------	----	------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205명		
사업목적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제11조제1항제5호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5,760	55,760	55,760	0	0	0	55,760	0	
국비	27,880	27,880	27,880				27,880	0	
도비		0						0	
시비	27,880	27,880	27,880				27,88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760	
방문건강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피복비 등 구입 : 70,000원*8명 = 560 · 폭염·한파대비 홍보용품 구입 : 1,500원*2,000개*2회 = 6,000 ·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품, 리플릿 등 구입: 1,000원*1,200개 = 1,200		
	307-01 의료및회복비	· 건강취약계층 의료지원품(파스, 영양제 등) 구입: 6,000원*2,000명*4회 = 48,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512(2025. 9. 30.)호, 사전 통보
- 취약계층 발굴 등록, 기초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 의료물품(파스, 영양제 등) 지원, 지역의 보건·복지자원 연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
- 2026. 2. :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지원품 구입
- 2026. 1. ~ 12. :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 2026. 12. : 방문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방문등록관리 : 2,144가구원, 건강관리 : 7,779회, 의료물품 지원 : 5,517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832건 / 보건소 외 1,509건 -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 대응 건강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물품 배부 : 6,375건
2024	- 방문등록관리 : 1,972가구원, 건강관리 : 8,157회, 의료물품 지원 : 6,277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758건 / 보건소 외 784건 -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 대응 건강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물품 배부 : 8,277건
2025	- 방문등록관리 : 2,175가구원, 건강관리 : 6,812회, 의료물품 지원 : 4,524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736건 / 보건소 외 758건 -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 대응 건강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물품 배부 : 8,801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448	53,173	-	275	
2024	55,760	55,759	-	1	
2025	55,760	38,925	-	16,83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간호8급 김형선	전화	4142
-----	-------	------------	-----	----------	----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00명		
사업목적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AI-IoT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제11조제1항제5호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4,048	77,384	77,384	0	0	0	79,700	2,316	
국비	32,024	38,692	38,692				39,850	1,158	
도비		0						0	
시비	32,024	38,692	38,692				39,850	1,15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9,700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93,840원*1명*170일 = 15,953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50일 = 4,692 · 명절수당 : 500,000원*1명 = 500 · 출장여비 : 20,000원*1명*75일 = 1,500 · 4대 보험료 등 : 22,644,800*14%*1명 = 3,170 · 건강검진 비용 등 : 115,000원*1명 = 115 · 피복비 등 구입 : 70,000*1개 = 70		
	201-01 사무관리비	· AI스피커 사용료: 19,800원*50대*12개월 = 11,880 · 차량임차료 : 770,000원*1대*12개월 = 9,240 · 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등 디바이스 구입 : 63,800원*250명 = 15,950 · 디바이스 소모품(건전지, 충전기 등) 구입 : 10,000원*300개 = 3,000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홍보물 등 구입 : 2,130원*1,000개 = 2,130		
	301-14 기타보상금	· 미션성공 인센티브 구입 : 30,000원*300명 = 9,000		
	307-01 의료및회복비	· 혈당검사 소모품(란셋, 혈당 스트립 등) 구입 : 25,000원*100명 = 2,5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512(2025. 9. 30.)호, 사전 통보
- 디바이스(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AI 스피커) 제공 및 ‘오늘의 건강APP’을 활용한 개별 미션 부여
-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컨설팅으로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316천원 증액
-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으로 인한 디바이스 구입 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 2026. 1. ~ 3.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사전접수
 - 2026. 3. : 신규대상자 등록, 사전 스크리닝 시행
 - 2026. 3. ~ 11. :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 2026. 9. ~ 12. : 대상자 사후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AI·IoT 사업 등록·관리 : 131명 - 대면·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방문, 전화, 문자, 푸시알림, 커뮤니티 등) : 5,700회
2024	- AI·IoT 사업 등록·관리 : 208명 - 대면·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방문, 전화, 문자, 푸시알림, 커뮤니티 등) : 9,327회
2025	- AI·IoT 사업 등록·관리 : 300명 - 대면·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방문, 전화, 문자, 푸시알림, 커뮤니티 등) : 11,067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6,284	75,608	-	676	
2024	64,048	62,493	-	1,555	
2025	77,384	71,173	-	6,21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간호8급 김형선	전화	4142
-----	-------	------------	-----	----------	----	------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1개소(698.27㎡), 고촌읍·동지역 주민		
사업목적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환자와 가족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
	법령 위임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0,000	294,851	352,782	-57,931	0	0	270,914	-23,937	
국비	336,000	235,881	282,225	-46,344			216,730	-19,151	
도비	12,600	8,846	10,584	-1,738			8,128	-718	
시비	71,400	50,124	59,973	-9,849			46,056	-4,06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914		
치매안심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본급 : 93,840원*5명*165일	=	77,418	
		· 유급수당 : 93,840원*5명*43일	=	20,176	
			· 4대보험료 등 : 47,098,000원*5명*14%	=	32,969
	201-01 사무관리비	· 사업추진 차량 임대료 : 820,000원*12월	=	9,840	
		· CIST 제작 구입비(치매선별검사지) : 590원*1,000매	=	590	
		· 센터 무인경비시스템 : 120,000원*12월	=	1,440	
		· 비데 임대료 및 관리 : 18,000원*3대*12월	=	648	
		· 정수기 임대료 및 관리 : 32,000원*2대*12월	=	768	
		· 치매극복선도 학교, 단체 운영 : 500,000원*6개소	=	3,000	
		· CERAD-K(신경심리검사) 전자검사 앱 구입 : 6,500원*100개	=	650	
		· 치매예방 인지케어 운영 : 660,000원*6월	=	3,960	
		· 심터 인지프로그램 운영 : 250,000원*12월	=	3,000	
		· 실종예방 물품 구입 등 : 16,700원*100개	=	1,670	
		· 홍보물품 구입 등 : 11,000원*1회	=	11	
· 협의체 운영 참석 수당 : 80,000원*7명*1회		=	56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건물운영 관리비(수도, 전기, 청소 등) : 2,400,000원*12월	= 28,800	
		· 센터 시설, 장비 유지관리 : 150,000원*12월	= 1,800	
		· 환경정비 관리 용품 : 60,000원*12월	= 720	
		· TV유선방송 및 공용폰 사용료 : 70,000원*12월	= 840	
	201-03 행사운영비	· 치매극복의날 행사 운영 : 1,000,000원*1회	= 1,000	
		·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운영 : 1,000,000원*1회	= 1,000	
		· 쉼터 문화체험 및 치매가족의 밤 행사 운영 : 10,000원*25명*4회	= 1,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가족카페 및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 : 50,000원*12월	= 600		
	· 쉼터 문화체험 및 치매 가족의 밤 행사 급량비 : 10,000원*50명	= 500		
301-14 기타보상금	· 치매극복의날 행사 상품권 : 5,000원*100명	= 500		
	·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상품권 : 5,000원*100명	= 500		
	· 협력 의사 수당 : 343,000원*4회*12회	= 16,464		
307-01 의료및회복비	· 맞춤형 치매돌봄 사례관리 지원물품 : 3,000원*40명*12월	= 1,440		
	· 조호물품(성인용 기저귀 등) : 4,000,000원*12월	= 48,000		
	· 치매 감별검사비 지급 : 80,000원*120명	= 9,600		
	· 혈당 소모품 등 : 30,000*1회	= 30		
405-01 자산및 물품취득비	· 치매관리사업 운영용 노트북 구입 : 1,420,000원*1개	= 1,42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6665(2025. 10. 31.)호, 사전 통보
- 치매 조기검진, 예방교육, 인지 재활프로그램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북부보건센터 인건비 편성비율 기존 40%→50% 상향 조정으로 감액 편성
- 치매안심센터 업무 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편성

구분	품목	취득일	내구연한	사용연수	비고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용 노트북(2개)	2015. 3. 16.	6년	10년	불용 전환 예정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신규	치매안심센터 운영용 노트북(1개)	자산관리과-29161(2025. 9. 3.)호, 정수배정승인 사용위치: 치매안심센터 및 경로당, 주야간복지센터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2025.9.3.	-	-	-	-	2025.9.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 2026. 1. ~ 12. : 치매통합관리사업 추진
- 2026. 9. :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실시
- 2026. 11. ~ 12. : ‘지역사회치매관리율’ 정부합동평가 자료 작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3,040명, 환자 등록 관리 1,966명, 진단·감별검사 384명/156명 ·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51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등) 1,125건(실인원 33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73명, 지문등록 117명, 배회감지기 지원 35명 · 경증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300회/1,877명, 경도인지장애·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113회/860명 · 치매 가족 교실, 치매 가족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92회/738명 ·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 2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 3개소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4,740명, 환자 등록 관리 2,247명, 진단·감별검사 469명/139명 ·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61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등) 2,146건(실인원 412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78명, 지문등록 135명, 배회감지기 지원 43명 · 경증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346회/2,455명, 경도인지장애·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158회/1,617명 · 치매 가족 교실, 치매 가족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85회/714명 ·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 2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 4개소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4,670명, 환자 등록 관리 2,071명, 진단·감별검사 416명/155명 ·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61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등) 1,165건(실인원 446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74명, 지문등록 145명, 배회감지기 지원 32명 · 경증치매 인지재활프로그램 136회/1,112명 / 경도인지장애·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50회/416명 · 치매 가족 교실, 치매 가족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55회/470명 ·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 2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 5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7,732	346,985	-	747	
2024	420,000	418,571	-	1,429	
2025	294,851	175,969	-	118,88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양은정	담당자	의료기술8급 천유경 간호8급 변희연	전화	4167 4168
-----	-------	------------	-----	------------------------	----	--------------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치매공공후견인 3인(피후견인 3명 지원)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존엄성 보장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200	4,800	4,800	0	0	0	5,160	360	
국비	5,760	3,840	3,840				4,128	288	
도비	216	144	144				155	11	
시비	1,224	816	816				877	6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160	
치매공공후견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 심판 절차 비용 지원 등: 80,000원*2건	= 160	
	301-14 기타보상금	· 치매공공후견 활동비: 138,890원*3명*12월	= 5,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6665(2025. 10. 31.)호, 사전 통보
- 후견심판 청구 등 절차 비용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 처리

□ 예산증감 사유

- 후견심판절차비용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6. 1. ~ 12. : 후견인 활동 내역점검, 사례 회의, 활동비 지급
- 2026. 5. ~ 6. : 상반기 후견 감독·사무 보고서 법원 제출
- 2026. 10. ~ 11. : 하반기 후견 감독·사무 보고서 법원 제출
- 2026. 12. :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공후견 심판결정: 1건(공공후견 활동 3명, 피후견인 지원 3명)
2024	· 공공후견 심판결정: 1건(공공후견 활동 3명, 피후견인 지원 3명)
2025	· 공공후견 심판결정: 1건(공공후견 활동 3명, 피후견인 지원 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00	7,200	-	-	
2024	7,200	5,967	-	1,233	
2025	4,800	2,800	-	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양은정	담당자	간호8급 변희연	전화	4168
-----	-------	------------	-----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약830명(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치료약 복용자)		
사업목적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악화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7,000	278,640	256,298	22,342	0	0	298,839	20,199	
국비		0						0	
도비	142,025	160,218	147,371	12,847			171,835	11,617	
시비	104,975	118,422	108,927	9,495			127,004	8,58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8,83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치매치료관리비: 360,000원*약830명	= 298,839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6665(2025. 10. 31.)호, 사전 통보
- 대 상 : 치매분류코드(F00~03, G30)로 처방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액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5년 기준중위소득 확대 지원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 수 증가('24년 1,116명, '25년 1,403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事成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계획수립 및 홍보
- 2026. 1. ~ 12. : 치매치료관리비 예약 및 지원
- 2026. 5. ~ 6. :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정기 소득 재조사
- 2026. 11. ~ 12. :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정기 소득 재조사
- 2026. 12.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002명 / 4,846건
202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16명 / 5,826건
2025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403명 / 6,58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6,718	286,718	-	-	
2024	247,000	247,000	-	-	
2025	278,640	278,64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양은정	담당자	간호8급 변희연	전화	4168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북부보건센터

(북부보건센터)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요구액	347,282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4,250	84,250	-	-	85,050	800	
수수료수입/보건의료수수료 ◎진료 및 보험청구수입	64,200	84,200	-	-	85,000	800	· 인원인 증가에 따른 진료 및 보험청구 수입 증가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0	50	-	-	50	0	
임시적세외수입	50	50	-	-	50	0	
기타수입/그외수입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등	50	50	-	-	50	0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지상1층 ~ 3층		
사업목적	주기적인 청사시설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위임규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제2조(관리책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378	40,630	40,630	0	0	0	43,900	3,270	
국비									
도비									
시비	48,378	40,630	40,630	0	0	0	43,900	3,27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3,900	
청사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비데 임차료: 20,000원*2대*12월 · 정수기 임차료: 60,000원*3대*12월 · 공기청정기 임차료: 40,000원*3대*12월 ·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800,000원*12월 ·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600,000원*12월 · 청사 방역소독비: 320,000원*5월 · 승강기 유지보수비: 250,000원*2대*12월 ·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물품구입: 500,000원*4회 · 민원실 사무관리: 3,420,000원	= 480 = 2,160 = 1,440 = 9,600 = 7,200 = 1,600 = 6,000 = 2,000 = 3,420	33,900
	201-02 공공운영비	· 청사 시설물 유지비: 1,000,000원*10회	= 10,000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청사관리 용역비(승강기, 청사 소독, 무인경비, 냉난방기 세척비 등)
- 청사관리 기자재 등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 청사 시설물 등의 고장 파손에 따른 수리·수선비
- 민원접수실 운영비(제증명 용지, 프린터 토너비 등)

□ 예산증감 사유

- 청사 의무소독 비용 증가
- 제증명 등 민원처리 건수 증가: 7,701건('24년 10월) -> 10,028건('25년 10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2026. 01. ~ 2026. 12.: 북부보건센터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18,847천원(집행률 82.43%) · 공공운영비(시설물 유지관리비): 20,778천원(집행률 90.94%)
2024	· 사무관리비(임차료, 무인경비 등): 21,195천원(69.77%) · 공공운영비(시설물 유지관리비): 16,165천원(89.81%)
2025	· 사무관리비(임차료, 무인경비 등): 15,571천원(집행률50.83%) · 공공운영비(시설물 유지관리비): 2,502천원(집행률25.0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715	39,626	-	6,089	
2024	48,378	37,361	-	11,017	
2025	40,630	12,061	-	28,57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보건관리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8급 백서윤 의료기술8급 박철희	전화	4208 4219
-----	--------	------------	-----	------------------------	----	--------------

금연관리사업(신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김포시민(북부권)		
사업목적	북부권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 실천 유도로 흡연을 감소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2조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0,000	10,000	
국비									
도비									
시비	0	0	0	0	0	0	10,000	10,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금연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금연행동요법 물품 구입: 2,500원*6종*250개 · 금연사업 홍보물품 등: 2,000원*2종*250개	= 3,750 = 1,000	4,750
	301-14 기타 보상금	· 금연성공기념품 등: 50,000원*75개 .	= 3,750	3,75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1,500,000*1개	= 1,500	1,500

□ 예산요구 사유

- 북부권 금연클리닉 신규 운영을 통해 금연희망자 대상 금연상담 및 교육 실시
- 지역 특성과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마을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행동요법 물품 및 금연성공기념품 등 구입

○ 신규 구입 물품 상세현황

품목		정수승인공문	비치장소	비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신규	해당없음	북부보건센터 금연상담실	흡연자 일산화탄소 측정
물품사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금연클리닉 운영
- 2026. 12. : 사업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보건사업과 연계 ‘금연클리닉’ 운영: 30명/4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보건관리팀장 고종중	담당자	보건7급 김원미	전화	4192
-----	--------	------------	-----	----------	----	------

진료검진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김포시민(북부권)		
사업목적	진료 및 검진 내소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4,906	67,353	67,353	0	0	0	73,675	6,322	
국비									
도비									
시비	84,906	67,353	67,353	0	0	0	73,675	6,32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3,675	
진료검진사업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진료검진사업 업무 대체인력 인건비: 150,000원*4명*20일 =	12,000	12,000
	201-01 사무관리비	· 진료검진사업 소모품비: 250,000원*4회 = 1,000 · 검사실 운영 = 1,860 - 검사실 소모품 및 운송비: 60,000원*5회 = 300 - 검사가운 피복비: 60,000*1명 = 60 - 검사실 폐수 처리비: 1,500,000원*1회 = 1,500 · 방사선실 운영 = 1,203 - 방사선 선량측정기 판독료: 18,150원*1명*4회 = 73 - 방사선실 검진가운 구입비: 30,000원*20벌 = 600 - 공기청정기필터구입비: 60,000원*2개 = 120 - 방사선 촬영장비 정기검사비: 225,000원 = 225 - 골밀도장비 정기검사비: 185,000원 = 185 · 진료실 운영 = 2,500 -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2,500,000원*1개 =	6,563	
	201-02 공공운영비	· 검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3,500,000원*1회 = 3,500 ·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방화벽 유지보수비: 440,000원*2회 = 880 · 약품냉장고 유지보수비: 500,000원*1대 = 500 · 통신요금: 6,000원*1대*12개월 = 72 · 통신설치요금: 40,000원 = 40	4,992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진료검진사업 운영	307-01 의료 및 회복비	·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04,000원*105종*4회	=	43,680	50,120
		· 방사선실 X-ray 관독비: 1,300원*150건*12월	=	2,340	
		· 물리치료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150,000원*4회	=	600	
		· 진료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200,000원*5회	=	1,000	
		· 한의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50,000원*25종*2회	=	2,500	

□ 예산요구 사유

- 북부권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일반·한의 진료 운영 및 제증명 발급
- 전문자격(간호, 의료기술)을 요하는 대체 인력 비용
-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임상병리 검사 및 골밀도 검사

□ 예산증감 사유

- 제증명 발급 건수 증가 및 관리의사 연가 등으로 인한 관독비용 추가 발생
-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비용 발생 및 유지보수비용 상승
- 검사실 폐수 처리 격년 실시
- 검사실 의료장비 교체 품목 증가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 다방 및 유흥업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수 증가 및 시약 단가 상승
 - 2024년: 에이즈검사 196건 / 성매개감염병검사 583건
 - 2025년(10월 30일 기준): 에이즈검사 132건 / 성매개감염병검사 355건
-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 등 필수 장비 유지 보수
- 예방접종실 이전 관련 백신냉장고 통신비 및 유지 보수 비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일반진료 및 한의 진료
제증명(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 및 판정
예방접종 및 임신부 등록 관리
물리치료, 임상병리 및 골밀도 검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일반, 한의): 2,352건 · 제증명 발급: 2,938건 · 임상병리 검사: 10,287건 · 예방접종 및 임신부 등록: 311건 · 물리치료: 1,292건 · 골밀도 검사: 75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일반, 한의): 8,053건 · 제증명 발급: 9,422건 · 임상병리 검사: 25,817건 · 예방접종 및 임신부 등록: 535건 · 물리치료: 4,242건 · 골밀도 검사: 180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일반, 한의): 6,346건 · 제증명 발급: 10,028건 · 임상병리 검사: 26,610건 · 예방접종 및 임신부 등록: 652건 · 물리치료: 3,605건 · 골밀도 검사: 22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81,831	1,283,743	-	98,088	
2024	84,906	73,726	-	11,180	
2025	67,353	26,048	-	41,3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진료검진팀장 이명옥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재영	전화	4222
				의료기술9급 이정원		4227
				의료기술9급 이해림		4223
				보건9급 권정희		4225

신체활동강화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김포시민(북부권)		
사업목적	북부권 주민의 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건강한 노후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0	3,000	3,000	0	0	0	18,180	15,180	
국비									
도비									
시비	1,800	3,000	3,000	0	0	0	18,180	15,18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180	
신체활동 강화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명/8개월/4시간) = 11,950 - 기본급: 11,730원*4시간*1명*166일 = 7,789 - 유급휴일수당: 46,920원*1명*43일 = 2,018 - 명절수당: 250,000원*1명 = 250 - 4대보험료 등: 9,806,280원*1명*14% = 1,373 - 건강검진비: 120,000원*1명 = 120 - 출장여비: 20,000원*20회 = 400 	11,950	11,950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신체활동사업 소모품 구입: 750,000원*1회 = 750 · 현수막 및 배너 제작: 40,000원*5종*2회 = 400 · 홍보물품 구입: 3,000원*200개 = 600 · 재활운동센터 장비 유지관리비: 175,000*4회 = 700 	2,450	2,450
	301-14 기타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프로그램 강사비: 130,000원*8회*2기 = 2,080 ·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1,200 - 어르신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 쿠폰 구입: 5,000원*50명*2회 = 500 - 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쿠폰 구입: 5,000원*50명*2회 = 500 - 뉴스포츠 골든벨 참여자 모바일 쿠폰 구입: 5,000원*20명*2회 = 200 	3,280	3,28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체성분분석기 구입: 500,000원*1대 = 500 	500	500

□ 예산요구 사유

- 개인맞춤 운동처방을 위한 신체활동 전문 기간제근로자 채용(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이관, 신규채용)
- 건강관리 관심도 증가에 따른 체성분검사 및 체력측정 수요증가('24년 135명→'25년 10월 325명)
- 어르신 체력측정사업 신규 추진: 신체활동 프로그램 사전·사후 체성분 검사, 운동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근력강화 신체활동의 중요성 교육
-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신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연령을 다양화하고, 우수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참여율 제고 및 지속적인 참여유도
- 운동기구, 체력측정 장비의 유지관리비 및 소모품(밀론카드 등) 구입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일부 성인·어르신 대상 프로그램만 운영 → 어르신·청소년·어린이까지 연령층을 확대하여 신규프로그램 3종 신설하고 우수참여자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참여유도 인센티브 지급
- 기간제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어르신 체력측정 사업 신규 추진, 신체활동 사전·사후 체성분 검사 실시로 프로그램 효과 분석 가능
-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인한 소모품, 소도구, 홍보물품 제작 및 재활운동센터 장비 유지관리비 증액
- 신규 구입 물품 상세현황

품목		정수승인공문	비치장소	비고
이동형 체성분분석기	신규	해당없음	이동식	어르신 체력측정 사업 추진
물품사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事成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								2025.9.2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26. 01. ~ 2026. 12.: 대상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 2026. 12. : 프로그램 참여자 체성분 및 체력 측정, 만족도 조사, 사업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으로 통하는 운동교실 운영: 30회/217명 · 세상과 소통하는 운동교실 운영: 66회/401명 · 청춘두배로 건강체조 운영: 64회/947명 · 근력저축 운동교실 운영: 23회/317명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과 소통하는 운동교실 운영: 85회/607명 · 동절기 재활운동 동아리: 80회/277명 · 야간 순환운동교실 운영: 47회/362명 · 재활운동실 상시운영: 435회/2,676명 · 청춘두배로 건강체조 운영: 94회/1,630명 · 근력저축 운동교실 운영: 28회/478명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과 소통하는 운동교실 운영: 104회/998명 · 어울림 운동교실 상시운영: 555회/2,804명 · 달빛운동교실 운영: 47회/250명 · 청춘두배로 건강체조 운영: 85회/1,741명 · 넘어지지마요 운동교실 운영: 42회/65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800	1,797	-	3	
2025	3,000	1,280		1,7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건강생활팀장 박봉정	담당자	간호6급 구찬미	전화	4195
-----	--------	------------	-----	----------	----	------

건강생활 영양실천(신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김포시민(북부권)		
사업목적	연령별 맞춤 영양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건강 수준을 향상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0,600	10,600	
국비									
도비									
시비	0	0	0	0	0	0	10,600	10,6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600	
건강생활 영양실천	201-01 사무관리비	· 영양교육(교구) 자료 구입: 500,000원*3개 · 홍보물 제작: 10,000원*150개	= 1,500 = 1,500	3,000
	206-01 재료비	· 영양교실 공용 식재료 구입: 1,000,000원 · 영양교실 개인 식재료 구입: 30,000원*8명*15회	= 1,000 = 3,600	4,600
	301-14 기타보상금	· 영양교실 강사비: 200,000원*15회	= 3,000	3,000

□ 예산요구 사유

- 연령별 영양교육(어린이, 성인, 노인),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영양교실 신설(성인, 노인)
 - 2024년 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30세 이상 27.5%가 고혈압 진단 경험, 12.5%가 당뇨 진단 경험이 있으며 경기도 평균 수치보다 각각 0.3%, 0.7% 높아 관리 필요
 -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70세 이상의 에너지 섭취 부족자 비율이 남자 33.1%, 여성 40%며, 전 연령 중 육류 섭취 비율이 가장 낮아 식생활 관리 필요
-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한 대상별·주제별 맞춤 영양교구(시각자료) 확충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

□ 예산증감 사유

- 식습관 개선과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교실 운영
 - 질병예방을 위한 식단을 구성하여, 참여자가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지도
 - 개별 참여자 대상 조리법·재료선택 등 영양 지식과 맞춤 피드백 제공
- 신규 프로그램 홍보와 참여율 확대를 위한 홍보물 및 식재료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사업홍보 및 대상자 모집
 - 2026. 03. ~ 2026. 11.: 영양교실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6. 12.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건강생활팀장 박봉정	담당자	보건8급 허소영	전화	4209
-----	--------	------------	-----	----------	----	------

북부권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김포시민(북부권)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구강보건) 추진으로 건강행태 인식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1,006	147,860	147,860	0	0	0	77,530	-70,330	
국비	9,302	44,358	44,358	0	0	0	23,259	-21,099	
도비									
시비	21,704	103,502	103,502	0	0	0	54,271	-49,231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7,530	
북부권 건강증진 사업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구강보건사업 운영 =	8,942	18,302
		-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용품: 1,200원*1,300개 =	1,560	
		- 치주질환 관리용품: 500원*1,300개 =	650	
		- 불소배부통: 650원*4,000개 =	2,600	
		- 홍보용 안내문 제작: 500원*1,000개*2종 =	1,000	
		- 구강체험교구 구입: 168,000원*4개 =	672	
		- 취약계층 구강교육용품: 3,000원*500개 =	1,500	
		- 진료용 가운: 80,000원*2개 =	160	
		-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장비 관리: 200,000원*4회 =	800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운영 =	9,360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 8,660원*1,000개 =	8,660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책자 제작: 3,500원*200권 =	7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202-01 국내여비	· 구강보건사업 공무직 여비 - 여비: 59,000원*1명*12월	= 710	710
	307-01 의료및회복비	· 구강보건사업 운영 - 충치예방용 불소(바니쉬): 2,500원*1,200명 -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재료비: 5,000원*150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소모품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검사용품 등: 3,000원*1,000명	= 3,750 = 3,000 = 750 = 3,000	6,750
인력운영비 (건강증진 사업관리)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북부권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급여 - 기본급: 2,977,550원(16호봉)*1명*12월 - 정액급식비: 140,000원*1명*12월 - 명절수당: 2,977,550원*1명*2회*60% - 가족수당: 140,000원*1명*12월	= 42,664 = 35,730 = 1,680 = 3,574 = 1,680	42,664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 북부권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4대보험료 등 - 4대보험: 5,973,000원*1명*12월 - 퇴직금: 3,131,000원*1명*1회	= 9,104 = 5,973 = 3,131	9,104

□ 예산요구 사유

○ 보건사업지침에 의거 2개 분야를 1개의 사업으로 통합 편성 운영

① 구강보건사업

-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 충치예방과 시린이 완화를 위한 불소사업

②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고혈압·당뇨병 교실: 혈압, 혈당 검사, 교육, 상담 등
- 심뇌혈관질환 예방 자가관리: 혈압·혈당기 대어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462(2025.9.30.)호와 관련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사전 통보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타 부서(보건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사업계획서 수립
- 2026. 03. ~ 2026. 12.: 각 분야별 물품구입 및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 2026. 11. ~ 2026. 12.: 사업평가 및 추후 관리서비스 제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사업대상자 등록 193명, 혈압·혈당·콜레스테롤·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460건 건강/영양/운동전문가 집중상담 3,226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실 21회 360명, 혈압·혈당기 대여서비스 76명/73명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사업대상자 등록 187명, 혈압·혈당·콜레스테롤·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308건 건강/영양/운동전문가 집중상담 2,863건 · 구강보건사업: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48회 1,267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교육 9회 152명, 실태조사 127명)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16회 495명, 불소배부 6,781명,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5회 1,000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표준화교육 20회 170명, 혈압·혈당기 대여서비스 141명/147명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사업대상자 등록 184명, 혈압·혈당·콜레스테롤·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390건 건강/영양/운동전문가 집중상담 2,210건 · 구강보건사업: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42회 1,341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교육 10회 150명, 실태조사 56명)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15회 500명, 불소배부 5,692명,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5회 1,005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표준화교육 16회 178명, 혈압·혈당기 대여서비스 142명/10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2,624(북부권건강증진사업) 82,456(모바일헬스케어)	52,214(북부권건강증진사업) 71,234(모바일헬스케어)	-	409(북부권건강증진사업) 11,221(모바일헬스케어)	-
2024	108,427	101,843	-	6,584	-
2025	147,860	108,312	-	39,54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건강생활팀장 박봉정 방문보건팀장 임은영	담당자	간호6급 구찬미 간호8급 김현우	전화	4195 4202
-----	--------	--------------------------	-----	----------------------	----	--------------

북부권 방문건강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1,184 등록 가구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제11조 제1항 제5호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9,000	39,000	39,000	0	0	0	39,000	0	
국비	19,500	19,500	19,500	0	0	0	19,500	0	
도비									
시비	19,500	19,500	19,500	0	0	0	19,500	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000	
북부권 방문건강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 12,600 - 사무용품, 피복비 등 구입: 300,000원*5회 = 1,500 - 방문사업 홍보물품 및 인쇄물 제작: 4,000원*2,775개 = 11,100	12,600	12,600
	201-02 공공운영비	· 업무용 핸드폰 및 태블릿 PC 데이터 사용료 - 핸드폰 요금: 30,000원*1대*12월 = 360 - 태블릿 PC 결합요금: 5,000원*1대*12월 = 60 - 태블릿 PC: 20,000원*5대*12월 = 1,200	1,620	1,620
	307-01 의료및회복비	· 방문건강관리사업 검사 소모품 구입 = 4,780 - 방문건강관리 검사용품 등: 4,780원*1,000명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약품 구입 = 20,000 - 의료지원품(영양제 등): 5,000원*4,000개	24,780	24,780

□ 예산요구 사유

- 북부권 의료기관 부족으로 지역 일차의료를 확대하여 건강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 주요사업내용
 - 취약계층 발굴 및 등록관리, 기초 건강 및 만성질환, 방문프로그램 운영
 - 재난 대비(폭염, 한파 등) 건강관리,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사업계획서 수립
- 2026. 01. ~ 2026. 12.: 분기별 건강관리 물품구입 및 대상자 발굴 및 방문 서비스 제공
- 2026. 12.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방문등록가구/서비스 건: 1,309가구/5,166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1,696명
2024	· 방문등록가구/서비스 건: 1,320가구/5,497건, 의료용품 지원 2,489건
2025	· 방문등록가구/서비스 건: 1,184가구/4,795건, 의료용품 지원 2,046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000	38,535	-	465	-
2024	39,000	38,739	-	261	-
2025	39,000	29,505	-	9,49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방문보건팀장 임은영	담당자	간호8급 김현우	전화	4202
-----	--------	------------	-----	----------	----	------

북부권 암관리사업(재가암환자 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200명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암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12조의 1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748	3,960	3,960	0	0	0	3,960	0	
국비									
도비	1,874	1,980	1,980	0	0	0	1,980	0	
시비	1,874	1,980	1,980	0	0	0	1,980	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60	
북부권 암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	307-01 의료및회복비	· 재가암환자 의료지원품 구입 - 특수 영양식이: 4,950원*200명*4회	= 3,960	3,960

□ 예산요구 사유

-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용품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건강관리 및 심리지지와 상담, 의료물품(특수영양식이 등) 지원, 지역의 보건·복지 자원 연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사업계획서 수립
- 2026. 01. ~ 2026. 12.: 재가암환자 발견 및 등록, 방문서비스 및 영양식이 제공
- 2026. 12.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재가암 환자 등록자 수/서비스 건/의료용품 지급: 166명/654건/91명
2024	· 재가암 환자 등록자 수/서비스 건/의료용품 지급: 165명/655건/141명
2025	· 재가암 환자 등록자 수/서비스 건/의료용품 지급: 139명/548건/10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48	3,448	-	300	-
2024	3,748	3,723	-	25	-
2025	3,960	3,744	-	21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방문보건팀장 임은영	담당자	간호8급 김현우	전화	4202
-----	--------	------------	-----	----------	----	------

북부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200명		
사업목적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허약예방 실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5호
	제 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5,778	77,382	77,382	0	0	0	79,700	2,318	
국비	32,889	38,691	38,691	0	0	0	39,850	1,159	
도비									
시비	32,889	38,691	38,691	0	0	0	39,850	1,159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9,700	
북부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AI·IoT 사업 운영 인건비 - 기본급: 93,840원*1명*165일 = 15,484 - 유급수당: 93,840원*1명*50일 = 4,692 - 명절수당: 500,000원*1명 = 500 - 4대보험료: 20,175,600원*14%*1명 = 2,825 - 결핵검사비: 100,000원*1명 = 100	23,601	23,601
	201-01 사무관리비	· AI·IoT 활동량계 및 홍보물제작 등 - AI스피커 사용료: 29,700원*70대*12개월 = 24,948 - AI 디바이스 구입: 58,250*300대 = 17,475 - 인센티브 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 48,380원*200명 = 9,676	52,099	52,099
	307-01 의료및회복비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검사 소모품 구입 - 검사용품 등: 2,000원*2,000개 = 4,000	4,000	4,000

□ 예산요구 사유

-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확대로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개인 미션 부여, 비대면 건강컨설팅, 스마트 기기 디바이스 제공, 모니터링 및 지지 메시지, 건강실천 교육자료 제공 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6512(2025.9.30.)호와 관련 2026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예산 사전 통보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2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사업계획서 수립
- 2026. 03. ~ 2026. 10.: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사업 추진
- 2026. 01. ~ 2026. 12.: 홍보물 및 사업용 물품 구입, AI-IoT 대상자 발굴 및 방문 서비스 제공
- 2026. 12.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AI-IoT 어르신 대상자 신규등록/서비스제공: 60명/1,424건
2024	· AI-IoT 어르신 대상자 신규등록/서비스제공: 155명/2,789건
2025	· AI-IoT 어르신 대상자 신규등록/서비스제공: 200명/2,28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3,675	-	1,325	-
2024	65,778	64,137	-	1,641	-
2025	77,382	62,269	-	15,11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방문보건팀장	임은영	담당자	간호8급 김현우	전화	4202
-----	--------	--------	-----	-----	----------	----	------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보건소 CBR)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김포시민(북부권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사업목적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상태 향상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지역보건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제4조 제2항
	위임규정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3,000	13,000	
국비	0	0					6,500	6,500	
도비									
시비	0	0					6,500	6,5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201-01 사무관리비	· 재활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30,000원*10명*14회 · 장애인건강관련 홍보물 구입: 4,040원*1,000명	= 4,200 = 4,040	8,240
	301-14 기타보상금	·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70,000원*28회	= 4,760	4,760

□ 예산요구 사유

-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및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 2025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별도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2026.9.19.)호와 관련 2026년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국고보조금 예산 사전 통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사업계획서 수립
- 2026. 01. ~ 2026. 03.: 사업 대상 선정 및 강사 채용 등
- 2026. 03. ~ 2026. 11.: 홍보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 2026. 11. ~ 2026. 12.: 사업평가 및 추후 관리서비스 제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장애인 등록가구원 수/서비스: 443명/1,377건 · 재활프로그램 운영(작품공예): 20회/280명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2회/69명
2024	· 장애인 등록가구원 수/서비스: 366명/1,645건 · 재활프로그램 운영(작품공예): 15회/150명
2025	· 장애인 등록가구원 수/서비스 427명/922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
2024	-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방문보건팀장 임은영	담당자	간호8급 김현우	전화	4202
-----	--------	------------	-----	----------	----	------

북부권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북부권 5개 읍면 60세 이상 주민		
사업목적	치매상담, 조기검진, 등록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00	178,573	244,271	-65,698	0	0	206,135	27,562	
국비	192,000	142,858	195,417	-52,559	0	0	164,909	22,051	
도비	7,200	5,357	7,328	-1,971	0	0	6,184	827	
시비	40,800	30,358	41,526	-11,168	0	0	35,042	4,684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6,135	
북부권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치매쉼터 송영서비스 운영 인건비(3~10월) - 기본급: 93,840원*1명*189일(8개월) - 유급휴일수당: 93,840원*1명*53일(8개월) - 4대 보험료: 23,259,280*14%*1명 - 명절휴가비: 500,000*1명*1회 - 채용신체검사비: 50,000*1명*1회	= 26,516 = 17,736 = 4,974 = 3,256 = 500 = 50	130,562
		· 치매환자 쉼터 운영 인건비(3~10월) - 기본급: 93,840원*1명*189일(8개월) - 유급휴일수당: 93,840원*1명*53일(8개월) - 4대 보험료: 23,259,280*14%*1명 - 명절휴가비: 500,000*1명*1회 - 채용신체검사비: 50,000*1명*1회	= 26,516 = 17,736 = 4,974 = 3,256 = 500 = 50	
		· 치매조기검진사업 인건비 - 기본급: 93,840*2명*137일(6개월, 1~6월) 기본급: 93,840*2명*142일(6개월, 7~12월) - 유급휴일수당: 93,840*2명*38일(6개월) 유급휴일수당: 93,840*2명*36일(6개월) - 4대 보험료: 16,822,360*2명*14% - 4대 보험료: 17,386,140*2명*14% - 채용신체검사비: 50,000*4명*1회	= 77,530 = 25,712 = 26,651 = 7,882 = 7,507 = 4,710 = 4,868 = 2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북부권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 송영서비스 차량 임차료: 800,000원*12월 = 9,600 · 치매관리사업 홍보물품 제작: 2,000원*1종*500개 = 1,000 · 치매관리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750원*1종*1,000개 = 750 · 신경심리검사(CERAD-K) 앱 구입: 6,500원*200명 = 1,300 · 인지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0,000원*91회 = 1,820 · 치매예방교실 운영 재료비: 79,000*20회 = 1,580 · 치매안심마을 운영 = 5,084		21,134
	201-02 공공운영비	· 치매관리사업용 휴대폰 요금: 34,500원*12월 = 414		414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급식비: 9,000*13명*5회 = 585 · 치매안심마을 주민설명회 다과비: 260,000원*1회 = 260		845
	301-14 기타보상금	· 협력의사 진료수당: 343,000*40회 = 13,720 · 인지프로그램 강사비: 70,000*64회 = 4,480 · 치매 예방프로그램 강사비: 110,000*18회 = 1,980		20,180
	307-07 의료 및 회복비	·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2,630,000원*12월 = 31,560 · 사례관리대상자 조호물품 구입: 36,000원*40명 = 1,440		33,000

□ 예산요구 사유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 환자 조기발견 등 치매지원사업 필요
-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호물품 및 쉼터운영 등 치매환자 지원,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의사 진료비 등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강화, 치매안심마을 신규지정으로 치매안심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6665(2025.10.31.)호 관련, 2026년 치매관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사전 통보
- 2025년 최종예산액 대비 26,743천원(15%p) 증액됨.
 - 2025년 대비 인건비 37,862천원 증액, 사업비 10,300천원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2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 홍보
 - 2026. 02. ~ 2026. 03.: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26. 01. ~ 2026. 12.: 북부권 치매관리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선별검사: 1,731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067명 / 진단·감별검사: 180명·84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99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61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2명/ 지문등록 55명 / 배회감지기 17건 · 경증 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92회 622명 ·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38회 374명 · 정상군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28회 238명 · 치매예방교육: 3,078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선별검사: 2,061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199명 / 진단·감별검사: 174명·84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55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7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1명/ 지문등록 56건/ 배회감지기 10건 · 경증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98회 661명 ·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41회 403명 · 정상군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60회 667명 · 치매예방교육: 3,249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선별검사: 1,950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233명 / 진단·감별검사: 133명·82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31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5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2명/ 지문등록 45명 / 배회감지기 8건 · 경증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74회 625명 ·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15회 153명 · 정상군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35회 427명 · 치매예방교육: 2,737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3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268	206,347	-	3,921	
2024	240,000	235,256	-	4,744	
2025	178,573	123,580	-	54,99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장 최보라	담당자	간호8급 이보은	전화	4212
-----	--------	------------	-----	----------	----	------